

미국 “어패류 원산국 표시의무” 잠정 최종 규칙 해설 [연방관보]

2004년 10월 5일 화요일

4부

농무부(농산물 판매 사업부)

연방행정법령집 7권 60편
어패류 원산국표기 의무조항 ;
잠정 규칙

목 차

I. 개 요	3
II. 배 경	7
III. 잠정 최종 규칙의 조항	17
IV. 잠정 최종 규칙의 핵심사항	29
V. 영향분석	75
VI. 미국 당국자와의 서신 교환 / 참고자료	121
VII. 독점적 경제구역 및 해양경계 : 제한의 통지	135

[별 첨]

잠정 최종 규칙 발표 원문

간행사

미국 “어패류 원산국 표기 의무조항; 잠정규칙”해설서에 관해

미국 “어패류 원산국 표기 의무조항; 잠정 규칙”해설은 미국 농무부 장관이 2004년 9월 30일 발표한 “어패류 원산국표기 의무조항; 잠정 규칙”의 한국어 해석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①“개요”에는 동 규칙의 요약 및 동 규칙의 발행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②“배경부분”은 2003. 10월 미 농무부가 제안한 규칙안에 대하여 ‘04년 9월까지 제출된 질의와 응답이 담겨있습니다. ③“잠정최종규칙의 조항”에는 연방관보에 실려있는 규칙의 원문을 그대로 담고 있고, ④“잠정 최종 규칙의 핵심 사항”부분은 규칙 조항에 대한 미국 농무부의 유권적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⑤“영향분석 부분”은 동 규칙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미국측 원문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⑦“미국 당국자와의 서신 교환/참고자료”는 그동안 동 규칙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수출업계와 관련기관이 미국 농무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미국측 관계자가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원산국 표시와 동시에 양식산인지 자연산 인지도 표시하여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활어도 원산국표시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등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⑧ “잠정 최종 규칙”의 원문은 상기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문 그대로를 실어놓았습니다. 내용이 방만합니다만 관심이 있으신 수출입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동 규칙에 대한 의견을 2005. 2. 3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칙의 해석상의 의문점이나 실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실(02-3148- 6842)로 2005. 1월말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5. 1.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

I. 개 요

I. 개 요

▶ 농무부

- 농산물 유통 사업부
- 7 CFR Part 60(연방행정법령집 7권 60편)
- [No. LS-03-04]
- RIN 0581-AC26

▶ 어패류 원산지 표기 의무조항

- 해당청 : 농산물 유통 사업부, 미농무부
- 의 결 : 의견수렴 잠정 최종 규칙
- 요 약 : 농무부 장관은 지난 2002년, 1946년 제정된 Agricultural Marketing Act(법)를 개정한 개정안으로,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농수산 관련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에 원산지를 표기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Farm Bill)와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02 Appropriations)를 공표하고 2004년 9월 30일부터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농수산 관련 대상제품이란 모든 가공형태를 막론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를 포함하며 부패하기 쉬운 상품인 양식 어패류 및 자연산 어패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땅콩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FY 2004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2004 Appropriations)(공법 108-199호)에 의해 2006년 9월 30까지 자연산 및 양식 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관련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COOL)의 의무적 시행이 지연되었다. 발의된 공표의 발표 후에, 농무부는 본 공표의 시행과 준수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논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어패류 상품군들의 소매상인과 공급자 모두의 소비자 고지, 상품 마킹, 기록 보관 책임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다른 상품에 대한 규제 조항은 적절한 시행규칙에서 분리 공표될 것이다.

- 날 짜 : 이 잠정 최종 규칙은 2005년 4월 4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 규정의 의무조항은 2004년 12월 6일 이전에 수확된 자연산이거나 냉동 어패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은 충분한 숙고를 위해 2005년 2월 3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주 소 : 서면 의견 제출은 다음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

Country of origin Labelling Program, Room 2092-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USDA; STOP 0249;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0249, 또는 팩스 (202)720-3499 또는 이메일 cool@usda.gov 로 보낼 수 있다. 등록번호 LS-03-04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은 또한 <http://www.regulations.gov>.에서 제출될 수도 있다. 제출된 모든 의견은 AMS 웹 사이트인 <http://www.ams.usda.gov/cool/>. 에 등재될 것이다. 또한 제출된 의견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상기 사이트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제출된 의견 중 특히 본 법령에 대한 정보 수집과 기록 보관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것들은 다시 New Executive Office Building, 725 17th Street, NW., Room 725,Washington, DC 20503에 위치하고 있는 농무부 사무실, 정보규제 업무실, 연방 예산 관리국(OMB)등으로 보내질 것이다.

- 문의처 : William Sessions , 상임 관리 부장 / 가축 및 농산물 프로그램, AMS, USDA 전화: 202/720-5705 E-mail: william_sessions@usda.gov.
- 추가정보 : 다음의 정보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본 잠정 최종 규칙에 대한 입법 이력 요약, 법의 일반적 개요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 두 번째 부분은 2003년 10월 30일 공표된 발의규칙에 대해 제기되었던 제출의견의 요약을 포함하여, 그 규칙의 의무사항에 대한 토론 사항, 연방 관보(68 FR 61944) 및 제출 의견에 대한 해당청의 답변을 제공한다. 마지막 부분은 Regulatory Flexibility Act, Paperwork Reduction Act, 시민권 분석 , 관련 Executive Orders를 포함한 필요 영향력 분석을 제공한다.

1) 원 발표문은 2005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4년 12월 28일 의견제출기간을 1달간 연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 농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상기 부분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Ⅱ. 배 경

II. 배 경

▶ 상기 잠정 최종 규칙에 관련된 질의응답들

• 원산지 표기의 일반적 요건이 무엇인가?

시행령(7 U.S.G.1621 et seq)를 개정한 The Farm Bill(미 공법 107-17호)에 의거하여 농무부 장관은 2004년 9월 30일까지 규칙을 발표하고 소매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고객에게 2004년 9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쇠고기(송아지고기포함), 양고기 , 돼지고기, 어류, 조개 , 부패하기 쉬운 농산품, 땅콩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The 2004 Appropriations Act에 의하여 자연산 및 양식 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대상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COOL) 의무 조항의 적부는 2006년 9월 30일 까지 연기되었다. 동법은 “소매상”과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of 1930(PACA)(7 U.S.C. 499 et seq.)의 섹션 1(b)의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공표한다. 식품 판매 업소들은 가공식품 품목의 재료가 되는 관련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외 되었다. 동법은 “미국원산지”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 대상 상품이 지녀야할 기준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제품이 농수산 관련 상품인지 또는 원산지 표기법에 맞게 표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제품이 농수산 관련 상품인지 또는 원산지 표기규정에 맞게 표기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cool@usda.gov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가공식품 품목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생산물이 가공식품 품목으로 간주되는가? 동법 하에서 어패류 관련 상품은 가공식품 품목의 재료일 경우는 원산지 표기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 재료란 부분적이거나 완성된 소매 음식물의 성분을 말한다. 가공식품 품목이란 대상 상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특수한 과정을 거쳤거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대상 상품 또는 다른 본질적 식품 성분(예, 빵, 토마토소스)과 결합되어진 어패류에서 파생된 소매 품목을 말한다. 여기에서 소비를 위한 제품의 준비과정에서 다음의 단계를

촉진시키거나 다음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예, 물, 소금, 설탕)은 다른 본질적 식품성분에서 제외된다. 대상 상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특수한 과정은 요리(예, 튀기기, 굽기, 찜살에 굽기, 끓이기, 찌기, 빵 굽기, 볶기), 저장(예, 염장, 설탕저장, 말림), 훈제(냉온), 재가공(예, 유화, 압출, 덩어리로 압축, 분쇄)등을 포함한다. 다른 대상 상품 또는 다른 성질의 음식 성분과 합쳐진 어패류에는 해산물 혼합요리속의 가리비와 새우, 빵에 섞인 새우, 빵에 섞인 생선 필렛, 마리네이드에 담긴 생선 필렛이 포함될 수 있다.

59709

- 소매업자가 대상 상품에 미국 원산지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하는가?

동법은 미국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어패류 관련 상품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식 어패류 관련 상품들은 반드시 미국 영외에서 상당한 변형(US Customs and Board Protection에 의해 제정된)을 겪지 않고 미국에서 부화하고, 키우고, 수확하고, 처리한 어패류로 국한하며, 자연산 어패류 관련 상품은 반드시 미국 영외에서 상당한 변형(US Customs and Board Protection에 의해 제정된)을 겪지 않고 미국의 수중(물)이나 미국 국적의 선박에 의해 수확하여 미국 국내나 미국 국적의 선박 내에서 처리하는 어패류에 국한한다.

2개국 이상의 원산지가 결합되어 있는 관련 상품(자루에 담긴 새우 같은)을 포함한 소매 제품은 어떻게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는가?

다른 수입 상품이나 미국 원산 상품들과 혼합되어 있으며 미국 내에서 본질적 변형을 겪지 않은 관련 수입상품에 대하여는, 현행 연방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관련 상품의 수입신고서에 그 원산국을 표시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변형된 다른 수입 상품이나 미국 원산 상품들과 섞여 있으며 미국 내에서 변형된 수입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에 그 속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수 있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원산지가 하나 이상인 제품을 포함하는 혼합된 관련 상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원산지 표시 조건은 연방의 다른 법적 조건과 일치한다. 연방법은 각각의 소매포장에서 발견되는 상품의 원산지 정보를 추적하는 기관이 별도로 전 과정을 추적하고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소매패키지 안에서 발견되는 상품의 원산지 출처를 추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소매 제품의 수입 신고서는 전반적인 혼합 과정을 나타내는 몇몇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각 개인의 소매패키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정 국가들이 증명될 필요는 없다.

- 미국 농무부는 오직 수입 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추적을 하고, 다른 모든 제품들은 “미국 원산”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지?

미 농업법률안의 원산지 부속 조항은 모든 관련 상품들에 적용된다. 더욱이 동법은 미국 원산의 제품들이 갖추어야할 기준을 특별히 공표하고 있다. 동법은 또한 관련 상품을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도 관련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정보를 소매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은 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권한은 주지 않는다. 전체적인 상업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의무확인 시스템의 사용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 본 잠정규칙은 의무조항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가?

본 규정의 시행일은 동 잠정 최종 법안의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이다. 본 공표의 의무조항은 2004년 12월 6일 이전에 수확되거나 포획 냉동 어패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기 법령에 의거하여 농무부 장관은 2004년 9월 30일 이전에 이러한 세칙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소매로 팔리는 많은 관련 상품들은 냉동 혹은 다른 형태로 보관되어진 상태이다.(즉 신선 상태로 팔리지 않는다.)그러므로 이러한 상품들은 2004년 9월 30일 이전에 이미 유통중일 것이고, 원산지/제품의 정보는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재고를 무역으로 소진시키고 동법 요건으로 영향 받은 산업의 인력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동 잠정 최종 규칙의 발효를 6개월 연기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이 기간 동안, 농산물 유통 사업부는 동법의 조항과 요건에 관련된 산업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 사업

부는 또한 잠정 최종 규칙의 시행일 이후 즉각적으로 6개월 동안 산업 교육과 복지에 매진할 것이다. 연관성을 세밀히 조사한 후 농산물 유통 사업부는 법령 시행 재원의 할당으로 동법이 효과적이고 이성적으로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 판단한다. 일 년 이상 실시된 이러한 농산물 유통 사업부의 교육과 복지는 농산물 업계가 본 공표의 요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중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 규정의 의무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가?

미 농무부는 동법의 시행을 돕기 위하여 현존 시행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주와 협조체제를 맺을 것이다. 농무부는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한 일정과 절차를 결정할 것이다. 단지 농무부만이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농무부는 농무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법의 위반을 주장하는 자에 의해 제기되는 불만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추가로 해당청은 농수산 산업계에서의 시행 활성화와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규정 준수 가이드북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규정의 기록보관요건이 무엇인가?

소매업자에게 관련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래 일로부터 1년간, 지역코드나 다른 독특한 표시물로 거래에서 제품을 특징지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상품의 바로 직전 제공자와 바로 직후 수령자를 확인 하고, 기록을(가능하다면) 유지해야 한다. 소매업자는 그 제품을 보유하는 동안은 소매업자가 제품의 판매시점에서 원산지와 제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여부)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록들과 각종의 증거문서를 USDA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시간동안 이용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미리 원산지가 표기된 제품에 있어서는 그 표시 자체가 충분한 증빙이 되며, 그 소매업자는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여부)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표시를 신뢰하여도 된다.

공급자, 거래에 있어서 지역코드나 다른 독특한 표시물이 있는 제품, 미리 원산지가 표기된 제품,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여부) 정보를 기재한 기록은 원산지 표시와 소매로 인하여 제품의 목적지가 정해진 날로부터 1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59710

- 어떻게 동 규정이 현존하는 주 정부발행 원산지 표기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 정부발행 원산지 표기 프로그램이 이 규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때까지, 각 주 행정부는 그 규정의 시행을 유지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통제되는 상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주 정부발행 원산지 표기 프로그램은 이 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법규에 적용받지 않는 식품 품목도 자원하여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가진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그렇다. 그것은 정직하고 정확해야하며 현존의 연방 표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이 관보의 이전 문서

이 잠정적 최종 규칙은 시행령을 개정한 미 농업 법률안과 2002 Appropriations 그리고 2004 Appropriations에 의거하여 공표한 것이다.

2002년 10월 11일 AMS는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 지침의 효용에 대해 180일에 걸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어류, 부패하기 쉬운 농산품 및 땅콩의 원산지 의무 표기 잠정 규칙(67 FR 63367)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2002년 11월 21일 AMS는 이해 당사자들이 1995년 발효된 Paperwork Reduction Act(PRA)에 공표된 기록보관 공표와 관련된 AMS의 책임 평가에 관해 60일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 수집 공표(67 FR 70205)을 긴급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시문을 공표하였다. 2003년 1월 22일 AMS는 이 의견 진술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고시문(68 FR 3006)을 공표하였다.

2003년 10월 30일 AMS는 60일 간의 의견 제시 기간을 둔 COOL 의무 프로그램 발의안을 공표하였다. 2003년 12월 22일 AMS는 의견 제시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고시문(68 FR 71039)을 공표하였다.

▶ 법률 개요

공법 107171조 10816항(7 U.S.C 16381638d)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2004년 9월 30일부터 대상 상품의 원산지를 알리도록 한 시행령(7 U.S.C. 1621 et seq.)을 수정한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의 근거로 삼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COOL은 소매업자 표기 프로그램이고 따라서 식품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해산물 식품은 수입품이든 국내산이든 식품안전의약청(FDA)의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 법은 “대상 제품”을 (식용 송아지 고기를 비롯한)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의 근육 부위; 다진 쇠고기, 다진 양고기, 다진 돼지고기; 양식 어패류; 자연산 어패류; 부패하기 쉬운 농산품; 땅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대상 식품이 “가공 식품”의 원료일 경우 원산지 표기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법은 “소매업자”와 “부패성 농산품”이라는 용어는 PACA의 용어 공표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자연산 어류”를 자연산이거나 부화시킨 어패류 중 자연 상태에서 채취/포획으로 정의하고 넷-펜(Net-Pen) 양식 또는 기타 양식 어류는 제외하고 있다.

이 법은 대상 제품이 “미국 원산지” 표기를 부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식 어패류의 경우 대상 제품은 미국 내에서 부화, 성장, 자연산/채집한 어패류로 만든 것이라야 한다. 자연산 어패류의 경우 대상 제품은 미국 수역 또는 미국 선적의 선박에서 자연산/채집하여 미국 또는 미국 선적의 선박 선상에서 가공한 어패류로 만든 것이라야 한다. 이 법은 또한 대상 어패류 제품에 자연산/양식산 여부를 알리는 표기를 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 법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는 장소에서 대상 제품 또는 제품을 담은 포장, 인쇄물, 보관 용기 또는 상자에 라벨, 스탬프, 마크, 프랭카드 또는 기타 명확한 시각 기호를 사용하여 원산지 표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식당, 카페테리아, 간이음식점 기타 유사 시설과 같은 식품 서비스 제공처는 이러한 표기 공표의 면제 대상이다.

이 법은 PACA 1(b)항의 “소매업자” 정의를 COOL법의 표기 공표를 적용하는 “소매업자”로 참조하고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소매업자는 소매점에서 부패하기 쉬운 농산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매업자는 1 회계년도 동안 제품 총 구매 송장 비용이 23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어류 시장과 유사 특산품 상점은 일반적으로 과일과 야채를 팔지 않기 때문에 PACA의 소매업자 정의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공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은 대상 제품을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이가 소매업자에게 제품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농무부 장관은 대상 제품을 소매 판매용으로 비축, 저장, 처리 또는 보급하는 이가 검증이 가능한 기록관리 감사 추적을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 법은 농무부 장관이 강제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상 제품의 원산지를 검증할 수 없다고 공표하고 있고 대상 제품의 원산지 인증 용도로 쓸 수 있는 현행 인증 프로그램의 실례를 들고 있다. 이 법은 위반 사항별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소매업자/공급업자용 행정 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농무부 장관이 주(州) 제휴관계를 맺어 실질적인 한도 내에서 이 프로그램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행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장려하고 있다.

Ⅲ. 잠정 최종 규칙의 조항

Ⅲ. 잠정 최종 규칙의 조항

1. 법의 개요

연방행정법령집 7권 60편의 해당 법규 목록
농산 상품, 어류, 식품 라벨, 보고 및 기록보관 사항

☞ 전문에 제시된 이유로, 이 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되었다.

Part 60. 어류 및 갑각류의 원산지 라벨표시

•부속편 A - 일반조항

정의

60.101 법

60.102 AMS

60.103 [유보사항]

60.104 소비자 포장

60.105 대상물품

60.106 양식어류

60.108-60.110 [유보사항]

60.111 부화

60.112 식재료

60.113 [유보사항]

60.114 문자해독의 용이성

60.115 [유보사항]

60.116 사람

- 60.117 [유보사항]
- 60.118 [유보사항]
- 60.119 가공식품항목
- 60.120 [유보사항]
- 60.121 [유보사항]
- 60.122 생산단계
- 60.123 양식
- 60.124 소매업자
- 60.125 비서
- 60.126 [유보사항]
- 60.127 미연방
- 60.128 미국원산지
- 60.129 USDA
- 60.130 미국 국적 선박
- 60.131 선박의 국적
- 60.132 미연방 영해
- 60.133 자연산어류 및 조개류

▶ 원산지 표시국

- 60.200 원산지 표시
- 60.300 표기법

▶ 기록보관

- 60.400 기록보관사항 부록 A-독점적 경제구역 및 해상경계; 제한통지

•부속편 B - [유보사항]

위원회 : 7 U.S.C. 1621 et seq.

2. 법의 상세 내용

•부속 편 A-일반조항
정의

§60.101 법 : 법은 1946년 농업 마케팅법을 말함

§60.102 AMS : 미국 농무부 유통 사업부를 말함

§60.103 유보사항

§60.104 소비자 포장 : 소비자 포장이란 어떤 대상 상품이 구매자에게 소매로 판매되기 위해 배달 또는 전시용으로 밀봉하는 용기 혹은 포장용품

§60.105 대상물품

[a] 대상상품이란 :

- 1) 유보
- 2) 유보
- 3) 양식 어패류(필렛 , 스테이크, 너겟, 다른 육질을 포함);
- 4) 자연산 어패류 (필렛 , 스테이크, 너겟, 다른 육질을 포함)
- 5) 유보
- 6) 유보

[b] 대상상품에서 그 상품이 가공식품의 하나의 성분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

§60.106 양식어류

양식 어류는 통제된 환경에서 길러진 어류 및 패류로서 바다목장(예를 들어 ‘가두리’)의 어류와 침입자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인공구조물 제공, 영양분 공급에 소용되는 양식장으로 수확된 패류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양식된 어패류로부터의 필렛, 스테이크, 너겟, 다른 육질을 포함한다.

§60.107 식품서비스 시설물

식품서비스 시설물은 식당, 카페테리아, 식품바, 간이식당, 살롱, 술집, 바, 라운지 혹은 대중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로 운영되는 유사시설물을 말한다. 유사한 시설물에는 샐러드바, 빵집, 기타 소매시설물안에 위치한 식품업체로 즉석식품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60.108 -110 유보사항

59744

§60.111 부화 : 부화란 란(달걀)에서 출행하는 것을 말함

§60.112 재표: 완성된 소매식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함

§60.113 유보사항

§60.114 독해 용이성 :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태를 말함

§60.115. 유보사항

§60.116. 인(人) : 개인, 제휴협력자, 법인, 협회 혹은 기타 법인체

§60.117 유보사항

§60.118 유보사항

§60.119 가공 식품 품목 : 가공식품 품목이란 대상 상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특수한 과정을 거쳤거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대상 상품 또는 다른 본질적 식품 성분(예, 빵, 토마토소스)과 결합되어진 어패류에서 파생된 소매 품목을 말한다. 대상 상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특수한 과정은 요리(예, 튀기기, 굽기, 찜살에 굽기, 끓이기, 찌기, 빵 굽기, 볶기), 저장(예, 염장, 설탕저장, 말림), 훈제(냉온), 재가공(예, 유화 , 압출, 덩어리로 압축, 분쇄)등을 포함한다. 제외되는 항목은 어류스틱, 해산물 범벅, 토마토소스를 묻힌 홍합, 코코넛 새우, 수프, 스투, 차우더, 소스, 훈제연어, 술에 절인 생선필렛, 참치캔, 정어리캔, 연어캔, 게샐러드, 새우카테일, 스시, 빵가루를 입힌 새우 등이 해당된다.

§60.120 유보사항

§60.121 유보사항

§60.122 생산단계

- [a] 유보
- [b] 양식 어패류 : 부화된, 양육된(기른), 수확된, 그리고 가공된
- [c] 자연산 어패류 : 수확되어지고 가공된

§60.123 양식

- [a] 유보
- [b] 규칙 §60.122에서 정의된 생산단계와 관련된 양식 어패류 : 부화부터 수확까지의 기간

§60.124 소매업자 : 부패성 농산품법에 의거 소매업자로 허가받은 자

§60.125 장관 : 미국의 농무부 장관 혹은 장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60.126 유보사항

§60.127 미국 : 50개주,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연방,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 괌, 북 마리아나섬, 기타 미 소유의 연방국가, 영토 혹은 미국의 영해

§60.128 미국원산지 :

- [a] 유보
- [b] 유보
- [c] 양식어패류 : 미국 영외에서 상당한 변형(US Customs and Board Protection에 의해 제정된)을 겪지 않고 미국에서 부화하고, 키우고, 수확하고, 처리된 것
- [d] 자연산 어패류 : 미국 영외에서 상당한 변형(US Customs and Board Protection에 의해 제정된)을 겪지 않고 미국의 수중(물)이나 미국 국적의 선박에 의해 수확하여 미국 국내나 미국 국적의 선박 내에서 처리한 것

§60.129 USDA : 미국농무부

§60.130 미국적 선박

- [a] 미국연방법전 46표제(Title) 121장 에 의거한 서류등록된 선박
- [b] 미국연방법전 46표제(Title) 121장 에 일치하여 번호를 부여받은 선박

§60.131 선박 국적 : 선박, 어선 혹은 보우트 등의 등록국가를 말함

§60.132 미국영해

미국의 배타적경제구역(EEZ)의 외부 한계 내에 포함된 담수 및 해수를 말함.

배타적경제구역(EEZ)은 1995년 8월 23일 연방관보 60권 163번 43825-43829 페이지에 공표되어진 미연방공고 2237번에 설명되어있음.

§60.133 자연산 어류 및 패류 : 자연 발생 혹은 부화된 어류 및 패류로서 자연산 상태에 놓여졌다가 어획되거나 비통제수역 혹은 양식장에서 어획된 것. 필렛 , 스테이크, 너겟, 그리고 자연산 어패류로부터의 육질을 포함

▶ 원산지 고시

§60.200 원산지 고시

이 법이 요구하는 원산국을 고시할 때 소매업자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일반 원칙: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대상 상품의 라벨표시는 개별포장, 전시 케이스, 무더기 통, 상자, 통, 송이 혹은 소비자포장이든지 간에 원산국 및 생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정보를 이 공표에서 제시한 대로 삽입해야 한다.
- [b] 면제: 규칙 §60.107에서 정의된 식품 서비스 시설물은 이 부속편 아래서는 라벨표시공표에서 제외된다.
- [c] 예외사항: 대상상품은 만약 규칙 §60.119에서 정의된 가공식품 항목의 재

료인 경우 부속편에서 제외된다.

- [d] (자연산 또는 양식)생산물의 생산 방법의 지정 : 대상 상품인 어패류는 이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대로 자연산 혹은 양식 인지 여부를 나타내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e] 미국산 대상물품의 라벨표시: 대상 제품이 규칙 §60.128에서 정의된 미국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소매단계에서 “미국산”이라는 신고서를 부착할 수 있다.
- [f] 미국에서 본질적인 변형을 겪지않은 수입제품의 라벨표시: 수입된 대상제품은 그 제품이 미국에 입고된 시점에 미국관세 및 국경법(US Customs and Board Protection)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에 신고한 대로 그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g] 미국에서 순차적으로 본질적인 변형을 겪은 수입상품의 라벨표시
 - (1) 유보
 - (2) 자연산이나 양식된 어패류 : 대상제품이 X라는 국가에서 수입되었고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 국적선(미국 관세 및 국경법대로)에서 순차적으로 본질적인 변형을 거쳤다면, 그런 제품은 “X국에서 수입, 미국에서 가공”이라는 라벨을 소매단계에서 표시하여야한다.
- [h] 혼합제품(동일 대상 상품의 혼합)
 - (1) 미국에서 본질적인 변형을 겪지 않은 해당 수입상품과 섞여서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본질적인 변형을 겪지 않은 대상 수입상품의 경우나 규칙 §60.200(g)에 묘사된 미국산 대상 제품 혹은 다른 상품의 경우는, 세관신고에 있어서 현존하는 연방법의 의무사항에 따라서 대상 상품의 원산국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미국에서 본질적인 변형을 겪은 다른 대상 수입상품과 섞여서 미국에서 연속적인 본질적 변형을 겪은 대상 수입상품의 경우와 미국산 대상 상품은, 세관 수입 신고 때 수입신고서에 그 속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수 있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i] 원거리 구매제품들.
 - (예를 들어, 인터넷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최종 포장을 관찰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대상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소매업자는 판매 차량이나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시점에 원산지 고지와 (자연산 또는 양식) 생산방법 지정을 제공할 수 있다.

59745

§60.300 표기방법

- [a] 원산국 신고와 생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의 지정 표시는 플래카드, 기호, 라벨, 스티커, 밴드, 묶음 줄, 꼬리표 등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원산국 신고와 생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의 지정 표시는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규칙의 §60.200(g)와 §60.200(h)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제품의 원산지 신고는 적당한 연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입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는 다른 연방법적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면 확인상자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생산방법 지정이 가능한데, 즉 “어획”, “자연산” 혹은 “양식”, “재배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라벨표시에 관한 다른 연방법들과 일치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자연산과 양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혼합 상품에 대하여는 이상의 용어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원양 어획”, “근해 어획”, “연승 어획”, “재배된”, 혹은 “기른”이라는 지정표시는 대체 용어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외에 생산방법(자연산 혹은 양식)의 지정표시는 확인상자 형태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 [b] 원산국 신고와 생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의 지정 표시는 눈에 띄는 장소에 두어서 소비자가 정상적 구매상황에서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c] 원산국 신고와 생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의 지정 표시는 그것이 연방 라벨 법과 일치하고 다른 연방규정이 요구하는 라벨링 정보를 흐리게 하지 않는다면 타이핑되거나, 프린트되거나, 혹은 손으로 쓰거나 무방하다.
- [d]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시하기 위하여 소매 수준에서 사용하는 내뺨은 컨테이너(진열장, 종이상자, 통, 깡통, 운반용기)는 모든 원산지와 생산방법이

기입되는 조건하에 한 개 이상의 원산지와 생산방법을 가진 대상 상품을 담을 수 있다.

- [e] 원산국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영국을 “U. K”로 표시하는 등, 국적의 축약형 또는 다양한 철자법은 가능하다. 이름의 형용사적 형태가 어떤 상품의 종류를 언급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한 수입된 상품의 원산국의 표시로 적당하다. 상징이나 기발 단독으로는 원산국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없다.
- [f] 연방 혹은 지역적 라벨 표시 표시는 원산국의 라벨링을 대신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

§60.400 기록보관사항

[a] 일반 원칙

- (1) 모든 기록은 해독가능하고 전자 혹은 하드카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재고 및 회계서류작업의 다양성으로 여러 형태의 서류작업 및 기록은 가능하다.
- (2) USDA 의 요구시, 공급업자 및 소매업자는 정상영업 시간내 검열중인 상품 및 기업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장소에서 원산지 주장 및 방법의 입증을 위해 기록 및 다른 서류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b] 공급업자의 책임

- (1) 직, 간접으로 대상 물품을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종사자는 직, 간접으로 구매자에게 대상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는 상품 그 자체에 마스터 운반용기에 혹은 소매판매를 통해 상품에 따라다니는 서류에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표지를 사용하여 거래에 독특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식별해주어야 하며, 그 외, 대상물품의 공급업자는 원산지 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2) 원산지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된 대상 물품을 취급하는 중간상인(원산지 표시 및 지정 책임이 없음)은 합리적으로 그 위반사항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었을 경우 타인의 행위로 인한 법 위반사

- 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직, 간접으로 대상 물품을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종사자는 거래 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많은 혹은 다른 독특한 표지를 사용하여 거래에 독특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대상 물품의 직전 수령자 및 직후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4) 수입 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출입항에서 미국으로 들어와 다음 수령인에게 인도되는 상품을 추적하고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반영하는 기록을 확보하고 거래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그러한 기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c] 소매업자의 의무

- (1) 대상 물품의 원산지 및 생산방식을 지정 하는데 소매단계시점에서 의존하는 기록 및 기타 서류증거는 정상영업 시간동안 정히 허가받은 USDA의 대리인에게 상품이 구입되는 조건의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전 라벨 표시된 상품의 경우, 라벨 그 자체는 소매업자가 원산지 및 생산방법을 지정하는데 의존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 (2) 소매업자, 많은 혹은 다른 독특한 표지를 사용하여 거래에 독특한 상품을 확인하는 기록은, 사전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소매단계 신고시점에서 1년의 기간동안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이 기록은 유통장소, 창고, 중앙사무실, 현장에 비치할 수 있다.
- (3) 원산지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된 대상 물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는 냉동 어류 및 갑각류 대상 물품으로 2004년 12월 전에 어획 혹은 양식된 경우, 합리적으로 그 위반사항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었을 경우 타인의 행위로 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IV. 잠정 최종 규칙의 핵심사항

IV. 잠정 최종 규칙의 핵심사항

▶ 대상 제품

“대상 제품”은 (필레, 스테이크, 너겟 그리고 기타 살코기를 비롯한) 양식 어패류와 (필레, 스테이크, 너겟 그리고 기타 살코기를 비롯한) 자연산 어패류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 가공 식품 성분의 제외 조항

대상 제품이 가공 식품의 재료로 쓰인 경우 이 규정의 표기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가공 식품”은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준비하는 공정에서 제품의 개선을 위해 (물, 소금 또는 설탕 같은) 성분을 첨가하는 일 자체가 가공 식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상 제품의 속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특정 가공과정을 거쳤거나 최소한 1개 이상의 다른 해당 품목 또는 다른 주요 식품 성분(빵가루, 토마토소스와 같은)과 혼합한 어패류로 만든 소매품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속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가공공정으로는 요리(예, 튀기기, 굽기, 석쇠로 굽기, 끓이기, 찌기, 볶기), 저장(예, 염장, 설탕저장, 말림), 훈제(뜨겁게 혹은 차갑게), 재가공(예, 유화, 압출, 덩어리로 압축, 분쇄) 등이 있다.

59711

제외 품목의 예로는 2)스틱피쉬, 연육, 토마토소스에 담근 홍합, 해산물 모음, 코코넛 새우, 수프, 스투, 잡탕요리, 소스, 말이, 훈제 연어, 마리네이드에 담근 생선 필레, 참치 통조림, 정어리 통조림, 연어 통조림, 크랩 샐러드, 새우 칵테일, 3)지필테 피쉬, 스시, 새우튀김 등이 있다.

2) 생선 토막에 빵가루를 입힌 식품.

3) 송어잉어고기에 계란 양파등을 섞어 둥글게 뭉쳐 끓인것

▶ 대상 제품의 미국 원산지 표기

이 법은 대상 제품이 “미국 원산지” 표기를 부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표해 놓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양식 어패류 - 대상 제품은 미국에서 부화, 성장, 자연산/채취 및 가공 공정을 거치고 (미국 관세법에 공표된) 상당한 변형을 거치지 않은 어패류로만 만든 것이라야 한다.
- (b) 자연산 어패류 - 대상 제품은 미국 수역 또는 미국 선적의 선박에서 자연산/채집하여 미국 또는 미국 선적 선박의 선상에서 가공했으며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관세법에 공표된) 상당한 변형을 거치지 않은 어패류로만 만든 것이라야 한다.

▶ 미국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치지 않은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기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해당 수입제품은 미국 내에서 (미국 관세법에 공표된) 상당한 변형을 거치지 않은 이상 소매판매를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에 미국 관세법에 공표된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소비재 형태로 포장되어 수입된 대상 제품들은 현재 1930년의 관세법(이하 관세법)에 의거하여 개별 포장 위에 원산지 표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이러한 공표들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 미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치지 않은 수입 제품의 표기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자연산 어패류의 경우 대상 제품이 X 국가에서 수입되어 (미 관세법 지침과 정책에 공표된 대로) 미국 또는 미국 선적 선박의 선상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쳤다면 소매판매 시점에 대상 제품에 “원산지[X 국가], 미국 내 가공”이라는 표기를 붙여야 한다. 대상 제품에는 자연산 어패류로 만든 것임을 알리는 표기도 해야 한다.

양식 어패류의 경우 대상 제품이 X 국가에서 수입되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지침과 정책에 공표된 대로) 미국 또는 미국 선적의 선박 선상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쳤다면 소매판매 시점에 대상 제품에 “원산지[X 국가], 미국 내 가공”이라는 표기를 붙여야 한다. 대상 제품에는 양식 어패류로 만든 것임을 알리는 표기도 해야 한다.

▶ 혼합 제품의 원산지 정의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혼합 제품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치지 않은 해당 수입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가 다른 동일 대상 제품(예: bag of shrimp)으로 구성된 혼성 또는 혼합 소매식품은 현행 연방 법률 공표에 의거하여 대상 제품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매식품이 (미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치기 전 또는 후) 미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친 다른 수입 해당 품목들과 혼합되었고 혹은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대상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입신고서에는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 원거리에서 구매한 제품

소비자가 최종 포장물을 살펴볼 기회를 갖기 전에 구매하게 되는 경우(예: 인터넷 판매, 가정 배송 판매 등) 소매업자는 판매 차량에 또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표 시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는 장소에서 대상 제품 또는 제품을 담은 포장, 인쇄물, 보관 용기 또는 상자에 라벨, 스탬프, 마크, 프랭카드, 꼬리표 또는 기타 명확한 시각 기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와 생산형태(자연산/양식)를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원산지와 생산형태(자연산/양식)를 알리는 정보는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이 공표의 60.200(g) 와 60.200 (h)(2)에 공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의 원산지(들) 정보를 기존 연방 법률 공표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영국연방을 뜻하는 “U.K”처럼 이상 없이 원산지를 알리는 약어와 변형 철자는 허용된다. 국가 명칭의 형용사형이 제품 종류를 지칭하기 위해 다른 어구와 함께 쓰이지 않는 한 국가명의 형용사형은 해당 수입 제품의 원산지(들)를 제대로 표기하는 단어로 쓸 수 있다. 상징 또는 국기는 원산지 표기에 쓰지 않는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기타 연방 표기(labeling) 규정에 부합하는 한 4)“자연에서 포획한”, “자연산”, “양식”, “양식산”과 같은 제품 표현(designa-

tion) 용어 그리고 이 용어들을 조합하여 자연산과 양식산을 포함한 혼합 제품의 제품 표현을 하는 일은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 표현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대양에서 잡음”, “바다에서 잡음”, “수렵”, “양식” 또는 “양식한” 같은 표기는 이 규정의 공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안으로 생산 방식(자연산/양식산) 표시는 체크 박스 형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표기공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현행 연방 법률 공표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표시가 기존 법률 공표가 요구하는 여타의 표기정보를 애매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업체에 최대한 재량권을 주기 위해 이 법규는 원산지 또는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표시의 정확한 위치 또는 크기에 관해 구체적인 공표를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표시들은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소비자가 구매할 때 원산지(들)와 생산형태(들)(자연산/양식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현행 연방 표기공표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FDA 표기 공표(21 CFR 101.2)에는 제품의 성분 표시 문구 안에 또는 제품의 통상적인 명칭의 일부로 생산형태 표시(자연산/양식산)를 포함시킬 수 없다.

59712

▶ 기록관리 공표와 책임

이 법은 농무부 장관은 대상 제품을 소매 판매용으로 비축, 저장, 처리 또는 보급하는 자에게 농무부 장관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기록관리 감사추적(audit trail)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그리고 자연산/양식산 표시를 입증하는 기록과 기타 문서 증거물은 소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의 근거가 되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대상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예: 포획자/채취자, 생산자, 증개인, 취급자 등) 다음 구매자에게 대상 제품의 원산지(들)와 생산 방식(자연산/

4) "wild caught," "wild," "farmraised," "farmed,"

양식산)(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제품 그 자체에 제공될 수 있고 주요 선적 컨테이너에 제공될 수 있으며 혹은 소매 판매시 정보를 식별할수 있게끔 제품생산지와 생산형태정보와 같은 것을 담은 문서에도 제공될 수 있다. 2005년 10월 6일 이후의 시점에 2004년 12월 6일 이전에 포획이거나 채취한 해당 냉동 어패류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중에 이 제품의 원산지 그리고/또는 생산 방식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공급업자가 어패류의 자연산/채취 일자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소매업자에게 대상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이는 제품의 고유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여 그 거래 대상 제품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거래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해당될 경우) 자신에게 직접 공급한 이와 자신에게서 직접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를 입증하고 식별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원산지 그리고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표시를 가장 먼저 할 책임을 진 대상 제품의 공급업자는 그 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수입 품목의 경우 CBP에 공표된 수입자 기록사항은 그 기록을 보증해야 한다; 미국 수입항에 입항한 후 곧바로 물품을 수령하는 이에게 제품의 도착할 때 까지 그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CBP의 해당 기재 문서 및 정보 시스템 공표에 따라 원산지(들)와 생산형태(들)(자연산/양식산)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거래 일자에서 1년간 그러한 기록들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 또는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표기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제품을 취급한 중간 공급업자(즉, 최초로 수입품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신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없던 공급업자)가 규정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타인의 행위로 인해 조항을 위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소매업자들 또한 기록보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소매업자가 제품의 원산지와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들 비롯해 가능하다면 어획방법과 양식일등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시 믿을만한 기록과 기타 문서 증거물을 대상 제품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농무부의 적법한 것인가 미농무부직원의 평상 근무 시간 내에는 입수 가능해야 한다.

라벨 처리를 거친 제품(즉, 제조업자/1차 취급자가 라벨 작업을 끝낸)의 경

우 라벨 자체가 소매업자가 제품 원산지와 생산형태(들)(자연산/양식산)를 증명하는 근거로 믿기 충분한 증거이다. 소매 공급업자, 지역코드나 기타 고유 식별자로 해당 거래에 고유한 제품을 증명하는 기록 그리고 라벨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 방식(자연산/양식산) 정보는 소매점에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한 시점에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소매업자의 판매처, 창고, 주 사무소 또는 기타 판매처 이외의(offsite)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그리고/또는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밝혀진 대상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는 통상적으로 위반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 타인의 행위로 인한 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시 행

이 법은 농무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의 관리를 지원하는데 실효가 있는 범위에서 주들과 제휴관계를 맺을 것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USDA는 소매업 준수 심사를 수행할 시행 기반을 지니고 있는 주들과 제휴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공표들의 구속을 받는 소매업자의 영업장소, 유관 기관 사무소 그리고 공급업자 의 영업 장소에서 일상적인 준수여부 심사가 이루어진다. USDA는 심사 일정을 조정하고 준수 여부 심사 절차를 결정한다.

USDA만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이에 대해 행정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USDA는 또한 농무부 장관이 조사를 실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고발건을 조사할 수 있다.

준수여부 심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은 소매업자와 공급업자는 USDA 직원이 심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또는 기타 문서 증거물들을 평상 근무 시간 동안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검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위반 사항 별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소매업자와 공급업자에게 부과하는 시행 공표를 지니고 있다. 이 법률은 농무부 장관이 소매업자가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농무부 장관은 소매업자에게 해당

결정을 통보하고 30일에 걸쳐 소매업자가 법을 준수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공표하고 있다. 30일이 지난 후 해당 통보를 거쳐 의견 청취를 한 후 농무부 장관이 소매업자가 법을 계획적으로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면 소매업자는 각 위반 사안 별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 법은 이 부속편을 위반한 공급업자의 경우 동법 253항을 적용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 항은 부분적으로 이 부속편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결정할 때 농무부 장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관련된 사업의 규모 그리고 해당 위반행위를 저지른 이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농무부 장관은 이 subtitle 위반에 오류 패턴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 항은 또한 벌금에 덧붙여 혹은 벌금을 대신하여 농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위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다. 또한 253항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중지 명령을 내릴 때 준수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담고 있다. 농무부 장관이 소매 공급업자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업자에게 그러한 결정을 통지하고 공급업자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표기는 이 법에 포함된 시행 조항 외에 기타 현행 연방 법규 또한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연방식품 의학 화학법)는 거짓이거나 오도하는 내용의 표시 부착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품목에 부정확한 원산지 표기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AMS는 규제 당사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수 지침을 발행할 것이다. 이 준수 지침은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유용한 기타 정보 뿐 아니라 감사 절차,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데 유용한 기록물의 형태, 위반으로 간주되는 사건의 예문을 담은 것이다.

59713

▶ 질의응답

2003년 10월 30일 AMS는 60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지닌 의무적인 COOL 프로그램의 법률 초안을 공표하였다. 2003년 12월 22일 AMS는 의견 진술 기간을 추가로 60일간 연장하는 고시를 공표하였다. AMS는 기한 내에 소비자, 소매업자, 외국 정부, 생산자, 도매상, 제조업자, 공급자 그리고 의회 위원, 수출입 협회 그리고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서 5,600개가 넘는 의견을 청취하였다.

접수된 의견들 대다수는 어패류 생산형태를 자연산/양식산으로 라벨을 붙이는 공표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이었다. 가공 식품의 정의, 소매업자와 공급업자의 기록보관 공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의견도 많았다. 또한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의 대의를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의견 또한 100개 넘게 기한을 넘겨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에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어패류 해당 품목의 라벨 부착 공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패류 해당 품목 그리고 이 법규의 일반 공표와 관련된 의견들만을 여기서 논의한다. 일부 사례의 경우 의견 및 그에 대한 유관 기관의 응답을 종합한 내용에는 어패류 해당 품목 그리고 기타 해당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이 의견 제시자들의 권고안을 토대로 이 법규에 가한 변경사항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이러한 의견들과 유관 기관의 응답 내용을 이 잠정 최종 규칙에 포함시킨다.

▶ 정 의

■ 대상 제품

- 의견 종합: 수많은 이들이 해당 품목의 정의에 가금류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당청의 응답 : 이 법의 281(2)(A)항은 “대상 제품”이라는 용어를 “(식용 송아지 고기를 비롯한)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의 근육 부위; 다진 쇠

고기, 다진 양고기, 다진 돼지고기; 양식 어패류; 자연산 어패류; 부패하기 쉬운 농산품; 땅콩“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가공(어패류)

- 의견 종합 : USDA가 이 법규에서 상당한 변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가공 원산지를 결정하는 정의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법규에서 가공의 정의를 수정하여 재포장 차원을 넘어서되 상당한 변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공 과정을 거친 수입 제품은 자발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공된 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이기 적합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 해당청이 수정한 60.200(g)의 공표 문구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친 수입 제품의 라벨 부착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해당청은 더 이상 별도의 가공처리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재포장 이상의 처리는 하되 상당한 변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공 과정을 거친 수입 제품에 자발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공된 제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미국 관세법에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가공처리의 정의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청취 결과는 변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 가공 식품

- 의견 종합 : AMS는 가공 식품의 정의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접수하였다. 생선 통조림, 빵가루를 입힌 제품, 상당한 변형을 거친 모든 제품 그리고 블록제품류 로 만든 모든 해산품 등 가공식품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이들도 있었다. 다른 이들은 훈제 어류, 건조 제품 그리고 대상 제품의 단순한 혼합물 등 가공식품 품목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할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몇몇 다른 의견으로는 법률 초안에 제시된 최초의 대안정의를 이용하여 성분 표시 문구를 담고 있는 제품 중 어느 것을 배제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법률 초안에 제시된 두 번째 대안 정의를 이용하여 다른 현행 연방 법에 공표된 가공처리 과정을 거친 해당 품목 중 어느 것을 배제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 법률 초안에 제시된 세 번째 대안 정의를 이용하여 다른 품목과 혼합하여 피자나 즉석 냉동식품 같은 독특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우 해당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할 품목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가공 식품 품목은 “해당 품목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속성을 지닌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 내어 소비자들이 대상 제품 자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변형을 가한 대상 제품”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도 있었다.

의회가 현행 관세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제품들만을 COOL이 포괄하도록 지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표명한 이도 있었다. 이 법률 초안의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표현했으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도 있었다. 이 법률 초안의 정의대로 하면 USDA가 사안 별로 식품에 라벨을 붙이도록 결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원산지 표시를 결정짓는 토대인 상당한 변형의 개념이 CBP 법규와 세계 무역 기구의 원산지 공표상에 중복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들도 있었다.

해당청의 응답: 가공 식품 항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당청은 가공 식품 항목으로 간주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가공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공표에 쓰인 문구를 수정하였다. 또한 해당청은 이 정의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해당 품목의 범위를 적용하는 일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모든 요리 제품(예를 들어 생선 통조림, 요리한 새우)과 빵가루를 입힌 제품 - 이 중 새우는 완성품 중 최대 50%를 차지할 수 있다 - 는 가공처리 식품으로 간주하여 이 공표상의 라벨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독특한 향을 가한 소매 품목(예를 들어 Cajun marinated catfish) 또한 가공처리 식품으로 간주한다.

더 나아가 업계에 추가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청은 이 규정의 질문 및 응답 란에서 제외되는 제품의 형태에 대한 실례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 법은 상당한 변형이라는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 원산지로 라벨을 부착해야 할 해당 품목을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친 수입 제품은 “원산지 미국”이라는 문구를 부착할 수 없다.

59714

▶ 양 식

- 의견 종합: 양식을 양식 어패류로 한정한 정의에 원래 자연 상태에서 획득하여 양식한 양식 어패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이가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해당청은 양식 어패류의 경우 “양식”의 의미를 이 제품에 관한 법이 의도하는 생산 절차(부화, 양식, 수확, 가공)를 정의한다는 차원에서 “양식”으로 정의하였다. 해당청은 별도로 “양식생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래 자연 상태에서 획득한 양식 어패류를 포함시키는 정의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청은 “양식”의 정의를 수정하여 법이 공표한 생산 절차 (부화, 양식, 수확, 가공)의 맥락에서 정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소매업자

- 의견 종합 : 많은 이들이 어시장과 같은 특수 품목 취급 상점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소매업자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당청의 응답 : 이 법은 소매업자라는 용어를 PACA의 1(b)항에 공표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시장 또는 한도액 230,000 달러 미만의 과일과 야채 송장을 발행하거나 과일과 야채를 전혀 판매하지 않는 소매 실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채택되지 않는다.

▶ 미국 원산지

- 의견 종합 : 미국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를 상당한 변형이 이뤄지는 국가로 정의한 관련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시한 이가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이 법은 대상 제품은 미국 원산지 표시를 부착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청은 의견 제시자가 권고한 방식으로 이 정의를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청은 이 정

의를 수정하여 미국 외부에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변형을 거쳤으나 미국 원산지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들은 미국 원산지 표시를 부착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원산지 고시

■ 일 반

- 의견 종합 : 이 법률 초안의 60.200(a)은 개별 품목이 원산지를 알리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 해당청은 해당 문구가 개별 해당 품목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해당청은 이 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당청은 이 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이 조항이 개별 품목에 개별적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공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자연산과 양식산 어류의 지정

- 의견 종합 : 해당청이 어패류의 생산형태를 자연산 또는 양식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상 제품의 원산지 고시를 하는 공표와는 별개의 공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 해당청은 제시된 의견을 받아들여 60.200(d)를 의견에 맞게 수정하였다.

▶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미국에 들어왔을 때 대상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법

- 의견 종합 : 생산 과정에서 미국에 들어온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대안을 권고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원산지가 혼합된 제품은 생산 과정(예를 들어, 자연산/양식 국가, 가공 국가)에 관련된 개별 국가들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해당청이 대상 제품의 가공이 이루어진 원산지를 표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한 의견이 있었다. 또 이 법률 초안에 담긴 조항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대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한 모든 국가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60.200(2)(ii)의 “X 국가에서 수확한”이라는 문구 뒤에 “미국 선적의 선박 외의 선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도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 해당청은 이 규정의 조항들을 현행 연방 법률 공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60.200(g)를 수정하였다. 그 외에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가로 변경한 사항은 없다.

▶ 혼합 제품

- 의견 종합 : 원산지가 다른 원재료로 만든 동일 품목으로 구성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대안을 권고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알파벳 순 또는 함량 순으로 업체가 해당 국가들을 나열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업체가 패키지에 어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리는 라벨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들이 많았다. AMS가 한 국가 이상이 포함된 제품을 구체적으로 라벨을 표시하는 대신 “혼합 원산지” 등으로 일반적인 라벨을 부착할 것을 고려해보라고 권고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라벨에 모든 국가를 표시하되 특정한 순서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패키지에 포함된 개별 국가들의 비율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예를 들어 Y국 65%, X국 35%)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를 알파벳 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FAD와 CBP 범규에 부합하는지 우려를 표시하는 이도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 이 법은 모든 해당 품목에 원산지 표시 정보를 부착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 원산지” 라벨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USDA는 법률로 혼합 소매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책임을 지우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 법률 초안은 그러한 시설이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던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추적했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공표하게 될 것이다. 이 법률 초안은 또한 모든 혼합 제품의 라벨 부착은 각

개별 포장된 소매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공표할 것이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서 제품을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라벨 부착 공표는 여타의 연방 법률 공표와 부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잠정 최종 규칙은 미국 관세법 공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혼합 제품의 라벨 부착과 관련하여 추가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다른 해당 수입 품목 또는 미국 원산지 품목과 혼합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치지 않은 해당 수입품목의 경우 수입 신고서에는 현행 연방 법률 공표에 준하여 모든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미국 내에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변형을 거친 다른 해당 수입 품목들과 혼합하여 미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친 해당 수입 품목 그리고/또는 미국이 원산지인 해당 품목들의 경우 수입 신고서에는 포함된 원산지 또는 포함될 수 있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59715

▶ 원거리 구매 제품

- 의견 종합 :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원산지 표시 정보를 고지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판매 차량에 또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원산지 고지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해당청은 업체가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를 고지하는데 재량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판매 차량에 또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필요한 고지를 할 수 있다.

▶ 표 시

■ 60.300(a) 조항

- 의견 종합 :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지정 방식은 원산지 표시와는 별개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유사한 자연산 및 양식산 혼합 제품에 라벨 표시를 하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청이 원산지 표시와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전달하는 체크박스를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 해당청은 이 법이 원산지 고지 방식만큼이나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지정 방식에 동일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60.300(a)를 수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지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와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지정 방식은 함께 또는 별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60.300(d)를 수정하여 소매점에서 제품의 진열을 위해 양식산과 자연산어류를 담은 대량보관 용기에 모든 해당 원산지 그리고/혹은 생산방식을 표시하도록 분명히 하였다.

또한 60.300(a)를 수정하여 라벨에 두 가지 생산형태를 모두 표기하는 한 제품에 자연산과 양식산 어류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체크박스와 관련하여 해당청은 60.300(a)에 허용 가능한 통지 방식으로 체크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허가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 60.300(b) 조항

- 의견 종합 : 뚜렷한 원산지 공표라면 패키지 또는 제품상에 모든 원산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법의 전문에 대량 인쇄물에 가까운 표시, 해산물용 핀 태그(pin tags) 등을 비롯하여 폭넓은 방식으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공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 해당청은 명확한 원산지 표시를 공표한 현행 문구가 정상적인 구매가 가능한 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의 초안은 다양한 방식(예를 들어, 프랭카드, 라벨, 스티커, 밴드, twist tie 등)으로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적절하게 명확히 표시하였다. 하지만 해당청은 구체적인 실례로 핀 태그(pin tag)를 포함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권고안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 60.300(d) 조항

- 의견 종합 : 표식이 상자 내용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대량품목을 상자에 혼합하여 담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공되는 문구 뒤에 “상당한 분량의”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개별 스티커 부착 방식은 대량 표식방법의 소멸과 참신한 표식으로 포장된 제품의 소멸을 가져온다고 우려를 표시하는 이도 있었다.

■ 60.300(e) 조항

- 의견 종합 : 해당청이 허용 가능한 표준 원산지 약어를 정의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승인한 3가지 서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가 있는가 하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가 코드를 사용한다면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국가들의 약칭을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이도 있었다.

“브라질산 제품”을 타당한 원산지 표기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청이 원산지 국가명 표기를 대신하여 주 또는 지역 표기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국가명을 형용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구를 수정하여 “지역명/도시명” 참조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 해당청의 응답 : 해당청은 원산지를 무리 없이 지칭하는 약어와 변형 철자를 이 법률 초안대로 허용하도록 하는 문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문구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공표에 포함된 문구와 동일하며 현행 법규를 계속 따르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원산지 국가명 표시로 “브라질산 제품”을 사용하는 일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의 경우 특정 종류의 제품을 지칭하지 않는 한(예를 들어 브라질 견과) 국가명의 형용사형은 분명히 허용된다. 해당청은 “지역명/도시명” 참조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역명/도시명” 참조사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 권고안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원산지표시국으로 브라질산 제품 사용 확인과 관련하여 형용사형태의 국

가명은 제품의 종류(브라질땅콩)를 언급하지 않는 한 특별히 허가된다. 지역/도시 관련 언급을 삭제하라는 의견제출가의 권장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청은 논평가의 권장사항에 동의하며 그 표현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 권장사항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59716

■ 60.300(f) 조항

- 의견 종합 : 논평가들은 해당청에서 원산지표시국 대신 연방 및 지역표시 명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해당청의 응답 : 이 법은 모든 포장물품에는 원산지국 정보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국 대신 연방 및 지역표시명칭을 허용한다고 해서 법령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권장사항은 채택되지 않았다.

▶ 기록보관

■ 개요

- 의견 종합 : 해당청에서 원산지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특정 기록을 열거할 것을 권장하거나, 웹사이트상에서 최종공표의 서문에 게재한 원산지 및 생산방법 주장을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록의 예를 열거하도록 권장한 논평가들도 있었다.

또 관세법, PACA, FDA에서 요구하는 범위 밖의 추가기록을 해당청에서 요구하지 말 것을 권장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방법 주장을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한 지침과 외국물품에 대한 요구조건을 해당청에서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법령 서문에는 제품의 보관 절차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록에 대한 설명이 없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으며, 이 요구조건이 생물테러법에 의거 FDA의 기록보관권한으로 제시된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있으므로 삭제하라고 주장한 논평가들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원산지 및 생산방법주장에 이용가능한 기록 확인과 관련,

해당청에서는 법규에 기록의 예를 포함시키고 추가 지침을 포함시킬 것임을 표명하였다. 그 외, 60,400(b)4 조항은 수입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이 규정의 준수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관세법, PACA, FDA에서 요구한 현재기록사용과 관련, 현재 기록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도까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기록을 입안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제품의 보관절차의 수립과 관련, 해당청에서는 이 규정에서 그 표현을 삭제하였다. 최종잠정규칙에서 소매업자가 여러 다른 표시방법으로 거래에 독특한 제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포장물품의 바로 전단계 출처 및 후속 인수자를 설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기록을 보유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해당청에서 어떤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사슬을 통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서류가 된다.

▶ 기록보관 유지

- 의견 종합 : 해당청에서는 기록표시보관 요구사항과 관련 수많은 논평을 접수했는데,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에게는 기록보관 시간을 더 짧게 하고, 특히 도매업자 및 본사소재 소매 기록에 대해서는 1년 기록보관기간을 권장했다. 상품의 합리적 유효기간(부패가능한 물품은 30일이면 충분함)과 관련, 부패성 물품은 6개월, 소매업자 및 도축시설의 경우 90일간의 보관기간을 권장했으며, 소매점 수준에서는 다양한 기록보관 요구사항으로 상품이 상점에 30일간이나 진열되어 있던 기간을 제한하여 2일로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 폐기처분할 것을 제안했다.

소매업자를 확인시켜주는 본사소재 소매기록의 보관과 관련, 소매단계에서 원산지확인이 표시된 날짜는 상품이 소매점에서 접수된 날짜라는 것을 명기하는 표현을 법령서문에 언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매업자들이 소매 판매후 7일간의 기록보관기간의 요구사항이 경과되는 시점을 판단하기엔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으며, 도매업자에서 소매단계까지 제품에 따라다니며, 도매업자가 제공한 포장물품의 원산지 및 생산방법을 식별해주는 서류는 소매업자가 포장물품의 원산지 및 생산방법을 설정하는데 소매단계에서 의존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 경우도 있었다. 상품의 라

벨표시는 소매업자가 의존하는 서류상의 증거이므로 소매단계에서는 사전에 라벨이 표시된 상품에는 추가 표시를 요구하지 않도록 권장하였다.

- 해당청 응답 : 해당청에서는 도매업자 및 본사소재소매기록에 대한 1년간의 기록보관기간이 적합함을 인정하며, 이 요구사항은 생물테러법에 의거 FDA가 제안한 기록보관기간과 일치하므로 본 규정과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위한 시행심의를 해당청에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소매점별 레벨 기록보관기간과 관련, 상품이 진열된 기간 동안 기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권장사항에 동의하며, 7일간의 소매판매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대체로 소매단속활동으로 이미 판매된 상품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며, 소매단계에서 원산지확인이 표시된 날짜는 상품이 소매점에 입고된 날짜라는 것을 명시하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이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패성 물품의 경우, 소매업자는 일정기간동안 판매용으로 상점에서 전시된 상품을 입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권장사항은 채택되지 않았다. 사전 라벨표시된 상품은 소매단계에서는 추가 서류작업이 필요치 않으며 원산지표시국 및 생산방법을 포함하는 서류는 소매업자가 의존할 수 있는 적합한 서류라는 것에는 동의하며, 따라서 60.400b1과 60.400c1를 수정하였다.

59717

▶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책임

- 의견 종합 : USDA만이 라벨표시계획을 입증, 감사, 및 지휘할 권한을 가지도록 최종규칙에서 명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산물포장물품의 공급업자들은 별도로 생산방법을 추적해서 서류작업을 하도록 해당청이 명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법령전문에 사전 포장된 상품만을 유통시키는 도매업자와 같은 공급업자들은 그와 같은 서류작업이 필요치 않음을 명시하도록 권장했다.

수입업자는 구매, 재고목록, 수입물품 및 국내물품의 판매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합한 기록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권장하기도 했으며, 소매업자 및

중간 공급업자에 대한 안전피난 공표는 이 법조문에 특정한 법령기초가 없다고 생각하며, PACA 기준을 이 법에 의거 필요한 주장에 적용시키는 것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이 소매업자관련 안전피난공표는 생산방법의 오류표기로까지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또 소매업자는 도매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이나 체계를 확인할 책임 및 의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안전피난공표에 포함된 ‘합리적인 지식’이란 표현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 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해당청 응답 : USDA만이 라벨표시계획을 입증, 감사, 및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는 명시적 표현과 관련, 전문의 시행부문에서는 USDA만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한 강행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해산물포장물품의 공급업자들은 별도로 생산방법을 추적해서 서류작업을 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관련, 도매업자는 모든 포장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국 및 생산방법정보를 제공하라는 공표에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이는 중복되며 불필요한 것으로 해당청에서는 60.400b5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추가 변경사항은 없었다. 수입업자는 구매, 재고목록, 수입물품 및 국내물품의 판매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합한 기록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과 관련, 법에서는 해당청이 그런 상세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정보는 원산지 및 생산방법 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이 권장사항은 채택되지 않았다.

안전피난공표와 관련, 해당청에서는 생산방법의 오류표기로까지 연장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에 동의하므로 60.400b2를 수정하였다. 안전피난공표의 법령기초와 관련, 소매업자가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국 및 생산방법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기초는 이 법의 253조항과 283 조항의 표현에 근거를 두고 있다. 283 조항은 소매업자 관련 특정 강행조치 및 벌칙을 공표한 반면, 소매업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는 253조항에 공표되어 있다.

소매업자에 대한 벌칙은 소매업자가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해 타인이 언급

한 기록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고의적 위반을 근거로 한 반면, 소매업자는 도매업자가 제공한 그릇된 혹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소매업자에 지우는 의도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지식’이란 표현은 공급업자가 제공한 원산지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소매업자가 알 가능성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고의로 회피했을 경우 해당청에서는 소매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을 수 있다. 한 예로, 한 소매업자가 미국산 제품표시가 된 생물 연어를 수령했다면 그러한 진술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급업자가 공급한 정보를 책임없이 제 삼자의 정보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않고 소매업자가 입수한 문제와 관련, 소매업자에 대한 벌칙은 고의적 위반을 요하고 최종 규정에는 안전피난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표현은 필요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 진술서 및 자기 검증의 사용

- 의견 종합 : 상정안에서 해당청은 공급업자에게 중간 물품인수자와의 거래시 원산지 주장 및, 적용가능하다면, ‘자연산 혹은 양식된 혹은 제조된’ 표시는 진실한 것이며, 필요한 기록을 보유할 것을 입증하는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이 실용성이 있는 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진술서는 성가시며, 비용이 많이 들고, 숙지하고 있는 법 위반사항을 경감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고 권고하였다.

어떤 이는 소매업자가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 있는 보증표시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거래마다 이 진술서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한 사람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은 주마다 다양할 수 있다. 진술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 검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자가 많았으며, 공급업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자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장하였다.

- 해당청 응답 : 자기 검증서류 혹은 진술서는 판매 사슬을 통해 이용 가능한 감사기록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만, 이 기록은 원산지 표시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류 및 어패류 산업의 판매관행측면에서, 해당청은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이 실천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 시 행

- 의견 종합 : 이 법규 시행은 지연될 것을 대비한 유예기간을 포함시키고 처음 1년간 시행보다는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계획을 이행하도록 권장했으며, 해당청에서 소매업자가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시행과정을 명확히 공표하도록 권장하였다.

소매업자가 의도적으로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거 혹은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 아니란 것을 제시하였으며, 고의는 원산지 표시의 오류표기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그릇된 정보를 가져오는 어떤 행위로 공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포장물품의 대부분이 라벨표시가 되어 있다면 소매업자는 그 의무공표를 충족시켰음을 해당청에서는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권장했으며, 해당청에서 주정부와 협조하기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였다.

제 삼자가 이 규정의 지배를 받는 일방에 대한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해당청에서 만들도록 권장하였으며, 어떤 정보가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통일성의 부족을 초래하는 제 삼자에 의한 감사를 감내하기에 충분한지 해당청에서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최종규칙은 비소매업자에 대한 법령기준을 열거하거나 최소한 상술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AMS 벌칙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해당청 응답 : 소매에서 판매된 포장제품은 냉동 또는 방부 처리된 상태(날것이 아닌)라서 2004년 9월 30일 이전의 제품은 원산지 및 생산 정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의 유효일자는 최종잠정규칙의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가 되며, 2004년 12월 6일이전에 포획된 냉동 어류 혹은 어패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AMS 는 최종잠정규칙의 유효일자로부터 추가로 6개월 동안 관련산업교육 및 구제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다. 법규제정에 포함된 조항에 관한 산업교육 및 구제활동을 실시하는데 총 12개월이 걸릴 것이다.

‘고의적인’ 위반사항을 구성하는 법규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시행조치를 개시하기 전, 상황과 관련된 사실 및 입장을 고려할 것이며 그 외, 관련 산업에 규정준수사항과 시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생물테러법에 의거 규정을 공포할 때 FDA가 공포한 지침과 유사한 준수지침을 공포할 것이다.

최종잠정규칙공표이후 주정부와의 협조와 관련, USDA는 소매단계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주정부와 협조적인 합의체제를 모색하며, 주정부에 감사대상 소매점과 빈도수, 감사대상물품, 감사절차 등과 관련된 계획표를 제공한 다음, 적절한 시행조치를 진척시킬 것이다. 제 삼자 감사와 관련, 이 규정의 지배를 받는 어느 일방에게 제삼자감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 규정의 지배를 받는 어느 일방이 계약약정에서 정한 바 제삼자에 의한 상대방의 감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비소매업자에 대한 벌칙과 관련, 농장법 조항에서는 비소매업자의 규정위반사항을 적용할 때 253조항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다른 시행조치로 판단할 수 있는 벌칙 및 후속 행정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최종잠정 규칙의 시행조항에 비소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시행조항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벌칙의 감축범위와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적절한 벌칙조항을 결정할 것이다.

59718

▶ 기존의 주정부 계획

- 의견 종합 : 기존의 주정부 계획과 관련하여 상정된 규정에 대해, 이 규정이 주정부법보다 우선한다는 결론을 상술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정부로부터의 어떤 견해도 채택되지 않았다.
- 해당청 응답 : 이 규정의 지배를 받는 상품을 포괄하는 주정부 계획이 우선되는 것을 명시한 부가 표현을 추가하였다.

▶ 기 타

- 의견 종합 :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은 폐지하고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과 USDA가 의회로부터 행정구제조치를 모색하고 최종규칙 대신 최종 잠정규칙을 공표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원산지표시는 수입물품에 대한 차별조치로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는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규정이 다양한 WTO 공표와 일치하는지 의문시켰다.
- 해당청 응답 : 당국에서는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자발적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최종 잠정규칙 공표와 관련, 여러 논평의 접수 결과로 취한 변경사항 및 관련부대 비용으로 공개적 건의내용을 수락해야 하며, 이 규정을 최종잠정규칙으로 공표할 것으로 생각 중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다른 포장물품과 관련된 최종조항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WTO 협정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을 통해 이 의무조항을 심의한 결과, 이 규정이 국제의무조항과 일치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 경제 충격에 대한 예비분석(시행령 12866)

- 의견 종합 : USDA는 이 대체 접근법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AMS도 명확한 대안을 고려하지 못했다. 논평가는 소매업자의 기록보관기간을 7일에서 2일로, 총 기록보관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과 또 1개국이상과 관련된 상품의 경우(원산지 혼합) 특정 라벨 표시보다는 일반적인 라벨을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해당청 응답 : 상정안은 대체적 규제접근방법에 대한 제한적 재량권한을 확인시켜주었지만, 대체 방법은 심의되었다. 예비 경제충격평가에서는 원산지 및 생산방법의 표시 의무가 있는 상품의 범위를 변경하는 ‘가공 처리된 식품항목’의 용어정의도 심의하였다. 이 최종 잠정규칙에는 가공처리 식품의 수정된 용어조항이 포함되어 관련 산업의 저비용 이행을 초래할 것 같다. 또 당국은 식품생산 및 유통 사슬을 따라 원산지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진술서의 사용영향을 고려하였다.

최종잠정규칙으로 소매업자의 경우 기록보관 부담을 물품의 소매판매 후 구입시점까지 7일에서 2일로 줄이고, 포장물품의 경우 소매업자 및 공급업자에게 기록보관부담을 2년에서 1년으로 감축되었다. 규정에 1개국이상과

관련된 상품의 경우 특정 라벨 표시보다는 일반적인 라벨사용에 대한 재량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건의는 당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규정은 포장물품의 소매업자가 원산지국의 소비자에게 포장물품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 혼합’과 같은 라벨은 원산지가 1개국이상 관련되어 있는 것 외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 의견 종합 :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바람직하다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상정된 법안에서 AMS 는 주장하고 있는바, 소매업자는 해산물도 그 출처표시를 하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그 외, 그러한 라벨표시는 잘못된 것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해산물은 국내산보다 외국산에 표시가 덜되어 있다고 주장한바, 원산지표시 의무조항은 필수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해당청 응답 : 예비 경제 영향평가에서 원산지조항에 관한 압도적인 시장 실패 논쟁은 없는 것으로 당국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소비자의 요구로 라벨표시 작업을 하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 자발적 원산지 표시조항이 장애요인이 된다는 증거는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일부 소매업자가 해산물에 출처표시를 한 사실은 시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원산지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 의견 종합 : 예비 경제 영향분석은 주로 소고기 라벨표시에 관한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이 연구는 해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유인즉 해산물은 소고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될 가능성이 더 많고 확연히 구분되는 2가지유형의 생산체제를 갖기 때문이다. (자연산 어획 및 양식업)
- 해당청 응답 : 위 연구는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당국은 소고기 대 해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특성의 견지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에서 추정된 내용을 전가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여러 논평에 기초해서, 당국은 자연산어획 대 양식은 해산물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의견 종합 : 원산지 공표의 실제 가치를 판단할 때, USDA는 소비자교육, 소규모 미국 생산업자들의 값비싼 로비능력의 부재, 점진적인 규제에 중요성 및 시장에서 그릇된 정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자도 있었다.

59719

- 해당청 응답 : 원산지표시 의무조항에서 소비자교육이 기업에 이익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당국은 동의한다. 당국이 대중에게 이 규정의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동안, 관련 산업은 원산지표시를 진취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를 교육시키려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이 규칙의 합리적인 근거의 토대를 이루는 시장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규칙의 의도는 소매단계에서 공급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 원산지표시의무조항주장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의견 종합 : 상정안의 이점과 관련하여 USDA의 초기 분석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는데, USDA는 원산지법의 이점을 인정하거나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자가 많았다. 900명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식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85 %는 미국산 식품을 사는 경향이 더 많고, 비싸더라도 미국산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86%가 원산지개념을 더 선호했다. 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68%는 더 비싼 미국산 식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USDA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 해당청 응답 : 경제 영향 예비분석에서 당국은 상정된 규칙에서 이점을 확인하고 인정했으며, 대다수 소비자들은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상당수는 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표명했다. 당국은 또 이 연구결과에서 소비자는 원산지정보에 대한 대가를 치를 의사가 상당함을 언급하였다. 이 기간 동안 당국의 결론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끌

어내리지 못했으나, 이러한 진보된 관심으로 미국산 포장물품 가격이 더 높아지거나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2004년 전국농민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소비자의 식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즉, 그러한 반응이 실제 구매행동으로 옮겨질지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으며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포장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원산지 정보의 자발적인 조항에 대한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 외, 일부 포장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미국산 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미국산 상품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식품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출처관련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당국은 계속 주장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소비자 선호도는 1~5% 정도 소비자요구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미국산 제품으로 옮겨갈 것이므로 상정된 규정의 실행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 해당청 응답 : 위의 주장자는 어떤 근거로 소비자선호도가 미국산으로 변화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1~5 % 정도 소비자 요구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증거도 불충분하다.
- 의견 종합 : USDA는 이 계획을 집행할 직접비용과 그 기금의 출처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자도 있다고 밝혔다.
- 해당청 응답 : 당국은 이 계획의 집행에 충당할 기금을 사용할 의도가 있으며, 연간 최소 280만 달러가 들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매년 5%의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 의견 종합 : 예비 경제영향 평가는 광범위한 실행비용제시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자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예비 경제영향 평가에서 당국은 영향을 받는 업체가 상정된 규칙을 이행하는데 취할 필요가 있는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증가비용을 산정하였다. 자발적 원산지표시지침에 대한 의견 및 상정된 규칙의 개발 과정 시 구제노력으로 수락된 피드백으로 당국은 원산지표시의무조항 이행에 대한 상반된 청사진을 그리게 됐는데, 하나는 이행 및 작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추가 기록보관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행 및 작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추가 기록보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작업에 대한 추가 변경, 시스템 개발 및 자본지출이 수반됨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당국이 산정한 직접비용의 범위는 원산지표시 의무조항의 이행비용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반영하였다.

상정안에 접수된 논평을 고려하여, 당국은 최종 잠정경제영향평가서에서 이행비용은 상정안과 함께 발표한 예비경제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업 및 무역협회는 이행비용에는 여러 비용이 부가되며 기록보관 관행 이상의 실행상의 변화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국은 이 평가서에서 비용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의견 종합 : 위 평가서는 비용견적의 기초가 되는 구성원을 상술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며 각 포장물품별로 비용견적부문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 해당청 응답 : 위 평가서에 언급된 대로, 당국은 공공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 및 연구에서 직접적인, 증가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자료는 상정안에 충분히 참고하였다. 이용 가능한 연구에 정보가 제공되는 정도까지 당국은 비용구성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는 것은 비용구성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USDA의 예비 평가견적서는 산업의 인프라 및 현재 라벨표시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PACA와 같은 기존의 규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이가 있었다. 유사하게, 위 평가서는 관세법 및 PACA 같은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는 비용을 제외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당국의 예비비용견적서는 기존의 산업의 인프라, 라벨표시 관행 및 PACA같은 법령을 고려했으며, 상정안의 이행비용을 산출하고자 했으며, 규칙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기업의 작업 및 기록보관 체제에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가정했다. 당국의 가정으로 PACA에 의거 공표된 것과 같은 연방규정의 존재가 인식되었는데, PACA에 의하면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생산자, 가공처리업체, 중간상인 및 기타 산업참여자도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대신, 본 규정의 지배를 받는 업체가 주장하는 상품 주장, 즉 부패성 농작물은 원산지가 있다는 주장 혹은 거래를 입증할 기록을 요하고 있다.

또 당국은 기록의 보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규정의 지배를 받는 기업들은 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기록보관체제를 개발하였다. 이런 인프라 및 기록보관체제로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을 포함한 추가정보요구사항의 부수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당국의 예비 비용견적서는 기존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단위당 비용이 부패성농작물의 경우 위 법 및 공표 및 기록보관요구사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른 포장물품보다 대체로 적게 산출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 의견 종합 : 위 평가서는 유사한 자발적 주정부 라벨표시계획 즉 ‘캘리포니아를 사라’ ‘텍사스로 가자’와 같은 계획을 고려하지도, 논의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한 자가 있다.

- 해당청 응답 : 자발적 주정부 라벨표시계획은 규칙의 영향평가에만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자발적인 성격을 띠지만, 이 규정은 강행성을 띤다. 주정부계획에 의거,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은 없으며,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참여하더라도 판매물품에 라벨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

반대로 이 규정은 강행성을 띠므로 소매업자 및 공급자는 100% 포장물품의 판매의 경우 소매단계에서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로, 자발적 주정부계획에는 기록보관 및 원산지 추적에 대한 비슷한 유형의 요구사항이 없다. 셋째, 자발적주정부계획은 종합

적인 계획으로 단순 라벨표시 작업 외에 판매 및 홍보도와 관련되는 반면, 이강행공표는 라벨표시는 언급하지만 판매 및 홍보활동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예로, 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질기준을 요구하며, 주별로 홍보 및 판매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자질 기준 및 홍보활동은 단지 라벨표시사항을 언급한 이 규정에 비해 상이한 시장 효과를 암시해 주고 있다.

59720

- 해당청 응답 : 해산물 생산업체의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생각하며, 최종잠정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첫 해 시행비용은 생산업체당 241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믿을 만하고 타당한 정보를 소매단계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품생산 및 판매 사슬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생산 및 판매사슬을 통한 추가비용은 어선의 경우 현재의 NOAA 기록보관요구사항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의견 종합 : 잠정비용은 인쇄 코드관련 추가 장비 및 컴퓨터 프로그램 및 라벨검토 및 재구성 비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 해당청 응답 : 이러한 비용은 규정을 이행하는데 수반되는 것으로 상정안과 함께 공표된 예비 비용견적서 및 위 평가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USDA의 비용견적서는 산업의 복잡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소평가된 것이며, 비용견적 또한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 해당청 응답 : 당국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 견적은 규정 이행 첫해에 관련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대 비용을 완전히 반영하도록 모색했으며, 최종잠정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체별로 부담할 이행비용을 완전히 반영하도록 모색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상정안은 원료와 냉동재고의 격리를 요구하고, 복합적인 규제를 요구하며, 가공생산라인을 다른 원산지로 옮겨가기 위해 폐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산물 캔제품 생산공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는 이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해산물캔제품이 최종잠정규칙에서 제외되더라도, 당국은 관련 기업이 작업 절차에 이를 적용한다면 규정을 준수하는데 부담을 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 평가서에 제시된 이행산정비용은 이러한 유형의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미국에서 소비되는 어류 및 어패류의 3/4은 수입물품으로, 1/4만이 양식장에서 양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해당청 응답 : 어떤 제품의 출처를 캐기 위해 원산지국 수가 많을수록, 상품이 생산 및 판매 경로를 거칠 때마다 원산지국의 제조, 유지, 수송 업무는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 예로, 1개 국을 거친 제품은 충분한 기록 보관추적과 함께 1개의 생산라인을 필요할 것이다. 1개국 이상을 거친 제품은 필수 기록보관 요구사항과 함께 여러 유형의 격리계획, 추가 보관, 추가 생산 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어류 또한 자연산어획 혹은 양식된 것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체계를 통해 정보를 유지하고 전달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 의견 종합 : 관련 사업에 대한 상정안의 기대비용을 언급한 자도 있었는데, 한 예로, 재배업조합은 재배업자 단독 비용이 350만 달러를 초과할 것을 추산했으며, 농작물 상점체인은 매년 기업 당 35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주장했다.
- 해당청 응답 : 이 규정시행은 관련 산업의 경우 복잡한 문제로 그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당국의 결론을 확인해 준 셈이다. 소매업자의 추산은 예비 경제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상향범위 비용견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재배업조합의 산정가는 총액의 계산방법 및 총액에 재배업자 비용 및 중간비용을 포함시킨 것인데, 이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

지만 파운드당 당국의 상향범위 비용견적보다 더 낮은 것처럼 보인다.

- 의견 종합 : 해산물 가공업체는 이미 모든 수입캔 계살제품에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법에 의거 원산지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연산 포획된 혹은 양식된 것을 표시하는 것은 커다란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지을 것임을 주장한 업체도 있었다. 이미 사용 불가능한 캔 재고품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포장방법의 디자인 변경을 하는 데는 약 1년이나 걸릴 것이므로 2004년 9월까지 이행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해당청 응답 : 해산물 캔 제품은 최종잠정규칙에서 예외사항이지만, 당국은 어류 및 어패류 제품의 생포 혹은 양식된 것이라는 라벨표시에는 이미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추가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 외, 소매단계에서 판매되는 포장물품은 냉동 혹은 방부처리한 상태로, 이런 제품도 이미 2004년 9월전까지 이미 유통 중에 있으므로 원산지 및 생산 정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의 유효일자는 최종잠정규칙의 공포일후 6개월이 된다. 더욱이, AMS 는 최종잠정규칙의 유효일자 후 6개월간은 산업 교육 및 구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기존 제품이 유통망을 완전히 벗어나고 AMS가 입법과정에서 포함된 조항에 관한 산업교육 및 구제계획을 실시 하는데는 총 12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 외, 기존의 라벨 및 포장재료는 완전 소모될 것이다.

- 의견 종합 : 어류 및 어패류부문의 예비경제영향평가서는 한 연구결과에서 추론한 것으로, 상정안에서는 이 연구에 의한 추산액이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너무 낮다고 USDA가 주장하고 있음을 언급한 이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어류 및 해산물 생산업체에 대해, 위의 연구결과인 100만 달러와 비교하여 당국은 파운드당 0.0025달러로 총 1900만 달러를 추산하고 있다. 어획업자 및 양식업자는 이미 원산지 및 자연산포획 대 양식 관련 주장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예로, 어획업자 및 양식업자가 보관한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USDA의 기대가 있다. 이러한 기록은

부화기록, 사이트 맵, 사육기록, 선박기록, 미국선박확인번호, 부화기록, 수입허가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원산지 및 생산방법을 입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록유형의 추가 예는 준수지침에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고비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생산업체에서 다음 구매자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정보교환은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생산업체당 첫째 이행비용이 241 달러로 추산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9722

어류 및 해산물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의 경우, 당국은 파운드당 위 연구에서 산출한 상향범위의 비용을 채택하였지만, 어류 및 해산물 총 생산량 단위는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의 경우, 당국의 예비산정서에는 캔 제품을 포함시키는 반면 위 연구의 산정서에서는 신선류 및 냉동제품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당국의 수정된 견적서는 가공처리 식품 항목의 용어의 변경으로 인해 캔 제품뿐만 아니라 어류 스틱, 어류 조각 및 빵가루를 입힌 새우 등도 제외하고 있다. 그 외, 위 연구에서는 어류 및 해산물제품의 1/3은 소매를 통해 유통된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당국은 국내포장물품의 41.4 %가 이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당국은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될, 처음에 산정한 생산점유율을 반박할 의견은 접수하지 못했으나, 다른 식품과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낮은 비율의 어류 및 어패류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점유율 추산치를 수정하였다.

- 의견 종합 : USDA는 생물테러법에 의거 새로운 FDA의 기록보관요구사항의 준수체계 개발 비용을 대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자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당국이 생물테러법에 의거 공표되고 있는 FDA 규정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FDA가 제안한 규칙 중에서 기록의 보관 및 수립에 관련된 규칙은 아마도 원산지 표시의무조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FDA의 기록보관과 관련하여 제안된 규정은 아직 확정적인것은 아니며, 당국은 최종

규칙이 상정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소고기, 돼지고기 및 양고기 포장물품은 USDA의 단독 규제를 받는 식품을 FDA규정에서는 보호하지 못하므로 FDA 입법과정에서 예외사항이다. 마지막으로 PACA의 규정 및 유사한 기존의 연방규칙에 대해서 FDA규정에서는 원산지 정보는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혹은 공급사슬에서 기업이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미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한 이득은 무시하면서 미국 농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당국은 장기적으로 고비용은 소비자한테 포장물품에 대한 고가의 형태로 전가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증개업자 및 소매업자가 부담하는 증가비용은 농장수준에서는 저 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수요의 하락은 차례로 생산업자한테는 낮은 원가를 가져올 수 있다.
- 의견 종합 : 특히 같은 소고기의 가공처리의 경우 상정안에 대한 잠정적인 무역제한 영향을 지적한 자도 있었다. 저비용의 물품을 찾는 고기 분말업체는 수입쇠고기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찾게 될 것이며, 복잡한 출처와 관련된 비용으로 유통업체는 단일국에서 물품을 조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의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업체는 미국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은 같은 소고기 가공업체의 융통성을 제한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자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수입업자 및 국내 공급업자 모두 이 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당국은 기업들이 이 규정의 요구조건을 준수할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 결과 ‘경제연구소’가 연산 가능한 전체 평형으로 추산된 대로 소규모 무역영향은 이 규정의 어떤 조항보다는 포장물품의 생산비의 전반적인 증가에서 야기된 것이다.

- 의견 종합 :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은 무역을 규제할 것으로 주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내국민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차별조치로 의도된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였다.
- 해당청 응답 : 수입업자 및 국내 공급업자 모두 이 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어류 및 어패류의 원산지 및 생산방법과 관련,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어류 및 어패류 수출은 약간 하락할 것이며, 수입은 규정과 10년간의 조정 기간 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이 규정의 어떤 조항보다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어류 및 어패류 포장물품의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 의견 종합 : 상정안은 생산비용을 올리고 생산과정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외국산 저가 수입물품과 비교하여 국내 캔해산물제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 이가 있었는데, 충분한 공급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및 캐나다에서 포획되는 청어를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규정은 메인주의 정어리 가공처리작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해당청 응답 : 최종잠정조치는 어류 및 해산물 캔 제품의 라벨 표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 의견 종합 :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은 비용을 추가해서 국제시장에서 미국산 업의 경쟁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주장한 이가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은 포장물품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포장물품 생산업체 및 가공업체는 시장성 판단에 결국 대부분의 제품이 유통성을 유지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업체 및 가공업체는 대부분의 제품이 이 규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유통경로에 결국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록보관 및 대부분의, 전부는 아니지만, 생산관련 원산지 주장을 입증하는데 드는 작업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당국은 가정하고 있다. 포장물품의 미국 수출은 이 규정의 10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 결과와 함께 고비용은 고가의 형태로 전가될 것이다.

- 의견 종합 :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의 이행은 판매지역에 관계없이 비용 및 복잡한 문제를 모든 포장물품에 부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 해당청 응답 :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의 이행은 판매지역에 관계없이 비용 및 복잡한 문제를 모든 포장물품에 부가시킬 것에 동의한다. 첫째, 생산업자와 중개업자는 판매 계획을 융통성 있게 할 것이며, 제품에 라벨을 표시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둘째, 정당한 원산지 정보가 없는 포장물품은 더 이상 대체가능하지 않는데, 이는 이 규정에서 보호되는 소매판매 수립기준으로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품은 생산 및 판매 사슬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계통의 감소로 효율성은 커지고 비용도 증가될 것이다.

59723

▶ 국회 법률 융통성 분석

- 의견 종합 : 한 논평자는 기록 보관과 다른 적용 비용은 영세 자립 농부에게 차등 부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세 자립 농부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논평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초기 규정 융통성 분석에서 해당청은 잠재적 규모의 경제가 원산지 표기 의무조항의 요건에 순응하는 시스템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법집행비용은 대기업에 비해서 소기업이 불균형적으로 높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영세 농민과 소기업은 더 단순한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서 더 낮은 발전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본 규정은 특정 기록 보관 시스템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소량 어획 활동은 복잡한 전자 기록보관 시스템보다는 프린트물 같은 것을 이용한 하드카피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 의견 종합 : 한 논평자는 공급자는 원산지 표기 의무조항에 대한 어떤 공급자의 슈퍼마켓 업계에 반하여 차별적인 효과를 가진 시장 선호에 영향

- 을 미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는 다른 채널에 관련 상품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미 농무부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 해당청 응답 : 원산지 표기 의무조항의 목적은 법과 규정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음식점과 다른 소매업자들은 그러한 원산지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소매업자들은 관련 상품에 대해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해당청은 프로듀서와 중간상인은 그들의 제품을 선택적으로 판매채널에 판매함으로써 법적인 구제를 찾을 수 있다고 제의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설명되었듯이 해당청은 프로듀서와 중간 상인은 결국 최대한의 시장 유통성을 위하여 모든 그들의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 의견 종합 : 한 논평자는 단지 PACA 라이선스를 가진 소매업자에게만 원산지 표기를 하게 하는 것은 소매업자들이 PACA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으려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수산업계의 배척은 불공정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PACA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은 소매시점에서 만 1년 이내에 인보이스 가액이 23만 불을 초과하는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매업자에게는 의무적인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도입은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대부분의 관련 상품들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준다. 원산지 표기 의무조항이 필요치 않는 수산업자나 다른 소매업자들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자보다 이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정확히 어떤 소매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제시된 대안들은 작은 업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 법률 유통성 분석은 부적절하다는 논평이 있었다. AMS는 추가적인 경제적 분석을 해야 하며 작은 업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이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해당청은 초기 법률 유통성 분석에서 소형업체에 대한 잠

재적 대안을 조사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법 구제를 제공하기에는 자유재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대형업체든 소형업체든 영향 받는 이에게 법구제가 제공된다면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원산지 표기가 요구되는 제품의 수는 가공음식의 정의가 넓어졌기 때문에 감소한다. 해당청은 작거나 큰 회사가 규정의 요건을 따르도록 법 적용 가이드를 준비할 것이다.

- 의견 종합 : 다른 채널이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 참여자가 그들의 물품을 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평이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대부분의 기업은 동규정의 준수함으로써 최대한의 시장 유통성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어떤 시장 참여자가 원산지 정보가 요구되는 소매업자가 아닌 다른 채널에 물건을 파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적 효과 평가에 나와 있듯이, 해당청의 추산에 의하면 58퍼센트의 생어류 및 냉동어와 38퍼센트의 조개류가 가정에서 소비되며 집에서 소비되는 관련 상품의 65.8퍼센트는 동법에 종속되는 소매업자에 의해 판매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시장(어류의 62 퍼센트, 조개류의 75퍼센트)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법에 종속되지 않는 소매업자나 소매점등에 원산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가공식품의 재료나 수출판매로 규정된 어패류는 본 규정의 요건에 종속되지 않는다.
- 의견 종합 : 본 규정은 설계 표준이 아닌 성과 표준이기 때문에 유통성을 제공한다는 견해에 문제가 있다는 논평이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해당청의 결론은 각 회사는 유통성 없는 설계 표준에 반하여 이것은 지속적인 잠정 최종 규칙의 사례가 될 것이며 해당청은 동법의 성과 표준에 의해 회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정 준수에 대한 비용 최소화 솔루션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계속해서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 가공업자, 다른 영향 받은 회사들은 그들의 공급자에게 다른 요건을 내걸 것이다. 해당청은 시장 참여인들이 규정 요건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규정 준수 가이드북을 발간할 것이다.

- 의견 종합 : 예비 규제 융통성 분석에서 PACA의 소매업자 규정에 의해 영향 받는 소기업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나타낸 논평이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이 논평에 동의 하지 않는다. 예비 규제 융통성 분석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7년 경제 센서스에 의하면 한 해 동안 67,916개의 음식점, 창고 클럽, 할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66,868개의 회사들은 소기업이다. PACA 자료에 의하면 4,512명의 소매업자들이 동 규정의 저촉을 받으며 이들 중 3,464명은 영세 상인이다. 즉 73,404명의 더 소규모의 소매업자나 모든 작은 음식점 소매업자의 94.8 퍼센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수치는 기업에의 숫자이며 판매점의 숫자는 아니다. 소기업 연합은 회사에 의해 경영되는 매점의 규모가 아닌 회사나 사업의 규모에 기초하여 표준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시장 채널을 통한 판매를 선택하고 관련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제조업자나 중간상들은 본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소매업자의 정의에 의하여 이 부문에서 소기업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술되었듯이 관련 상품의 대다수의 판매는 본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클레임이 없으므로 본 규정은 상품에 대한 중대한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 의견 종합 : 제조업자에 대한 비용은 제한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록 보관 시스템을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해당청의 결론에 의문을 가진 논평이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예비 규제충격 분석에서 해당청은 실행비용을 추정했었다. 낮은 범위의 추정치는 기록 보관 시스템의 실행과 유지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다. 높은 범위의 추정치는 규정의 준수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다. 국회 분석에서 해당청은 직접증분원가는 추정범위의 상단에서 중간으로 떨어질 것으로 결론지었다. 잠정 최종 규칙 효과 분석에서 해당청은 영향 받는 기업에 대한 비용은 기록 보관 활동 하나에 대한 예비 낮은 범위의 비용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반영하는 단순비용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해당청은 본 규정이 PACA 라이선스를 구비한 소매업자에 뿐만 아니라 공급 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평이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해당청의 초기 법적 효과와 법적 융통성 분석은 이 규정에 의해 종속되는 제조업자 중간상 소매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적으로 영향 받는 회사를 고려했다.

- 의견 종합 : 제공되는 융통성은 작은 기업에게는 유용하지 않다는 논평이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해당청은 법에 의한 재량권 한도 내에서 작은 기업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법구제책을 제공해 왔다. 그 규정의 요건은 소매업자가 고객에게 관련 상품의 원산지를 알리도록 요구하는 법률에서 흘러 나왔다. 정보는 공급체인을 통하여 나왔고 소매업자가 고객에게 요구되는 정보를 해당 기업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제공케 한다. 그 프로그램의 준수와 통합을 확실히 하기위해 해당청은 이런 클레임은 감사될 수 있는 기록보관의 단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 의견 종합 : 소기업 규정시행 공정조항는 법 준수 지침의 발간이 필요하며, 복잡성을 분명히 하고 설명하는 준수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규정 준수에 따르는 소기업의 걱정을 줄여주며 자료구비와 기록 보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한다는 논평이 있었다.
- 해당청 응답 : 법을 준수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해당청은 법 준수 가이드 북을 발간할 것이다.

59724

▶ 예비(Preliminary) 문서작업 감축법

- 의견 종합 : 도매상은 새로운 기록보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도매상은 이전 판매인과 다음 구매인의 신원을 추적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노무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 해당청 응답 : 동 규정에서 해당청은 기록보관에 관련된 비용을 추정했다. 그 비용은 구입된 상품의 원산지 정보를 유지하고 공급 채널에 있는 다음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선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이런 조치는 회사의 선하증권, 인보이스, 또는 구입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 상품의 이동과 관련된 다른 기록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해당청은 대부분의 도매인들은 이미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아닌 단지 기존 시스템의 수정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 FDA를 위해 개발된 그 표기 비용 모델은 추가 원산지 정보를 업무 기록에 포함시키는 비용의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련된 노무비는 이러한 추정 비용에 포함된다. 해당청은 이러한 비용은 기본적인 것이며 기본 노무비라고 결론하고 있다.
- 의견 종합 : 소매업자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록보관은 주로 전산화된 방법으로 행해진다는 가정에 대하여 강한 부정을 제기한 논평이 있다. 논평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75퍼센트의 도 소매인은 기록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당국 반응 :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 시설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 규칙에 의해 보호되는 소매업자는 PACA에서 정의한 연간 23만 불을 걷어 들이는 신선하고 냉동한 과일 및 채소류를 다루는 소매업자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매뉴얼기록을 보유하는 소규모 식품 기업들은 위 정의에 기초한 원산지표시조항에서 제외된다. 원산지표시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이미 전자기록보관시스템을 구비했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보다는 기존의 기록보관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념상 종이에 기초한 기록보관 시스템 수정작업은 전자기록보관시스템의 수정작업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렇게 추산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 규칙을 준수하는데 취할 다양한 해결책에 합리적으로 근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의견종합 : USDA는 'FDA pager"를 모델로 삼는다면, 이를 공표해서 연방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해당청 응답 : 라벨비용모델의 논의는 FDA의 공중보건안전 및 생물화학 대비 및 반응법에 의거한 기록수립 및 관리에 대한 법안에서 가능하다.

- 의견종합 : USDA주장은 모순된 것으로, 관련산업분야에서 전자기록을 실시하라고 하고서는 종이문서 시스템에 의한 비용견적에 기초를 두고 있다.
- 해당청 응답 : 기록보관시스템수정작업은 개념상 전자방식 및 종이서류방식과 무관하게 유사하므로, 비용견적방법은 현재 구비된 기록보관시스템의 다양성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의견종합 : USDA는 도매업자 같은 중개업자를 위해 기록보관견적비용을 잘못 삭감하고 있다. (자율적지침을 위해 산정된 기록보관업무로 인해)
- 해당청 응답 : 자발적 원산지표시 지침과 관련하여 발간된 PRA 산정업무에 대해, 그 비용산출 및 지침으로 영향받는 기업의 수에 대한 의견들을 접수한 결과, 법안에 대한 예비 서류작업견적서를 작성할 때 이 견적가를 재고려하고, 그 결과, 영향을 받는 사업체 수 및 사업체당 비용 견적을 개선하였다. 자발적 원산지기록 비용견적을 향상시키려면 노동통계국의 생산자, 유통업자, 포장업자, 취급자, 가공처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업무관련 임금율을 활용하면 된다. 총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임금율에 더 적합한 산출작업을 한 결과, 자발적 지침에 비해 원산지표시의무조항에 의한 총 기록보관산출비용의 삭감되어서 더 정확한 평가로 간주하고 있다.

59725

- 의견종합 : 시간 16.05\$로 행정당국이 추산한 비용은 도매 및 소매수준에서 감독, 전문가 및 관리자에 의한 시간을 고려치 않고 있어, 간접비를 주변이익과 동일시하려면 비율은 25%가 아니라 30-35%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해당청 응답 : 행정지원 직업분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기록보관활동과 관련된 노동기술의 합리적인 복합체를 나타내주고 있어, 현재의 감독 및 관리구조하에 추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유통업자, 포장업자, 취급자, 가공처리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등에게는 기록보관관리활동은 각 포장물품에 대해 원산지 정보를 입력, 추적 및 보관하는 작업이 포함되므로, 감독 및 관리 투입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루어짐을 주장함. 소매업자 방문결과, 비용삭감을 위해 기업에서는 과거보다 고교생 및 대학생은 더 많이 고용하고 있었다. 노동통계국자료는 임금 및 간접비(사회보장, 실업보험, 작업보상비 및 기타 수당을 포함)에 사용되며, 최종잠정규정에서 임금율과 부가수당은 2002년도 통계숫자로 갱신되었고 임금 및 수당 증가를 가져옴. 이는 임금 및 추가 고용유급수당의 가장 정확한 견적치로 생각한다.
- 의견종합 : USDA는 기록보관에 필요한 시간 수는 과소평가했다. 기록 보관작업은 도매업자에게 하루1시간이상 소요되므로 주당1시간은 너무 낮고 소매업자에게 하루 1시간 또한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 해당청 응답 : 어류 및 해산물 도매업자에게는, 원산지 기록 관리 작업소요시간은 연간 52시간으로 산출하고 있고, 일부는 이보다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소규모 도매업자 및 계속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도 주당 1시간이하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주당 1시간은 합리적인 산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생산라인 채소류 도매업자의 경우는 연간 52시간에서 12시간으로 관리시간을 축소했는데 이는 어패류는 이들 업체의 취급물품의 한 부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소매업자의 영업활동을 검토한 결과, 매일 추가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하며, 1일 1시간은 기록보관관리부분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한 것이고 관리활동에는 각 포장물품의 원산지표시정보를 입력, 추적, 보관 작업이 포함된다.

최종잠정규칙은 2003년의 어패류 잠정조항, 여기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논의된 상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V. 영향분석

V. 영향분석

▶ 12866 행정명령 : 최종잠정규제영향 분석

USDA는 최종잠정규칙의 경제적 영향을 행정명령에 따라 검토했는데, 예비규제영향평가서(PRIA)에서 USDA는 규제조치는 경제적의미가 큰데, 1억 달러 이상의 경제규모에 연간영향을 끼치는 규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어패류 관련 최종잠정공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억 달러 미만이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조치가 되는 이유는 경제의 한 부문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예산관리청(OMB)은 이를 심의한다. 위 행정명령은 수당비용분석은 모든 경제적의미가 큰 규제조치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잠정규제영향 평가서는 PRIA에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데, PRIA에 대한 반응으로, 이 상정안의 영향을 받는 포장물품의 범위를 좁힌 결과, 상정안과 관련되는 공표를 변경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최종잠정공표는 포장물품을 양식장에서 양식한 어패류로 공표하고 있다.

의견종합 및 해당청 응답에서 열거된 내용은 PRIA에 대한 것으로 상당부분 변경되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여기 요약되어 있고 수정사항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더 종합적인 논의사항, 자료, 방법 등에 관심있다면 PRIA의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경제분석종합

최종잠정공표 관련 증가수당의 견적은 수량화시키기에 어렵지만, 큰 것 같지는 않으며, 어패류 외획업자, 생산자, 가공처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등의 첫 해 증가비용은 8900만달러로 추산되며, 그후 관리 비용은 첫해 필요한 관리비용 및 총 착수비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표를 이행한 지 10년후 고가 식품과 식량생산축소로 미 경제에 필요한 비용은 620만달러, 즉 현재의 미국 인구를 기초로 연 1인당 약 2센트가 필요하다. 부연하자면, 향후 미국 경제는 이 공표의 이행으로 악화될 것이다.

인간소비목적으로 어패류의 라벨표시조건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과 첫째 최종잠정공표의 비용이나 공급단절비용 등은 수량화시키지 않는 점을 주목하라. 기록보관사항을 제외하고, 첫째 착수 및 관리 비용 대 중간관리비용 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는 충분치 않다.

USDA는 소비자도 원산지표시로 인한 할증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이상정안 조치로 미국산 라벨이 붙은 식품을 소비자가 더 구매할지,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고, 라벨표시, 기록보관 및 기타 관련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산상품에 대해 비용을 더 지불할런지도 의심스럽다. 자발적 미국산 라벨 표시작업이 참여부족으로 소비자들은 라벨표시비용을 벌충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치를 의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59726

▶ 수요 보고서

이 공표는 여전히 정당성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원산지표시조항을 첨가하여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의 이행의무를 부과한 직접적인 결과로 비롯된 것으로,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다.

원산지표시조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및 양고기의 살코기와 같은 고기부문, 어류, 부패성농작물, 견과류 등에(이후 포장물품으로 칭함) 대한 라벨표시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있다. 현 연방 규정하에서 원산지표시는 포장물품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며, 양식 및 생물어류의 라벨표시조항이 제시되어있고, 다른 포장물품은 2006년자로 유효하므로, 이 평가서는 농장에서 생산하거나 생물 어패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위 평가서에 언급된 대로, 원산지조항관련 시장실패주장은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며, 공급사슬 및 낮은 예상수익에서 기업의 사비용을 제외하고 중요한 장애요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매카니즘에 의해 적정수준의 원산지표시조항이 요구된다.

▶ 대안방책

위 평가서는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은 규범적인 측면이 많아지고 입법과정의 규제재량이 필요치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비용이 덜드는 규제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으며, 원산지확인방법, 기록보관사항 및 라벨표시요구사항의 범위에 초점을 맞춘 제안도 있었다.

위 평가서에 대해 USDA는 미국산 물품확인을 위해 미국산 추정기준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수입물품에만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확인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는 물품은 미국산으로 간주되며 미 원산지 추정기준은 미국산이 아닌 물품에 대해 필수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포장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필수확인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부서에서는 미국산 추정기준은 신뢰할 수 있고 입증가능한 원산지 정보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는 타당한 대안이 못된다.

USDA가 기록보관업무를 줄일 것을 제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최종잠정공표에서는 제품의 소매 판매후 구입시점까지 기록보관보유기간은 7일에서 2일로 줄어들며, 전체 보유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다.

위 공표는 사전라벨표시된(제조업체 및 최초 취급자) 항목의 기록보관사항을 원산지 및 생산방법만 기재하도록 간소화시키고 있고, 모든 포장물품의 보관사슬증명기록은(이전의 정보출처 및 후속 수령자) 보관해야 하지만 기본기록물(송장, 운송장, 생산 및 판매기록 등) 위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공처리업체가 연어스테이크포장품에 원산지 및 생산방법을 표시하면 연어스테이크는 소매단계 포장상태로 판매되므로 라벨은 소매업자가 이 제품의 원산지 및 생산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매업자의 기록은 이러한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원산지 및 생산방법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추적할 방법은 필요할 것이다. 본 상정안에 의거, 소매업자는 포장물품에 제공된 정보는 충분치 않을 것이므로 기록보관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록보관요구 변경사항은 유통체인의 사업체가 기록보관시스템에서 변경하는 항목수를 줄일 것이며 필요한 자료의 양도 줄어들 것이다.

최종잠정공표에서는 대부분 원산지표시 공표에서 제외되는 가공처리식품의 정의가 변경되었는데, 라벨표시수가 줄어들수록, 영향을 받는 사업의 이행 및 관리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59727

▶ 이득 및 비용의 분석

위 평가서의 기본방침은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이 없는 관련산업의 현 상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미 규정 및 최종잠정공표의 기대조건을 수용하는 작업을 이행하기 시작했음을 USDA는 인식하고 있다.

- 이 득 : 이 공표의 이행으로 예상되는 이득은 수량화하기 어려우며, 부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예상되는 경제이득은 적으며 원산지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로 돌아갈 것이다. 소비자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 명백하므로, 어패류의 생물 혹은 양식표시에 대한 관심이 주로 많았으므로, 이러한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 갈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 부서의 결론을 바꿀만한 상당한 증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조사 및 대가지급의사 조사의 유형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원산지표시의 수량적이득을 산출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최근 식품안전사례에서 지적된바,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은 소비자에게 이득을 제공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 조항은 식품안전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식품오염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제품의 예방조치 및 효과적인 방책은 식품의 소비 혹은 구매 유형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수단이 된다. 그 외, 수입식품도 국내생산물에 요구되는 식품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비 용 : 비용산정을 위해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첫째, 직접영향을 받는 관련산업의 이행비용을 산출한 결과, 자본, 노동 및 기타 투입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며, 이는 특수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이며 생산 제품

및 서비스 가치기준에 의해 측정된 대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은 아니므로, 이행비용견적을 10년간의 경제 조정기간후 미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전반적인 균형모델에 적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경제조정 후 소비자구매력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비용산정의 기저 자료, 정보, 방법 등은 위 평가서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최종잠정비용산정가가 제공되며 위 평가서수정조항을 언급한다.

위 평가서에서, 직접관련기업의 첫째 비용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이행비용추산의 범위를 개발하여, 범위가 적은 증대비용은 현 기록보관시스템의 수정 및 관리 비용을 반영한 반면, 범위가 큰 것은 기타 자본 및 운용비용을 반영한 결과, 중간에 비용은 상층 범위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위 평가서는 기대비용에 대한 추산치만 제공하고 있고, 이 공표를 준수하는 데는 기록보관 차원을 넘어선 수정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수정된 추가비용견적은 직접영향을 받는 관련기업의 기록보관추가비용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 및 기타 비용까지 반영하고 있다.

첫해 증가비용은 8900만달러로 추산되며, 이 상정안의 39억달러 추산비용에 해당하는 커다란 변화는 이 공표가 어패류만 취급한 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한 기업당 비용은 어획업자 생산자의 경우 241달러로 추산되어 중개업자에는 1890달러가 된다.

이 공표에서 연유하는 고비용생산의 전반적 영향을 추산하기 위해, 전 미국경제 모델을 이용, 경제연구소가 개발한 전산가능한 전체균형모델로 직접영향을 받는 경제부문에 이행추산비용을 부과하여 이 모델을 조정된 결과, 직접영향을 받는 산업이 장기간에 걸쳐 생산고비용을 조정하므로 가격, 생산, 수출입의 변화가 추산되는데, 이는 이 모델이 전 미국경제를 포괄하며 다른 경제부문의 조정방법 및 전반적인 생산성의 변화를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균형분석은 양식 및 생물 어패류산물만 이 공표의 직접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포장물품에 대한 것은 추산되지 않아, 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 척도로만 측정하고 있지, 모든 포장물

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의 영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체균형분석은 부분균형분석이 어패류의 소비자 및 생산자에 미치는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의 영향을 검토한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주목하라. 전체균형접근법은 포괄적인 분석법이나, 어패류의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이득 및 손실은 나머지 부분과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10년간의 조정기간후 생산성의 손실로 인한 구매력감소 측면에서 미국경제의 연간비용은 620만 달러로 추산되며, 생산자 및 소매업자 단계의 어패류의 국내생산량은 더 낮아지고 생산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어패류 수출은 저하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결과에서 직접영향을 받는 산업은 생산물에 약간 더 가격을 높여 이 공표를 적용한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은 줄어들므로, 소비자는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고 따라서 구매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어패류는 전반적으로 미 경제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본 공표의 경제적 부담은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증가비용보다 상당히 적다.

위 영향평가는 경제 전망분석에 내재한 불확실성에 구속되는데, 기업마다 규모 및 운영특성이 상당히 다르며, 개별기업 및 전체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여기 제시된 평균영향과는 다양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직접적, 증가비용추산 및 미 경제의 전체 비용의 개발 방법을 상술하고 있다.

- 비용추정 : 본 공표는 원산지 표시 정보를 어패류산물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소매업자 및 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활동 및 공급물품에 대한 규제사항이며, 그 외, 공급사슬에서 관련 산물의 기업들도 이 공표로 잠재적 영향을 받는데 원산지 표시정보는 소매업자가 최종판매단계에서 정확한 라벨표시작업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59728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사업체의 수 : 약 9만개 기업이 소유하는 12만개 시설물은 직, 간접으로 본 공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어 표 1에 그 산정치가 제공되어 있다.

위 평가서와 대조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부패성 농산물, 견과류 등은 이 공표로 직접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제외되었으며, 그 외, 해산물가공처리산업은 영향을 덜 받는데, 상정안에 의거 라벨표시가 필요하지만, 가공처리식품항목의 정의가 수정되어 이 공표에서 제외된다.

캔 제품에만 들어가는 어류를 어획하는 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치를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외, 캔제품의 특정어류만 어획하는 어선은 신선 및 냉동용도에 적용되는 다른 어종의 부산물도 획득한다. 위 평가서에서 해산물처리 및 포장산업은 신선 및 냉동해산물가공처리과정 및 캔제품작업을 포함한다. 해산물 캔 제품은 예외사항이므로 관련기업의 수 및 시설물의 수도 줄어들고 있어, 제외되는 항목의 물품에 속하는 어패류산물을 취급하는 기업도 있지만, 나머지 신선 및 냉동해산물가공처리업체는 최소한 일부 포장물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빵에 들어가는 새우만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 공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1의 모든 기업 및 시설물은 일부 본 공표의 범위에 속하는 산물을 판매 혹은 생산하지 않지만 본 공표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추정이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는 반면, 합당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판매 경로로 분류된 이들 사업체 및 판매 물품에 대한 자료는 입수되지 않았다.

- 비용산정의 출처 : 본 공표이행비용견적을 위해, 자발적 지침 및 원산지표시의무조항관련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 조항과 관련된 경제이익 및 비용의 포괄적인 범위를 제공받지 못해, 잠재비용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포장물품의 공급사슬운용관련 정보를 적용하였다.
- 비용 추진책 : 최종잠정공표는 소매라벨표시조항으로,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어패류 포장물품의 원산지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개별포장라벨이나 판매(POS)자료가 필요하다. 공급자가 라벨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매업자가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추가 노동 및 인력이 필요하다. 기록보관시스템은 상품라벨표시 정확성과 집행 및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하다. 법령에 의한 소기업(최소 23만 달러의 송장가를 신선냉동 야채류소매상)의 경우, 기록보관은 전자수단으로 이행될 것으로 추정하며, 수정하려면 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이 필요하나, 추가로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소매상은 본 공표를 준수하여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59729

TABLE 2.—ESTIMATED ANNUAL UNITS OF FISH AND SHELLFISH PRODUCTION AFFECTED BY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Million pounds
Producer	7,707
Intermediary—	
Fresh and Frozen Fish:	
U.S. Food Disappearance	1,617
Adjustments for Fish Sticks & Portions:	
U.S. Production	- 232
Imports	- 16
Exports	5
Adjusted Subtotal	1,374
Fresh and Frozen Shellfish:	
U.S. Food Disappearance	1,304
Adjustments for Breaded Shrimp:	
U.S. Production	- 152
Imports	- 7
Adjusted Subtotal	1,145
Total, Intermediary	2,519
Retailer—	
At-Home Consumption:	
Fish	797
Total, Affected Retailers	811

소매상에 도달하기 전, 어패류 포장물품은 창고 혹은 유통센터에서 출하되는데, 유통센터는 소매업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확한 상품라벨표시 및 준수, 집행사항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기록보관과정이 필요하며, 새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가 노동 및 교육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창고에 있는 상품을 분리하여 보관장소를 추가하고 제품의 보관, 분류, 탐색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패류 포장물품의 가공업자 또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업자 또한 이에 관한 서류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가공단계를 통해 원산지정보존재 관리는 1개국이상 혹은 1가지이상의 생산방법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더 복잡하다. 그 예로, 미국산 생새우와 태국산 양식생새우가 같은 가공공장에 입고하면 포장작업을 통해 그 존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입수, 보관, 처리 및 선적작업마다 물품을 분리하면 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국적원산지 상품을 취급하는 가공업자의 경우, 원산

지별 가공물품의 변화를 분리시키거나 가공처리과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각 경우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원산지 정보기록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물품 혹은 1개국 원산지와 1개의 생산방법으로 가공된 물품을 취급하는 가공업자는 다국 원산지 및 복수생산방법의 물품을 취급하는 가공업자에 비해 이행비용이 더 낮을 수 있다. 이미 단일국 생산물품을 취급하는 가공업자는 물품생산방법이 동일하면 물품 분리 및 추적작업 관련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며, 같은 공급업자로부터 계속 물품을 조달받는다면 조달 비용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다국적원산지 물품 가공업자는 생산 분리 및 추적관련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단일국원산지 물품을 선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회피는 단일국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조달비용으로 일부 상쇄될 것이다. 조달비용에는 장시간의 선적으로 인한 높은 운송비와 공급 및 수요조건으로 인한 높은 인수비용이 포함 될 것이다.

생산단계에서, 어류 생산자 및 수확자는 원산지 정보를 수립할 기록을 작성,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원산지정보는 최초물품취급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를 추적하는데 충분한 기록도 물품이 공급사슬을 통해 이동하므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생산자 및 수확자의 추가비용에는 원산지, 물품식별 및 노동, 교육 관련 기록보관시스템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59730

▶ 관련기업에 미치는 증가비용영향 :

본 공표의 직접비용 산출을 위해, 생산단위에 초점을 맞췄는데(표 2), 중간 및 소매단계의 어패류의 경우 추산되는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어류생산자의 경우, 생산량은 연체동물을 제외하고, 껍질무게를 뺀 무게로 측정된다. 자연산 어류 및 갑각류 생산량은 신선냉동식품에 대한 미국 국내 양륙회수로 측정하였고, 캔 제품의 어류 양륙회수는 생략했는데, 상정안에 의거 라벨표시작업이 필요할 것이나, 본 공표의 제외사항이다. 어획업자는 어획물이, 신선냉동시장용, 캔 제품용, 산업용으로 사용될 것인지 알고 있다는 가

정 하에, 어류생산량에 양식어류가 포함하므로 총 어류생산량은 위 평가서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다.

중간상인의 판매는 본 공표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데, 일부물품이 다른 유통채널로 공급되더라도 소매업자와 관련된 판매가능성을 위해 시장개척을 모색할 것으로 가정한다. 중간상 단계에서, 어류 및 갑각류생산량은 12억 파운드나 줄어들어, 캔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 (참조 1.)

중간단계 생산량 조정 작업으로 생선스틱 및 생선조각 및 빵가루를 묻힌 새우 등 라벨표시의 예외사항인 다른 주요 부문은 제거하였다. 생선 스틱 및 조각은 생선살을 모양을 갖춰 만든 것으로 가공처리식품으로 공표한다. 어류생산량은 갑각류생산량과는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미국에서 사라진 신선 및 냉동 생선량은 2001년 1600만 파운드로 수입량은 포함하나 수출량은 제외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산 생산량과 수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본 공표의 예외사항에 속하기 때문이다. 생선스틱 수출은 미국산생산량에 추가되어 예외물품의 순 미국산 공급물품을 측정한다. 비슷한 공식을 신선 및 냉동갑각류에 적용하면 빵가루를 묻힌 새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갑각류의 경우 미국 무역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빵가루를 묻힌 새우 수출량은 영으로 간주한다.

위 평가서는 영향을 받는 소매단계 상품의 생산량을 수정해서 가공식품항목의 정의를 바꾸어 산정치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첫째, 소매업자의 어류 및 갑각류생산량은 493만 달러나 줄어들어 캔제품을 밀어내고 있다. 둘째, 수정요인은 본 공표의 지배를 받는 소매상에서 라벨표시작업에 필요한 제품의 생산량을 추산하는데 사용된다. 위 평가서에서 식품이 사라진 숫자는 0.4배 증가해서 소매단계 판매된 생산량의 추산치를 나타낸다. 소매단계 판매비율산정을 위해 슈퍼마켓, 할인점, 대형상점 등의 판매량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포장물품의 소매판매량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른 식품군에 비해, 어패류 및 갑각류 등은 가정에서 상당부분 소비되지 않고, 소량이 소비되어, 신선 및 냉동은 58%를, 갑각류는 38%가 가정에서 소비되었다. 이는 국립해양수산청이 실시한 ‘전국해산물소비조사’에 기초한 것인데, 신선 및 냉동 어패류 등의 가정 소비량은 총 12억 파운드로 추산되었고, 본 공표의 영향을 받는 신선 및 냉도 어패류 등의 총생산량은 소매단계에

서 811만 파운드가 되어 거의 900만 파운드가 줄어들고 있다.

본 최종잠정공표를 첫 해 실시하려면 기업은 직접적인 증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이는 원산지표시 표시의무조항의 영향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TABLE 3.—ESTIMATES OF FIRST-YEAR IMPLEMENTATION COSTS FOR FISH AND SHELLFISH, PER AFFECTED INDUSTRY SEGMENT

	Million dollars
Producer	19
Intermediary	13
Retailer	57
Total	89

위 평가서에서 어류 및 갑각류 생산자의 비용은 파운드당 0.25센트가 드는 것으로 추산하여 총 1900만 달러가 된다. 어류 양륙회수의 추산치에는 캔 제품으로 사용된 미국산 어류 양륙회수는 생략되어, 본 공표에서 캔 제품은 예외사항이지만 생산자 단계에서 추산치는 불변의 상태이다. 고로, 1인 생산자당 추산비용도 불변의 상태에 있다.

어류 및 갑각류부문에서 중간상인 비용산정을 위해 파운드당 0.5센트를 적용하였고, 가공업자는 생산자에게서 원산지 정보를 입수, 관리하고 다른 중간상인에게 혹은 소매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가공 전후 물품을 분리하여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라벨표시 비용이 있어, 총비용은 1300만달러가 추산되어 위 평가서의 상향범위 추산치에서 800만달러가 줄어든 것이며, 이는 본 공표의 영향을 받아 생산량 추산치가 낮아진 것에 연유한다.

소매업자의 비용은 파운드당 7센트를 적용하여 총 5700만달러로 추산되어, 6200만 달러가 감소되었는데 이 또한 본 공표의 영향을 받아 생산량 추산치가 낮아진 것에 연유한다. 어류 및 갑각류의 총비용은 8900만달러 7000만 달러로 추산되어, 첫해 최종잠정공표를 실시하는데 총 증가비용은 어획업자 및 어류생산자는 1900만 달러, 중간상인은 1300만달러, 소매업자는 5700만달러가 들어 총 8900만 달러로 산정된다. 평가서의 상향범위 추산치 39억에서 크게 감소한 이유는 최종잠정공표가 생물 및 양식 어류 및 갑각류제품만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본 상정안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과일, 야채, 및 견과류 등도 포괄한다.

59731

TABLE 4.—ESTIMATED FIRST-YEAR IMPLEMENTATION COSTS PER FIRM AND ESTABLISHMENT

	Firm	Establishment
Producer	\$241	\$241
Intermediary	1,890	1,650
Retailer	12,600	1,530

개인사업체의 평균이행비용은 차이가 크데, 소수 어업 조업체는 제외하고, 생산자업체는 단일물 시설물 기업으로 해서, 기업 당 시설물 당 평균이행비용은 거의 같다. 대조적으로, 기업당 8개가 넘는 시설물을 운용하며 시설물당 평균비용보다 8배나 더 많이 든다.

평균비용은 241달러로 비교적 적은 수치며, 평가서 산정치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어업조업체의 수를 조정한 때문이다. 중간상인의 이행비용은 훨씬 커 기업당 약 1800달러, 시설물당 약 1600달러가 들며, 평균비용은 평가서 수치보다 훨씬 작는데, 이는 본 공표로 생산량의 급격한 축소 때문이다. 중간상인의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고, 소매업자의 경우는 최고 추산치를 보이지만, 평가서 산정치 보다는 훨씬 더 작는데, 이 또한 본 공표의 영향으로 생산량의 축소로 연유된 것이다. 소매업자는 시설물당 약1500달러로 최고 평균비용추산치를 보인다.

기업 당 시설물당 비용은 공급사슬의 산업평균치를 나타내는데, 대기업은 소기업보다 물품량과 사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비용이 초래되는 것 같다. 그 외, 사업 유형에 따라 비용도 다른 양상을 보여, 각 사업별 비용은 평균비용의 일부만을 초래하는 기업이 있는 가하면, 평균보다 몇배 이상의 비용을 초래하는 기업도 있다.

주요 비용원인은 물품이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운송될 때, 생산 혹은 판매과정에서 혼재될 때 조립되어 소매상으로 재유통될 때 발생하며, 본 공표의 요구사항은 같은 공정과 사업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산지 정보는 공정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채택하면 기록보관 및 식별체제를 위한 주변비용은 상당히 적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현 조업공정을 개선해서 본 공표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가공공장은 입고 물품을 원산지별로 무게, 크기, 생산방법 등을 부가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로서 공장가동, 생산라인 공정, 물품취급 및 보관의 조정작업이 필요하므로 궁극적으로 여러 해결책은 혼합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므로, 직접적 증가 비용은 총 8900만달러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서에서 AMS 가 고려한 대안은 가공식품항목의 정의를 좁혀 본 공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품목수가 늘어나면 경제적 예상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늘어날 것이다. 제외품목의 라벨표시작업도 여러 부가가치를 갖는 생산품에 발생하는 혁신적 조업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대 규제안으로는 가공식품항목의 정의를 확대해서 본 공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행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소매 및 중간단계에서 비용감축은 소매라벨표시를 요하는 생산량의 축소와 일부 비례할 것이며, 소매 및 중간상인의 개시 비용은 품목범위의 축소로 변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기업이 기록보관, 생산, 입고, 유통 및 판매 시스템을 수정하여 라벨표시를 요하는 품목에 대한 본 공표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리 및 조업 비용은 품목수의 감소로 일부 축소될 것이며, 대부분의 어류 및 갑각류 생산자 및 양식업자의 이행비용은 용어정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영향을 받는 생산자들이 물품판매선택권을 보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용어 정의는 잠재적 영향을 받는 업체로부터 의견을 고려하여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를 초래하는 물품은 제외하였다. 총 증대비용은 7000만 달러에 이르러 평가서수치보다 작은 수치인데, 가공식품항목의 정의수정으로 캔 제품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달리 고려한 대안은 공급업자가 거래마다 후속 수령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입증하는 진술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인데, 영향을 받는 거래건수를 추산한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생산자 및 중간상인의 판매물품은 파운드당 0.1 센트가 들고, 물품이 최소 두 번 유통되는 것을 가정하면, 거의 15% 즉 1300만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비용영향 및 산업의 구조 및 필요 및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대안은 거부되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는 본 최종잠정공표의 영향을 받는 관련기업의 직접적인 증가비용을 산출했는데, 생산,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기업에 중요하지만, 미국경제에 순비용 혹은 관련업체의 순비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본 공표가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영향에 대해, 관련기업에 직접 초래되는 상당부분의 비용은 추가 생산투입지출의 (작업시간증가로 인건비 및 물품 및 서비스비용 증대) 형태를 띤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손실을 나타내지는 않

지만, 자본의 유동을 가져온다. 그 결과, 공급사슬에서 각 관련자의 증대비용으로 경제 영향은 측정할 수는 없다. 대신, 관련조치는 최종잠정공표는 투입 물품 및 자원의 공급으로 생산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을 줄이는 정도가 된다.

직접영향을 받는 업체의 견지에서, 직접증대비용은 청사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우선 본 공표의 이행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이에 맞춰나가기 때문에 공급업자의 부담은 생산단계에서 줄어들 것이고 가격의 변화 또한 수반된다.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업체가 어느 정도 이 비용을 전가하는 지 따라서 품목의 수요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다.

59732

개념상, 비용의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는 계속 동량의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공급업자는 조업비용의 증가가 상당하더라도 순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나, 다른 산업은 소비자가 물품구매를 축소하므로 손실을 입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즉 가격의 증가로 물품의 소비를 계속 유지할 소비자의 물품선호도 변화를 초래할 공표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대다수가 물품소비를 줄일 것 같다. 소비패턴의 변화는 차례로 생산패턴 및 투입자원의 할당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의 재화 및 서비스의 총생산량은 전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 공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산가능한 전체균형모델을 이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모든 포장물품 및 과생상품뿐만 아니라 본 공표의 직접영향을 받지 않는 비포장물품 등을(가금류 및 사료곡물) 포함한다. 본 공표의 목적을 위해, 동 모델구조를 사용하지만 직접증가비용증대는 어류 및 갑각류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 모델은 경제적 쇼크에서 (이 경우 조업비용의 증가) 미국 농산물부문과 미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부문간의 과급효과를 통해 그 영향을 추적하고 있다. 미국 경제 여러 분야와 세계 경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함으

로써,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이 모델은 10년이란 기간의 조정후에 일어나는 경제적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Imported	0.4
----------------	-----

분석결과, 이 공표는 첫 해 미치는 직접비용보다 전반적인 미국경제에 더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원산지표시의무조항으로 소비자의 어류 및 갑각류의 선호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구매력의 감소 측면에서 이 공표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전체 비용은 620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므로, 이는 소비 및 생산 패턴의 조정 및 전가가 일어난 후에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59733

10년 후 전체 비용은 첫해 이행비용보다 상당히 작는데, 최소 산정치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비용증가는 장기간에 걸쳐 생산축소 및 가격상승으로 상쇄되는 반면, 공급업자는 여전히 직접이행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경제 조정전, 단기간의 경제영향은 조정이 일어난 후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 경제에 미치는 전체비용의 평가는 관련기업의 조업비용의 증가비용의 산정에 기초한 것이며, 이 모델에서는 원산지정보가 필요한 포장물품의 공급채널과 원산지정보가 필요없는 물품의 공급채널을 분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직접비용평가는 포장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의 조업비용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표 5는 직접영향을 받는 부문의 총 조업비용이 백분율 측면에서 조정된 산정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공급채널의 조업비용변화백분율 산정치에 기초하였고, 규제비용이 각 업체별로 어떻게 분담되는 지를 추산할 결과에 기초하여 어류 및 갑각류 공급 채널간에 (양식업자, 생산자, 가공업자, 수입업

TABLE 5.—ESTIMATED INCREASES IN FISH AND SHELLFISH INDUSTRY OPERATING COSTS BY SUPPLY CHAIN SEGMENT

	Percent change
Farm Supply:	
Domestic	0.6
Imported	0.6
Processing:	
Domestic	(1)
Imported	(1)
Retail:	
Domestic	0.4

자 및 소매업자) 조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비용변화는 이전에 서술한 직접비용추산치에 근접하고 있다.

그 외, 공급사슬의 동일레벨에 있는 국내외 공급업자 또한 조업비용증대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수입물품은 경쟁우위를 차지하는데 이미 원산지라벨을 붙이고 수입되기 때문이며, 미국 관세 및 국명보호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원

산지 라벨표시는 원산지공표를 이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수입업자 또한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물품에 원산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5의 조업비용 변화 백분율은 표 8의 고비용 시나리오의 조업비용변화 백분율과 차이가 나는데, 이 공표의 이행비용변화 및 총 조업비용 산정치의 재조정으로 연유된 것이다.

소비 및 생산패턴은 조업비용의 증가비용이 관련기업의 가격수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므로 변할 것이며, 포장물품의 가격상승으로 수출 및 국내소비 그리고 결국 국내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공표로 인한 비용은 모든 포장물품의 공급업자가 고루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인에 의해 비용분담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본 공표에 영향받지 않는 대체품의 이용가능성 및 다른 부문 및 세계경제와 관련한 공급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을 생각할 수 있다.

TABLE 6.—ESTIMATED IMPACT OF INTERIM FINAL RULE ON U.S. PRODUCTION, PRICES AND TRADE OF FISH AND SHELLFISH

Item	Percent Change from the Base Year
Price	0.36
Production	-0.46
Exports	-0.56
Imports	0.18

표 6은 어류 및 갑각류의 가격, 생산, 수출입 변화백분율로 대체 물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소, 양, 돼지, 닭 등의 여러 백분율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어류 및 갑각류만 그 결과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 공표는 어류 및 갑각류 포장물품관련 공급사슬의 조업비용을 증대시키므로, 물품가격도 상승하고, 소비량은 감소하여 결국 미국의 어류 및 갑각류의 생산량도 감소된다.

TABLE 7.—ESTIMATED CHANGES IN U.S. PRODUCTION, PRICES, AND TRADE FOR FISH AND SHELLFISH

Indicator	Units	Base	Change
U.S. Production ^a	Mil. Lbs.	10,204	-46.94
U.S. Price ^b	\$/Lb.	0.41	0.0015
U.S. Exports	Mil. Lbs.	2,565	-14.36
U.S. Imports	Mil. Lbs.	4,102	7.38

어류 생산량수요는 특히 가격상승에 민감하며 외국공급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입장에 있다. 그 결과, 어류 수입은 비용 상승으로 증가하며 미국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국내업체들의 반응도는 수입업체보다 더 크다. 공급반응간의 격차로 수입업자들은 미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조업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미국에 수출을 늘릴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자면, 표 6의 백분율은 현재 물가 및 생산, 수출입물량의 변화로 바꾸었다. (표 7) 표 7의 기본수치는 표2와는 다른데, 표 2는 실제 보고된 수치를 나타내므로 2003년도 USDA 농업지침의 예상기준으로 파생된 것이다.

어류 및 갑각류 물품의 소비자가는 파운드당 2/2센트 이하로 소량 증가하고 있고 생산량은 4700만 파운드나 감소하여, 가격 및 생산량변화는 수입은 400만 달러나 줄어들어, 수출물량도 1400만 파운드가 감소했지만, 수입은 증가하더라도 그 비용은 국내생산자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 모델은 기업이 투입가 혹은 산출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한편, 가공업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정은 소비자가격을 올리기 보다는 공급업자에게 비용증가를 전가시키기 때문에 생산자 가격은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이 공표의 경제영향평가는 원산지라벨표시가 미국산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소비자수요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과, 원산지표시 의무조항이 ‘미국산 물품의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산물품의 수요증가의 상승은 이 공표에 의한 경제비용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위 모델의 결과는 경제가 비용증가로 조정된 후에도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므로 경제는 즉각 조정되지 않는다.

이 분석결과는 과거 및 현재의 생산 및 소비패턴을 서술하지만, 특수한 조정과정은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 외, 농업부문의 변화는 원산지공표로 파생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위 모델을 이용하는 목적은 특정기간에 대한 가격 및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공표가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를 추리하고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델은 전세계지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글로벌모델이다. 각 지역에서 생산 및 소비결정은 경제이론과 일치하는 행동모델에서 결정되며, 다변적 무역 흐름 및 가격은 동시에 세계경제상황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 물품의 총 수요는 총공급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가격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의 전체 균형특징은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자원은 부문간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료곡물 및 축산업부문의 조정은 가공부문과 일관되어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델은 정적이므로 투자장려(금지) 및 생산성증대로 인한 이득(혹은 손실)은 파악되지 않는다. 기존자원은 부문간에 이동하므로, 정책변화를 야기하는 자원의 재분배효과를 포착하고 있지만, 총이용가능한 자원을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총 산출량에 대한 장기 정책효과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 행정규제의 융통성분석

이 공표는 행정규제융통성법에 의거 심의한 것으로, 이 법의 목적은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경제영향을 고려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시장경쟁력을 제한하는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이 공표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상당수 소규모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여 후속 규제분석결과를 내놓았다.

59735

이 공표는 농장법의 원산지공표를 이행하는 법적의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어류 및 갑각류 포장물품의 라벨표시를 요구하고 있고, 그 의도는 소비자에게 구매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법의 지배를

받는 소매업자 판매 물품의 라벨표시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연방 규정 및 공표에 의하면, 원산지표시의무조항은 전반적으로 이 공표의 지배를 받는 물품에 요구된 내용은 아니다. 특히 미국산 원산지표시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소비자단계의 수입물품에 어떤 상황에서만 요구된 것이므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항은 규범적이고 입법과정에서 규제적 재량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법령에 의한 식품 소매업자에게 원산지표시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적 확인제도를 USDA가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조업활동에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소매업자이외의 시장참여자는 이 공표의 지배를 받지 않는 판매 채널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이 공표는 기록보관시간을 줄이고,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 수집 및 기록보관사항 및 관련 업무의 논의는 아래 종이서류작업 감축법에 열거되어 있다. 그 외, 라벨표시제품 수도 축소되는데 가공식품항목정의가 확대되어 추가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공표의 목적은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활동을 규제해서 법령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며, 소매업자에게 원산지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자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그 외, 공급사슬의 다른 업체도 영향을 잠재적 영향을 받는데 원산지 정보는 전체 공급사슬을 따라 이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류 및 갑각류 물품의 공급사슬의 업체수 목록은 표 1에 언급되어 있다.

이 공표의 소매업자는 PACA의 소매업자 정의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연간 23만 달러의 매상고로 신선 및 냉동 과일야채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를 포함하는데, 이 공표에 영향을 받는 소매업자는 전국적인 총 소매업자의 수보다는 상당히 작다. 그 외 기업이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다.

원산지 정보는 공급사슬을 따라 전가되어 소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이용되므로, 각 산업참여자는 기록보관비용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의 변화 혹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각 사업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류 및 갑각류 물품 종사자들이 이 공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채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려고 선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므로, 9만여 기업이

소유하는 12만여 업체들은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한다.

평가서의 변경사항은 관련업체수의 축소때문인데 미가공어류 및 갑각류물품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표는 영향의 성격 및 정도가 참여자의 기능에 좌우하더라도 공급사슬의 모든 참여자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매업자 및 중간상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개 어획업자 및 양식업자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직접 증가비용을 8900만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상정안에 비해 이 공표의 직접증가비용의 감소는 어류 및 갑각류이외의 물품을 제외하고, 캔제품 및 가공 어류 및 갑각류 식품에 대한 원산지공표를 제외하여 가공식품의 정의를 확대시킨 것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기준에 따라, 소업체는 판매영수증 혹은 고용원수에 따라 식별되고 있는데, 청과상은 연간 2300만 달러, 특수식품점은 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업체로 분류한다. 연매상고 2300만달러 미만의 창고할인점 및 대형할인점도 이에 포함되며, 농업생산자는 2300만달러 미만, 수산업자는 350만달러 미만, 500명 미만 고용인을 둔 제조업체와 100명 미만의 도매업자도 소업체로 분류한다.

•소매업자 : 식품점, 창고형 할인점, 대형할인점은 주요 소매업체로 가정소비식품의 82%를 차지하므로, 그 숫자는 이 공표의 잠정영향을 받는 업체를 표시한 것이다. 97년도 경제통계는 약 6만여 소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공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매업자의 수는 PACA 자료에서 산출되는데 연간 신선 및 냉동 청과물 매상고는 23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허가가 필요하며, 이 자료는 USDA의 PACA 베이스에 저장되어있다. 이 허가는 사업명, 지점수를 기재하며, 소매업자의 경우 지점은 소매상점을 나타낸다. 허가공표를 준수하기 위해 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사업조업체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 현재의 면허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공표의 영향을 받는 소매업체수의 믿을만한 추산치를 제공하고 있다.

59736

PACA는 신선하거나 냉동된 야채와 과일을 취급하며 송장 기준 연간 매출액이 23만 달러 미만인 경우를 소매업체로 정의하고 있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매업체의 수는 전국 식품 소매업체의 수에 비해 상당히 적다. USDA 자료를 보면 PACA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매업체 수를 4,512개로 파악하고 있다. 아래 설명하고 있듯이 소형 식품 회사 대부분은 PACA 소매업체 정의를 토대로 하면 대부분 의무 COOL에서 제외되어 있다.

1997년 경제 통계 조사 자료에는 판매 범주별로 식품 회사의 수가 실려 있다. 67,916개의 식품점, 창고소매업, 식료품매장(superstore) 회사 중에서 중소기업청(SBA)의 소기업(small firm) 정의에 해당하는 연간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66,868개이고 나머지는 1,048개라고 추정하였다. USDA는 이러한 회사들의 신원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고 PACA 데이터베이스에는 경제 통계 자료와 맞추어 볼 수 있는 북미 산업 분류 체계 코드에 따라 업체를 분류해 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USDA는 1,048개의 규모가 큰 회사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이 신선하거나 냉동된 야채와 과일을 취급하며 매출액 기준 송장가액이 최소 23만 달러에 달해 PACA의 소매업체 정의에 들어맞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매업체 중 77%(4,512 업체 중 3,464 업체)가 소기업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추정 소규모 식품점 소매업체 수의 겨우 5.2%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규모 식품점 소매업체 중 94.8%가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IFRIA의 비용 항목에서 논의했듯이 이 잠정 최종 규칙상으로 보아 소매업체 비용은 약 5천 7백만 달러(표 3)일 것으로 추산된다. 소매업체당 비용을 12,600달러로, 소매업체의 사업장 당 비용은 1,530달러로 추산하였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 어패류를 제외한 품목은 빠져 있고 개정된 가공 식품 정의에 따라 추가 제품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정 비용은 PAIA의 추정치 상위 범주보다 낮다.

소매업체들은 기록보관 비용,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비용,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별로 제품을 구분하는 비용 그리고 아마도 추가 처리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 상승으로 가게 내의 해산물 부서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정보제공용 라벨표기 및 표식에 쏟는 추가 시간 등 소매업체 사업 실무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이 최종 잠정 규정은 의무 COOL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잠정 규정의 영향을 받는 소매업체들이 시행해야 할 시스템들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소매업체에 이 규정에 준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의 공표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회사는 처한 상황에 따라 이 잠정 최종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 중 가장 비용이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도매업체 : 소매업체에 1개 이상의 대상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장은 소매업체에 필요한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공하여 소매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중소기업청(SBA)은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도매업체 중에서 직원 수 10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공표하고 있다. 대상 제품 수업체들 또한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영향을 받으며 자료상에 도매업체로 분류될 것이다.

2000년 미국 기업(참조번호 8) 연감에는 고용 규모에 따른 도매업체별 정보가 실려 있다. 어류 및 해산물 도매업체의 수는 총 2,897개 업체이다. 그 중 직원 수 100명 미만인 업체는 2,837개 업체이다. 따라서 어류 및 해산물 도매업체 중 약 98%를 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 가지 해당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 도매업체 외에도 다양한 부류의 제품을 취급하는 만물상(general-line grocery) 형태의 도매업체도 있다. 이 분석의 목적상 우리는 이 만물상 도매업체들이 최소한 해당 어패류 품목들 중 일부를 취급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영향을 받는 실체의 수에 만물상 도매업체의 수를 포함시킨다. 2000년 미국 기업 연감에는 고용 규모로 본 만물상 도매업체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다. 총 3183개 업체가 있고 그 중 직원 수 100명 미만인 업체는 2,983개 업체였다. 따라서 만물상 형태의 도매업체 중 약 94%가 소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크게 보아 6,080개 업체 중 5,820개 업체 즉 도매업체 중 96%가 소기

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도매업체들 대부분이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중소기업청(SBA)의 소기업 정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FRIA의 비용 항목에서 논의했듯이 우리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을 적용할 경우 중개업체(수입업체, 국내총판, 취급업체, 가공업체)들이 약 1300만 달러의 비용을 안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표 3). 중개업체당 추정 비용은 1,890달러, 사업장 당 추정 비용은 1,650달러이다(표 4). 이 비용에는 이 잠정 최종 규칙에서 어패류를 제외한 품목들이 빠져 있고 가공식품의 정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PRIA에 산출된 상위 범주의 비용보다 낮다.

도매업체들은 이 잠정 최종 규칙에 준하여 비용 상승을 겪게 될 것이다. 도매업체들은 기록보관 비용, 소매업체에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별로 제품을 분류하는 비용 그리고 기타 취급 비용 등 비용 상승을 겪게 될 것이다. 법률 초안과 자발적 지침에 관해 도매업체와 소매업체가 제시한 의견들 중 일부는 의무 COOL 프로그램을 준수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 국가에서만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단일 공급업체에서 해당 품목을 공급받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어패류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공급 실무의 변화는 한 가지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만을 거친 제품을 취급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실무의 변화는 도매업체 분야에서 더 폭넓은 기업들 간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의무 COOL를 준수하기 위해 도매업체들이 시행해야 할 시스템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 대신 도매업체에 이 잠정 최종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다. 이 규정의 공표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도매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소매업체나 기타 공급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니고 있다.

- 제조업체 : 소매업체나 도매업체에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는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소매업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어 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해당 품목의 제조업체들 중 대부분은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소매업체에 제공하는 소매업체용 포장물에 인쇄할 것이다. 중소기업청(SBA)은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체들 중에서 직원 수 50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공표하고 있다.

59737

2000년 미국 기업체 연감(참조번호 8)에는 고용 규모로 본 제조업체 정보가 실려 있다. 해산물 제품 준비업체 및 포장업체 수는 총 741개 업체이다. 이 중에서 714개 업체는 직원 수가 500명 이하이므로 따라서 96%를 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영향을 받는 해당 품목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SBA의 소기업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제조업체들은 중개업체로 분류되며 이 업체들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앞서 도매업체 관련 항목에서 논의하였다. 해당 품목 제조업체들은 이 잠정 최종 규칙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 상승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도매업체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들 또한 기록보관 비용, 소매업체용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 제공 비용,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별 제품 분류 비용 그리고 아마 추가 처리 비용을 안게 될 것이다.

법률 초안과 자발적 지침에 관해 제조업체들이 보내 온 의견들 중에는 원제품을 공급받는 출처의 수를 줄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 실무의 변화는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제조업체 분야의 기업 통합을 낳을 수도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의무 COOL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제조업체들이 시행해야 할 시스템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제조업체에 이 공표를 준수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의 공표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생산자 : 해당 어패류 품목의 수확자 및 생산자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취급업체와 도매업체는 이 수확자와 생산자에게 원산

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생성, 보유 및 전달하여 그 정보를 소매업체에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SBA는 연간 매출액 75만 달러 미만인 업체를 소규모 수산물 생산업체로 공표하고 있다. 1998년 농업 부문 통계 자료(Ref 8)를 근거로 우리는 3,540개 어패류 양식업체 중 최소한 90%가 소기업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위의 통계 자료로는 계산 대상이 되는 소규모 생산업체의 수를 정확히 산출해 낼 수 없다. 어업 종사업체에 대한 유사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생산자 중 대다수가 소기업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어업 업체 수가 76,499업체일 것으로 추정한다(Ref 8과 10).

생산 차원에서 어패류 생산자와 수확자는 필요하다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생성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보는 제품이 공급망을 거치는 동안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추가 비용에는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 보관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하는 비용, 제품 식별 비용 그리고 노동력 및 교육 비용이 포함된다. 법률 초안과 자발적 지침에 관해 접수된 의견들 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볼 때 생산자와 수확자가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 요청을 처리하는데 쓸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생산자와 수확자가 안게 될 부담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생산자에 비하면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FRIA의 비용 항목에서 논의했듯이 생산자 부담 비용은 약 1900만 달러(표 3) 또는 업체당 약 241달러(표 4)일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자의 경우 소수의 어업 조업을 제외하면 업체와 사업장이 동일한 업체로 보인다. 따라서 업체 및 사업장 당 비용은 달러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근사값(또는 반올림)을 구하면 동일하다.

영세업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표 1에서는 업체나 사업장의 매출액 및 고용 인원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잠정 최종 규칙이 많은 소기업(영세업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공급망을 거치는 중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차원에서 제품을 수령, 저장, 가공 그리고 선적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해야 한다면 이 사업체들의 효율성은 영향을 받게 된

다. 여러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형태(자연산 그리고/또는 양식산)를 지닌 제품을 취급하는 가공업체의 경우 원산지가 다른 제품 별로 별도의 처리를 하거나 처리 과정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 어느 경우든 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가공 과정 전반에 걸쳐 정확한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가 유지되고 준수 및 시행 검토를 위해 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된 기록보관 비용 부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아래의 문서작업 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항목에 실려 있다.

국내산 제품 또는 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을 취급하더라도 한 국가만을 공급지로 처리하는데 추가 조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패류의 경우 그러한 “단일 공급처” 제품은 원산지 뿐 아니라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로 확대 적용된다. 추가 조달 비용으로는 선적 거리의 증가로 인한 운송비의 상승 그리고 국내이든 외국이든 특정 원산지 그리고 특정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로 제품의 수요 및 공급망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달 비용의 상승이 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해당 어패류 품목을 취급하는 가공업체, 제조업체 그리고 도매업체 영역에서 수많은 통합을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잠정 최종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매업체들은 기록보관 및 라벨 표기 업무를 간소화하는 수단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하는 실체의 수를 줄이려 할 수도 있다.

▶ 고려해 본 추가 대안들:

앞서 언급했듯이 미 농업 법률안의 COOL 조항에는 이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직접 공표하는 문구가 거의 없다. 이 법은 관련 소비자들에게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그리고 해당될 경우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소매업체들(즉, PACA가 소매업체로 공표한 업체들)을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해당 품목을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자는 소매업체에게 원산지를 그리고 어패류의 경우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공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해당 품목의 공급업체들이 소매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관련된 공표를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잠정 최종 규칙은 법적으로 소매업체로 공표된 업체 외의 업체들

이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를 요청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달리 말해서 해당 품목이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소매업체에 해당 품목의 형태로 최종 판매되지 않는 한 수확자, 생산자, 가공업체, 도매업체 또는 기타 공급업체는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지 않는다.

59738

따라서 예를 들어 가공업체와 그 공급업체가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보존하지도 않고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이 잠정 최종 규칙의 구속을 받지 않는 판매망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한 대안 판매망으로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의 구속을 받지 않는 외식업체(foodservice), 수입업체 그리고 소매업체가 있다.

우리는 미국의 활어 및 냉동 어패류 중 판매량 중 약 38%가 이 잠정 최종 규칙의 구속을 받는 소매업체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잠정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거나 또는 외식용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자와 중개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다. 판매 제품 중 대다수는 이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외식산업, 수출 시장 그리고 기타 판매망 용으로 품목을 생산하는 부문에 특화된 업체들도 현재 많이 있다.

이 규정의 발효일자는 이 잠정 최종 규칙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이다. 원산지 표기 규정에는 “2004년 9월 30일 이전에 농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부속 시행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공표 한다”고 공표되어 있다.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여러 해당 품목들은 냉동 상태이거나 보존 처리를 거친 상태(즉 “신선한” 상태로 판매되지 않음)이다.

따라서 이 제품들 중 다수는 2004년 9월 30일 이전에 이미 판매망에 올라 있게 되며 이러한 제품들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을 수

도 있다. 따라서 이 잠정 최종 규칙의 발효 일자를 6개월 연기하여 기존 재고의 판매망을 깨끗이 정리하고 관련 업계가 이 규정의 공표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MS는 이 규정의 조항과 공표에 대해 관련 업계 교육 및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AMS는 또한 이 잠정 최종 규칙의 발효일 이후 6개월 동안 업계 교육과 홍보에 규정 시행 관련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AMS는 시행 관련 자원을 배치하면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AMS가 1년에 걸쳐 실시하게 될 이 보급 및 교육 프로그램은 업계가 이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업체들이 이 규정의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업계의 부문별로 독자적으로 COOL 공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로 수작업으로 제품을 분류하고 문서 기록을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동식별 및 전자 기록보관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업체가 USDA에 보고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준수 여부 심사는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시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필요한 기록은 업체가 작업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보관하며 하드카피 문서, 전자 기록 또는 양자의 혼합이든 상관없다. 또한 이 잠정 최종 규칙은 기록 보관 장소에 대해서도 탄력성을 제공하고 있다. 제품에 이미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한 업체가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 그리고 직접 판매한 업체를 기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탄력성은 소규모 업체들이 이 잠정 최종 규칙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

실제로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설계 표준이라기보다는 업무(performance) 표준이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규정 적용 소매업체의 해당 어패류 품목에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 표기를 부착하고 해당 품목의 공급업체들은 소매업체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모두 원산지 및 생산형태 정보를 검증하기 충분한 기록과 정보를 보관하도록 공표하고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에 탄력성을 두고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공급업체가 소매업체에 이러한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원산지 및 생산형태 정보의 출처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기록과 정보를 보관하는 방식에 탄력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소규모 업체들이 이 잠정 최종 규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실질적으로 최대한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문서작업 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TABLE 8.—PAPERWORK BURDEN ESTIMATES

Type	Firms	Initial costs	Establishments	Maintenance costs	Total costs
Producers:					
Farm-Raised Fish & Shellfish	3,540	245,895	3,540	466,876	712,772
Fishing	76,499	5,313,774	76,452	3,360,983	8,674,756
Intermediaries:					
Fresh & Frozen Seafood Processing	582	761,838	653	580,571	1,342,409
Fish & Seafood Wholesale	2,897	3,792,173	2,980	2,649,467	6,441,640
General Line Grocery Wholesalers	3,183	4,166,547	3,993	819,256	4,985,80
Retailers:	4,512	5,906,208	37,176	16,526,275	22,432,483
Totals:					
Producers	80,039	5,559,669	79,992	3,827,859	9,387,528
Handlers, Processors, & Wholesalers	6,662	8,720,558	7,626	4,049,294	12,769,852
Retailers	4,512	5,906,208	37,176	16,526,275	22,432,483
Grand Total	91,213	20,186,435	124,794	24,403,428	44,589,863

PRA(44 U.S.C. 3501-3520)에 준하는 이 잠정 최종 규칙에 포함된 정보 수집 조항은 아직 OMB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OMB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의견 제시 및 답변 항목은 예비 PRA 분석과 관련하여 받은 의견들 그리고 이 의견들에 대한 해당 청의 답변을 실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대한 설명은 연간 기록보관 부담 추정액과 더불어 아래에 실려 있다.

제 목 : 생산자와 식품 시설의 기록보관 및 기록접근 공표.

OMB 번호 : 0581-new.

요청 형태 : 신규재정

만료 일자 : 승인 후 3년째

- 요 약 : 미 농업 법률안의 Cool 공표는 해당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대상 제품의 원산지 정보 그리고 어패류의 경우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원산지와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의 출처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록과 기타 문서 증거물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대상인 제품과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상 업무 시간과 장소에서 적시에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해당 품목을 소매업체(수확자, 생산자, 공급업체, 취급업체, 포장업체, 가공업체 등. 이러한 업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에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매업체에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한 업체와 자신이 직접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관한 기록을 로트 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확인하여 거래 후 1년 간 보관하도록 공표하고 있다.

해당 수입 품목의 경우 CBP가 해당 품목 수입 기록자로 지정한 이는 기록을 제공하고 미국의 수입항에서 직접 물품을 인도받은 이를 추적하는 명확한 제품 추적 기록을 제공하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를 해당 CBP 기초(entry) 문서와 정보 시스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그러한 기록을 거래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지정의 근거로 쓰인 기록과 기타 문서 증거물(예를 들어 중앙 창고의 수령증)들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 해당 시설에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한 USDA의 적법한 유자격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소매 공급업체, 로트 번호나 기타 고유 식별자를 통한 해당 거래의 고유한 제품 그리고 원산지와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가 미리 라벨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식별하는 기록은 소매점에서 (원산지 및 생산형태를) 최초 지정한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물들은 소매업체의 보급처나 보관 창고 주 사무소 또는 기타 사업 현장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59739

▶ 기록보관자에 대한 설명:

해당 어패류 품목을 공급하는 자는 소매업체에 직접 판매하든 기타 판매망에 포함된 이들을 통해 판매하든 해당 품목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 정보를 소매업체에 제공한다. 따라서 해당 어패류 품목의 생산자, 취급자, 제조업체, 도매업체, 수입업체 그리고 소매업체들은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부담업체 : 우리는 약 91,000개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125,000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직간접적으로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RIA의 변경 사항은 잠정 최종 규칙에서 어패류를 제외한 항목을 제외하여 영향을 받는 실체의 수를 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어패류 품목의 공급망에는 어패류 생산자와 수확자, 소매업체가 포함된다. 공급망의 어느 차원에서든 수입품이 들어올 수 있다. 시장과 같은 다른 중개처는 생산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잠정 최종 규칙의 문서작업 책임은 표 8에 열거되어 있는 업체 및 사업장의 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업체와 사업장은 폭넓게 두 가지 형태의 비용을 안게 될 것이다.

첫째, 업체는 이 잠정 최종 규칙 준수를 위한 개시 또는 시작 비용을 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 초기 비용을 업체별로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업체는 지속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록보관 비용을 추가로 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비용은 영향을 받는 개별 회사들이 운영하는 개별 사업장별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법률 초안과 비교하여 이 잠정 최종 규칙은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줄였고 이미 라벨표기가 된 제품에 대한 기록보관 공표를 개정하였다. 해당 품목을 소매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로트 번

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공급받은 출처 그리고 직접 판매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식별하는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률 초안에서는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공표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소매업체가 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제품 판매 시점에 작성한 기록과 기타 문서 증거물들을 USDA의 적법한 유자격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제공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소매업체는 제품 판매 후 7일간 이러한 기록들을 보관해야 했다.

이미 라벨 표기된 제품의 경우 이 잠정 최종 규칙은 라벨 자체가 소매업체가 제품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를 확인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공표하고 있다. 법률 초안은 이러한 형태의 구체화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공급자, 로트 번호나 기타 고유 식별자를 통해 해당 거래에 고유한 제품을 식별하는 기록 그리고 라벨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의 기록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소매점에서 원산지와 생산형태를 지정한 일자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들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9740

최초 기록보관 비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어패류 수확자 및 생산자가 현재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생산자와 수확자가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자신이 직접 판매한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확자와 생산자는 소매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며 전달하는 추가 누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대개 어업 및 양식 작업 중에 기록보관에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구축되기 때문에 수확자이 생산자가 기존 자료에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추가하는 누적 비용이 업체별로 비교적 소액일 것으로 추정한다. 초기 또는 시작 비용의 실례로는 필요한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

보를 기록하여 이 정보를 취급업체, 가공업체,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에 전달하는데 필요한 추가 기록보관 비용 등이 있을 것이다.

생산업체가 이 공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록 편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시간이 든다고 추정된다. 이 추가 시간은 기록 보관시스템을 수정하여 원산지 표기 출처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부가 정보를 덧붙이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모든 어패류 제품이 이 최종 잠정 규정의 적용대상인 소매업체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생산자가 자신들의 판매망을 다각화하고 싶어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해당 0-pp[=o어패류 품목 수확자와 생산자 모두 원산지 및 생산형태 정보 요청을 구체화하는데 충분한 기록보관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사업체의 경우 기록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제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4시간이 모든 형태의 수확자와 생산자가 필요한 평균 추가 시간의 합리적 추정치라고 믿는다.

노동부 통계 부서가 출간한 2001년 임금률과 복리비(benefit) 통계인 전국 임금 조사통계(National Compensation Survey)를 이용하여 초기 기록보관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후 전국 임금 조사통계는 갱신되어 현재 2002년 임금률과 복리비(benefit)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갱신된 임금률과 복리비용(benefit)은 잠정 최종 기록보관 비용 그리고 추정 비용 증가분을 산출하는데 쓰인다.

우리는 수확자와 생산자의 경우 처음으로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 기록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주로 부기(장부 정리)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업무는 별도의 부기 계원이 수행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부기 업무를 수행하는 operation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부 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BLS))(Ref. 11)은 부기 계원, 회계원, 감사원의 임금률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 임금률이 별도의 부기 계원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독자적으로 부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산자의 경우 그 안에 생산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인 시간의 기회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2년 7월 임금률을 보면 시간 당 13.62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분석의 목적상 사회 보장금, 실업 보험, 직원 보상금 등 총 봉급을 계상하여 이 임금률에 추가로 27.5%를 덧붙인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추가 비용 추정치는 BLS가 발표한 것이다(Ref 11). 수확자와 생산자가 최초 기록보관 시스템 구축비용은 업체당 4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17.37달러로 기존 기록보관 시스템을 수정하여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구체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560만 달러로 추산된다.

처리업체, 가공업체, 도매업체 그리고 소매업체의 기록보관 비용부담은 생산자가 접하는 것 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체들은 구입한 해당 품목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보관하고 이 정보를 공급망의 다음 업체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업체의 수하증권, 송장 또는 기타 해당 품목의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된 기타 기록물에 추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확자이나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체들 대부분이 기존 시스템 내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보관하고 있다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기록보관 시스템을 조금 수정하면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TI International이 FDA용으로 개발한 라벨 표기 비용 모델(Ref 12, 13)을 이용하여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사업체의 기록에 덧붙이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 종이 문서를 한 가지 색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 이 잠정 최종 규칙의 기록보관 공표를 준수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업체당 재설계를 완료하는데 드는 시간은 29시간 그리고 추정 비용은 1,309달러로 추산된다. 기업에 따라 얼마간 비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1,309달러가 모든 업체의 평균 비용 추정치에 합당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취급업체, 가공업체 그리고 도매업체(수입업체는 도매업체에 포함된다) 등 중개업체들이 들이는 초기 기록보관 비용이 약 870만 달러이며 소매업체의 초기 기록보관 비용은 약 570만 달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 어패류 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률 초안에 비해 이 잠정 최종 규칙에서는 중개업체들의 최초 기록보관 비용이 줄어든다. 따라서 모든 업체의 기록보관 초기 비용은 약 2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러한 기록보관 시스템 1회 구축비용 외에도 업체들은 기록물을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안게 될 것이다. 도표 8에 이러한 비용을 유지비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수확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유지하고 보관하는데 드는 한계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산 어류 수확자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는 제품을 수확하는 과정에 결정되고 따라서 제품의 생산 수명 전반에 걸쳐 생산형태 정보와 원산지를 추적할 필요가 없다. 이 부류의 생산자는 원산지와 생산 정보를 유지하는데 년 4시간 또는 분기당 1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59741

자연산 어류 수확자에 비해 어류 양식업체들이 원산지 및 생산형태(양식산) 정보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산 어류는 대개 생산자의 손으로 1회 수확되어 처리업체에 넘겨진다. 이에 비해 양식산 어패류는 최종 소비되기 이전에 지리적으로 산재된 여러 사업체를 거칠 수 있으며 실제로 거치고 있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 어패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 원산지 및 생산형태 정보를 추적하는 업무를 복잡해진다.

양식 어패류는 최종 수확 이전에 여러 번 소유주가 바뀌기도 하고 이 동물들이 일생동안 이동하기 때문에 원산지 정보 추적 업무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식 어패류 생산업체의 기록보관 비용 부담금이 자연산 어패류 수확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이 양식산 생산업체들이 원산지 및 생산형태 기록을 유지하는데 년 12시간 또는 월 1시간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든 업체의 평균치이다. 업체에 따라 원산지 및 생산형태 기록을 유지하는데 드는 시간은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양식업자들이 생산업체의 사업에 필요한 원본 원산지 정보를 보관할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NASS 자료(Ref. 14)를 이용하여 농장의 평균 임금-가축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8.62달러를 산출하였다(어류 노동자의 임금률은 구할 수 없어 목축업자의 평균 임금률을 이용하였다). 복리비용(benefit)을 뜻하는

27.5%의 비율을 적용하면 목축업자의 시간당 임금인 10.99가 나온다. 수산 양식장에 연간 12시간을 적용하면 연간 추정 유지비용이 467,000달러가 나오는데 이는 이 부류의 생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초안의 추정 유지비용보다 조금 높은 것이다. 추정 유지비용이 증가한 것은 추정 복리비(benefit)를 높였기 때문이다.

취급업체, 가공업체 그리고 도매업체 같은 중개업체들이 사업장 당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유지하는 비용이 생산업체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비용 중 많은 부분은 생산업체의 사업장 평균에 비해 이러한 사업장들의 평균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 중개업체들은 사업장에 유입/유출되는 제품들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선한 해산물과 냉동 해산물 가공업체 그리고 어류 및 해산물 도매업체의 사업장에서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 기록 유지에 드는 연간 시간은 52시간으로 추정한다. 만물상 형태의 도매업체의 경우 사업장 기록 유지에 드는 연간 소요 시간은 12시간으로 추정된다. 만물상 형태의 도매상의 연간 유지시간은 법률 초안에서는 52시간이었으나 이 사업장들이 취급하는 품목들 중 어패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에 52시간에서 12시간으로 낮추었다.

유지 업무에는 개별 해당 어패류 품목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입력, 추적 그리고 보관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는 대개 관리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 지원 업무용 국가 임금 조사 자료의 2002년 7월 BLS 임금을 이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시간당 13.41달러에 덧붙여 간접비용을 포괄하는 27.5%를 덧붙여 시간당 총 17.10달러). 이 직업군에는 재고 회계원과 기록 회계원이 포함된다. 사업장 별 추정 시간과 취급업체, 가공업체 그리고 도매업체와 기타 중개업체의 연간 총 유지 비용을 산출하면 대략 4백만 달러이다.

소매업체들은 개별 상점에서 판매하는 해당 어패류 품목의 원산지 및 생산형태(자연산/양식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 별로 기록보관 유지비용이 추가되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 법률 초안에 포함된 대상 제품에서 어패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에 기록 유지에 드는 추정 시간을 연간 365시간에서 26시간으로 줄였다. 이는 주 당 30

분을 뜻한다. 관리 업무 지원 직업의 BLS 임금률(시간당 13.41달러에 간접비용으로 27.5%를 합산하여 시간당 총 임금은 17.19달러)을 적용했더니 소매업체들이 연간 유지비용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추정치 1650만 달러였다.

따라서 모든 생산업체, 중개업체 그리고 소매업체 사업장의 총 기록유지 비용은 약 2440만 달러였다.

1년차 총 기록 유지비용은 초기 비용과 유지비용을 합하여 산출한 것이다. 수확자와 생산자의 총 기록보관 비용은 약 940만 달러였다. 취급업체, 가공업체 그리고 도매업체는 약 천 2백 8십만 달러였고 소매업체는 약 2240만 달러였다. 우리는 해당 어패류 품목의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참여 업체의 총 기록보관 비용이 첫 해 4460만 달러이며 그 이후의 연간 유지비용은 2440만 달러라고 추정한다.

첫 해의 기록 작성 및 기록보관에 드는 시간(초기 투자시간): 이 초기 기록보관 시스템 구축에 드는 일반적인 보고 책임에 드는 시간은 기록보관인 1인당 연간 약 7.1시간으로 추정된다.

업체 기록보관인 추정치: 91,213명

연간 총 부담 시간: 644,202시간

연간 보고 및 기록보관에 드는 시간(유지시간):

이 기록보관 및 유지에 드는 일반적인 작성 시간은 기록보관인 1인당 연간 평균 21.4시간으로 추정된다.

사업장 기록보관인 추정치: 124,794명

연간 총 투입 시간 추정치: 1,55,696시간.

AMS는 일반인들이 가능한 한 전자 상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부 문서작업 감축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GPEA)을 구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보 수집은 아무런 서식이 없으며 기록보관 용도로만 쓰인다. 따라서 GPEA에는 전자 매체 형식의 제출이라는 대안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AMS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서 이 기록보관 공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견 제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가 실질적 효용을 지니고 있는가를 포함하여 기록보관이 이 프로그램의 타당한 운영에 필요한 것인가.

- (2) USDA가 사용한 방법론과 가정의 타당성을 비롯하여 기록보관 공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추정치가 정확한가.
- (3) 기록물 보관의 품질, 효용 그리고 명확성을 개선하는 방법
- (4) 적절한 자동화, 전자, 기계 또는 기타 기술적인 기록보관 기법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 기술을 비롯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이용 가능케 해야 하는 이들의 기록보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담긴 기록보관 공표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번 판 연방관보 페이지 번호와 일자를 기재해서 원산지 표기 프로그램, 2092-s室; 농무부 농업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AMS); 주소 - STOP 0249;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0249, 또는 팩스 (202) 720-3499, 또는 전자우편 cool@usda.gov로 연락해야 한다.

위의 주소로 보낸 의견은 동시에 농무부 서무부, 정보 및 공표 관리처, 관리 및 예산처, 주소 - New Executive Office Building, 725 17th Street, NW., Room 725, Washinton, DC 20503에도 전송된다. 이 법안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OMB 승인 요청서에 포함시킬 것이다. 모든 의견서는 공공 기록으로 남는다.

59742

참 조 문 헌

1. ERS, USDA. (국민 1인당) 식품 소비 자료 시스템,
<http://www.ers.usda.gov/data/FoodConsumption/>.
2. NMFS, NOAA
3. FAS, USDA, U.S. 인터넷 상거래 시스템,
<http://www.fas.usda.gov/ustrade/>.
4. NMFS, USDA. 상공부. 국립 해산물 소비 통계처.
5. ERS, USDA. Food CPI, 가격과 비용: 직판점 형식의 국내 식품 판매,
www.ers.usda.gov/Briefing/CPIFoodAndExpenditures/Data/table16.htm
6. U.S. 통계청. 1997년 경제 연감. 소매 거래업 시리즈. 사업장 및 업체 규모. EC97R44S.SZ. 2000년 10월 발행.
7. AMS, USDA. 부패성 농산물 관련법 데이터베이스.
8. U.S.통계청. 2000년 미국 사업체 통계
9. NASS, USDA. 1998년 농업 통계.
10. U.S. 통계. 2000 Nonemployer 통계.
11. 노동부 노동통계청, 2003년 3/4분기 국가 임금 조사통계(National Compensation Survey), 고용주가 지불하는 직원 임금.
12. 식품의약청(FDA).
“2002년 대중 의료 보건과 생물테러 준비 및 대처법에 따른 기록의 생성 및 유지”, 2003년 5월 9일자 법률 초안.
13. RTI, International 2000. FDA 라벨표기 비용 모델: 최종 보고서. 2002년 4월 개정
14. NASS, USDA. Farm Labor, 2003년 8월 15일

행정명령 12988

이 법안의 내용은 행정 명령 12988, Civil Justice Reform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법안은 소급적용 취지를 담고 있지 않다. 주와 지방의 관할권은 Act와 이러한 규정들에 명기된 품목의 원산지 표기 프로그램을 구축 또는 운영하는 우선권을 쥐고 있다. 기타 연방 성문법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관련된 모든 라벨표기 공표는 다른 해당 연방 공표와 일치해야 한다. 이 법안의 조항에 대한 사법적 무효 주장을 하기 전에 규명해야 하는 행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인권 검토

AMS는 이 법안의 소수자, 여성 또는 장애인 관련 인권을 존중하여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취향, 기혼/미혼 여부, 정치적 신념, 부모 지위 또는 보호해야 할 유전 정보에 반하여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검토에는 이 공표의 적용을 받는 실체의 피고용인들이 참여하였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해당 실체들이 해당 개인들이나 집단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체를 재배치하거나 변경토록 공표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 프로그램의 특혜를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행정명령 13132

이 법안은 행정 명령 13132, 연방제도를 통해 검토되었다. 이 행정 명령은 정부 기관이 공표 등등에 규정이 명시적인 우선 적용조항(preemption)을 담고 있거나 의회가 州 법의 우선 적용 조항을 의도하거나 연방 법으로 보아 주 당국의 실무가 연방 당국의 실무와 상충하는 경우 州 법만을 우선 적용하는 연방 규정으로 해석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농업 법률안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 규정이 명시적인 우선 적용(preemption)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규정의 문구로 보아 의회가 州 법의 우선 적용(preemption)을 입법 취지로 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몇몇 州에서 특정 품목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알라바마, 알칸사스, 미시시피 그리고 루이지애나 州는 특정 해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조항을 지니고 있다. 와이오밍, 아이다호,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루이지애나, 캔사스, 미시시피를 포함한 일부 州들은 특정 육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공표를 두고 있다. 또한 플로리다와 메인 州는 신선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기 공표를 두고 있다.

이 州들의 원산지 표기 프로그램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들을 포함하는 한 이 주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품목들을 포괄하는 원산지 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은 우선 적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법안에 포함된 공표들은 주 프로그램들의 공표보다 엄격하고 규범적이다. 법이 지시하고 있듯이 주에 자문을 요청하는 일과 관련하여 AMS는 원산지 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더 나아가 기존 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으니 법류 초안에 대해 명시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州는 없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어패류 해당 품목에 대한 2003년 10월 30일자의 법률(68 FR 61944) 초안 공표를 담고 있다. 여기서 논의한 대로 이러한 공표에 대한 변경작업이 이루어졌다. 자연산/양식산 어패류를 제외하고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한 의무 COOL 프로그램의 시행은 2006년 10월 20일까지 연기되었다. (송아지 고기를 비롯한)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의 근육 부위; 다진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썰기 쉬운 농산품과 땅콩을 비롯하여 다른 해당 품목에 대한 공표는 이 법안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어패류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이 잠정 최종 규칙에서 이루어진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해당 품목에 관한 공표를 검토해야 한다. 담당청은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조항들이 모든 해당 품목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아래 기술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어패류 가공 식품 그리고 기록 보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모든 요리된 제품(예: 생선 통조림)은 가공 식품으로 간주되어 이 공표상의 라벨 표기 공표에서 제외된다. 요리된 제품은 해당 품목과는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활용용도(functionality)도 얼마간 제한되어 있다. 역시 이 잠정 최종 규칙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빵가루를 입힌 제품-새우 튀김의 경우 완제품의 50%를 차지한다-이 있다. 또한 독특한 향을 첨가한 품목(예: 케이준 소스에 절인 메기)들 또한 가공식품으로 간주된다. 담당청은 이러한 제품들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한 이러한 공표가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믿고 있다.

AMS는 공급업체의 기록 그리고 중앙에 집중된 소매업체의 기록 보유 연한을 1년으로 축소하고 소매업체 차원의 기록 보유 기간은 대상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기간으로 축소하였다.

59743

또한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원산지 및 생산형태 정보를 처음 작성할 책임이 있는 공급업체들만이 이러한 정보를 구체화하는 기록(예를 들어 어디서 수확했는가)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간 공급업체들과 소매업체들은 로트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자를 지닌 제품을 식별하고 이 고유한 제품들을 (입수가 가능한 경우) 자신에게 직접 공급한 업체 그리고 자신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업체를 알리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유하도록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생산형태 표기는 제품과 함께 제품 자체에 또는 선적 용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함께 움직이게 된다. 감사를 실시하는 AMS는 공급망을 역추적하여 최초 원산지/생산형태 표기 책임을 지닌 공급업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비용 면에서 최종잠정공표의 수정사항은 어류 및 갑각류부문에
서 상정안에서 제시된 이행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첫째 이행비용이 낮은 산정
치를 가져와, 다른 포장물품에 적용한다면, 상정안과 상응하는 변화로 평가서
에 제시된 상향범위 추산치보다 상대적으로 첫째 이행비용도 낮을 것이다.
평가서에서 제시된 포장물품의 이행비용은 39억달러에 이르며, 예비분석에서
는 이 공표의 요구사항을 모든 포장물품에 적용하면 평가서의 상향범위 추산
치와 상대적으로 첫째 이행비용은 20-30%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 공표는 연방관보의 간행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유효하며, 2004년도 12월
이전 어획된 냉동어류 및 갑각류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물품은 상거래채
널에서 모두 제거되고 AMS가 입법과정에 포함된 조항에 관한 산업교육 및
구제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유효한 명분으로, 이 공표를 발효시키기 전에 예비 통지를 제공
하는 것은 대중의 이익에 불필요하며 비실용적이고 모순된다고 판단되었다.
이 조치는 농업마케팅법에 의거 승인되었다. 상정안의 공표이후, 농림부서
에서는 의견접수 결과 변경사항으로 논평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더
욱이, 이 공표는 90일간 의의제기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VI. 미국 당국자와의 서신 교환 / 참고자료

VI. 미국 당국자와의 서신 교환 / 참고자료

1. 원산지표시 제도 발의 규칙(03. 10) 주요 내용 및 문의 결과

(1) 미국은 지난 2002년 Farm Bill(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2002)에 의하여 오는 2004년 9. 30부터 시행할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 아래의 원산지표시제도 시행계획안(proposed rules)을 고시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대상 : 자연산 어·패류 및 양식산 어·패류
 - 생(raw), 냉장, 냉동, 빵가루 묻힌 것, 조리한 것, 통조림으로 만든 것 등 포함
 - 단, 물리적·화학적으로 변성된 가공품은 제외
- 표시방법
 - 자연산과 양식산을 구분
 - 제품 처리한 곳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예 : product of U.S)
 - 미국어장에서 어획한 것을 외국(선박포함)에서 제품처리 했을 경우
: Product of (), harvested in the United States
 -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처리 했을 경우
: Imported form (), processed in the United States
 - 양식산일 경우 단계별(hatched, raised, harvested, processed)로 원산지가 다를 경우 구분하여 표시
: Product of (), (hatched in, raised in, harvested in)
 - 몇 개국산 원료를 합쳐 제품처리 했을 경우
: 알파벳순으로 Product of (), Product of (),

(2) 주미대사관 소속 해양수산물관인 농업 판매부(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부청장 Barry L. Carpenter(원산지표시 담당 Erin Morris 배석)에게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표시하도록 할 계획인지를 문의한 결과,

- 활어의 경우 원산지별로 수조(tank)를 분리하도록 함(원산지가 5개국일 경우 수조도 최소 5개가 필요)
- 원산지 표식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방법을 한정하지 않으며, 표식크기도 제한하지 않음
 - 활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조에 표식을 부착하는 방법이 사용되겠으나,
 - 가재의 경우 꼬리에 표식을 부착할 수 있음
- 자연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어선의 국적(flag)을 중심으로 하되, 미국 EEZ에서 어획하였을 경우는 동 내용을 부기토록 함
- 양식산의 경우는 4단계(hatched, raised, harvested, processed)로 나누어 각 단계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복잡할 소지는 있으나, 혼동의 소지는 별도 없음
- 상자에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상자를 뜯어 날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원산지가 다른 상자들은 서로 격리하여 저장토록 하고 유통관련 서류 및 판매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함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잠정 최종 규칙에 대한 미국 농무부 발표기사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美농무부 규칙 공표

워싱턴, 2004. 9. 30 - 미 농무부는 2002 농업법안이 요구한 바에 의거하여 어패류에 대한 “원산지 표기(COOL)제” 프로그램에 대한 “잠정적 최종규칙”을 오늘 발표하였다. 2004 세출예산법은 어패류를 제외한 상품의 원산지 표기의 적용은 2006년 9월 30일 까지 연기했다.

미 농무부(USDA)는 어패류에 관한 ‘원산지 의무 표시제 프로그램’(이하 Mandatory COOL)을 위해 2003년 미국 농무부가 제출한 “제안 규칙”에 대해 제출된 5,600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것은 공정하고도 효과적인 “잠정적 최종규칙”을 개발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었다고 농무부 유통 지원국장 A.J. Yates가 밝혔다.

“잠정적 최종규칙”에 따라 표기의무에 해당하는 어패류 상품은 소매단계에서 반드시 해당품목의 생산방법(자연산 또는 양식), 원산지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어패류가 가공식품의 재료(성분)로 쓰인 경우에는 COOL법안의 효력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의 가공제품의 정의는 원래의 “제안 규칙”으로부터 개정되었다. 변화를 겪은(예를 들어, 요리, 카레로 만들어진 것, 훈제) 해당제품 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제품이나 다른 본질적인 식재료(예를 들어, 빵가루 묻힌 것, 토마토 소스)와 섞여있는 해당 제품으로부터 유래된 가공품목은 COOL법안의 효력범위에서 제외된다.

식당, 런치룸, 카페테리아, 푸드 스텐드, 바, 라운지 등과 같은 음식점이나 이와 비슷한 요식업을 행하는 곳들도 이 법안의 시행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 “잠정적 최종규칙”은 해당품목을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대략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공급자의 기록표 보유의무와 가게의 중앙에 비치되어야 하는 소매기록을 1년으로 줄여준다. 그래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때는 언제든 지 가게차원의 기록들이 제공되어야했던 시간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 중간 생략 -

“잠정적 최종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한다. 이러한 유예는 현존하는 제고가 상업을 통하여 청산되어지고, 또한 해당 산업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무의 이행하는데 순응시키기 위해서이다. 미 농무부는 첫해 동안 홍보 및 교육시행을 통해 법안시행 대상산업이 규칙의 요구 사항을 순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잠정적 최종규칙” 전체 내용은 추후 Federal Register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잠정적 최종규칙”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한다. “잠정적 최종규칙”의 사본 및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ams.usda.gov/COOL>)에 게재되어있다.

▶ 농무부 발표기사 영어 원문

AMS No. 172-04
George Chartier (202) 720-8998
george.chartier@usda.gov
Billy Cox (202) 720-8998
billy.cox@usda.gov

USDA ISSUES REGULATORY ACTION ON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FOR FISH AND SHELLFISH

WASHINGTON, Sept. 30, 2004 —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oday issued an interim final rule for the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program for fish and shellfish as required by the 2002 Farm Bill. The 2004 Appropriations Act delayed the applicability of mandatory COOL to the other covered commodities, other than fish and shellfish, until Sept. 30, 2006.

“USDA received over 5,600 comments on the proposed rule for COOL, which have been carefully considered in developing a fair and effective interim final rule,” said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dministrator A.J. Yates.

Under the interim final rule, fish and shellfish covered commodities must be labeled at retail to indicate their country of origin and method of production (wild and/or farm raised). However, covered commodities are excluded from mandatory COOL if they are an ingredient in a processed food item.

Also, the definition of a processed food item has been revised from the proposed rule. Items derived from a covered commodity that has undergone a change (e.g., cooking, curing, smoking) or that has been combined with other covered commodities or other substantive food components (e.g., breading, tomato sauce) are excluded from COOL labeling.

Food service establishments, such as restaurants, lunchrooms, cafeterias, food stands, bars, lounges and similar enterprises are exempt from the mandatory COOL requirements.

The interim final rule outlines the requirements for labeling covered commodities. It reduces the recordkeeping retention requirements for suppliers and centrally located retail records to one year and reduces the time during which store level records must be made available to when product is on hand.

- more -

The interim final rule will become effectiv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This delay will permit existing inventories to clear through the channels of commerce and allow industry members to conform their operations to the new requirements. USDA plans to conduct outreach and education activities during the first year to assist the industry in achieving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of the rule.

The full text of the interim final rule will be published in a forthcoming Federal Register. As an interim final rule, further comments are invited and must be submitted within 90 days of publication. Copies of the interim final rule and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www.ams.usda.gov/COOL>

3. 잠정적 최종규칙의 향후 법적 경과

(1) 이 규칙의 공포일은 언제인가?

이것은 입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률안이 아니고, 이미 제정되어진 법령안에 대한 행정부 제정의 규정을 공포하기 위한 ‘잠정적 최종규칙’이다.

2002년 농업법은 농무부장관에게 소매업자들이 고객들에게 식품의 원산지를 알리도록 요구하는 행정규칙을 2004년 9월 30일까지 발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2004년 9월 30일 언론에 발표된 ‘잠정적 최종규칙’은 어패류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나타내고 있다.

(2) 공포와 발표의 차이는 무엇인가?

2004년 9월 30일 ‘잠정적 최종규칙’은 COOL 웹사이트에 발표되어 게재되어 있다. ‘잠정적 최종규칙’은 2004년 10월 5일 연방관보에 공포(등재)되었다. 9월 30일의 발표는 단지 10월 5일 연방회보에 공식적인 공포의 이전에 규칙의 본문을 며칠 동안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불과하다.

연방관보의 공포사항은 지금 USDA의 COOL 웹 사이트에 접근가능하며, 거기에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논지(talking point), 질문과 답변, 그리고 다른 도움이 될만한 읽을거리로 되어 있다.

(3) 미국의 일반적인 입법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Bill(법률안)은 미국정부의 입법부인 하원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의회에 의하여 추인되고 대통령의 사인을 얻은 Bill(법률안)은 법(Law)이 된다.

그 후에 행정부는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들과 규정들을 공포한다. 당신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으로 논의된 것처럼 USDA에 의해 공포되어진 ‘잠정적 최종규칙’은 입법이 아니고, 단지 2002년 3월 13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사인을 받은 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부의 집행규칙일 뿐이다.

(4) 의회에서 제안된 규칙과 행정부에서 준비한 규칙의 차이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의회는 규칙을 제안하지 아니하며, 단지 법령을 통과시킨다. 9월 30일 언론에 보도된 ‘제안된 규칙’은 USDA(미국 농무부)에 의해 공포

되어진 것이다. (2003년 9월에) ‘제안된 규칙’의 본문은 USDA의 COOL 웹 사이트에서 참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잠정적 최종규칙’은 2005년 4월 4일 효력을 발생할 실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5) 이 규칙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것은 법률안(BILL)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법(LAW)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Rule)이다. 다음 단계는 이 ‘잠정적 최종규칙’이 2005년 4월 4일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날짜에 앞서 USDA는 이 규칙의 조항이나 요구사항과 관련되는 산업교육이나 홍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USDA는 2005년 4월 4일 이후 6개월간 법과 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산업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 문서들이 USDA의 COOL 웹 사이트에 이용 가능하도록 개제될 것이다.

▶ 서신 원문

On behalf of Billy Cox, I am responding to your questions about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for fish and shellfish.

(1) When is the date of publication for this bill?

This is not a legislative bill, but rather an interim final rule to promulgate regulations for legislation that has already been enacted. The 2002 Farm Bill (Public Law 107-171) directed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to issue regulations by September 30, 2004, to require retailers to notify their customer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certain food products. The interim final rule announced in the September 30, 2004, press release present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for fish and shellfish.

(2)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ation and announcement?

The interim final rule was announced on September 30, 2004, on USDA's COOL website at <http://www.ams.usda.gov/cool/index.htm>. The interim final rule wa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October 5, 2004. The announcement on September 30 simply made the text of the rule available to the public a few days in advance of the official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on October 5. The Federal Register publication is now accessible from USDA's COOL website, as are talking points, questions and answers, and other helpful materials.

(3) What is the normal procedure of your legislation?

A bill is legislation that is proposed by Congress,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A bill that is approved by the Congress and signed by the President becomes a law. The Executive Branch then promulgates rules and regulations as necessary to enforce the law. As discussed in my response to your first question, the interim final rule promulgated by USDA is not legislation, but represents the Executive Branch's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that was passed by the Congress and signed into law by the President on May 13, 2002.

(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ule proposed by the Senate/Congress(what is believed as the proposed rule) and the rule prepared by the Government?

As mentioned above, the Congress does not propose rules, but rather passes legislation. The proposed rule mentioned in the September 30, press release was promulgated by USDA. The text of the proposed rule is available for reference on USDA's COOL website, but the interim final rule contains the actual requirements that will become effective on April 4, 2005.

(5) What is the next step for this bill?

As previously mentioned, this is not a bill, but is a rule to implement existing law. The next step is that the interim final rule becomes effective beginning April 4, 2005. Prior to this date, USDA will conduct industry education and outreach concerning the provis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rule. USDA also will focus its resources for the six months immediately following April 4, 2005, on industry education and outreach. Informational materials will be posted to the USDA COOL website as they become available.

I hope that I have answered your questions.

Sincerely,

Warren P. Preston, Ph.D.
Chief Economist
Livestock & Seed Program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Room 2604 South Bldg.
14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0249
Phone: 202-720-5705
Fax: 202-720-3499

4. 미국 수출품은 자연산 혹은 양식 여부를 전 제품에 표시해야함

(1) 미국측 구두 답변

미 당국자는 구두답변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수출시 원산지 표시와 함께 자연산 혹은 양식산 여부를 전 수출제품에 표기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잠정적 최종 규칙 §60. 200 [a] 항은 일반 조항으로서 이후의 모든 조항 [b] ~ [g] 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 한국측 질문

Part IV Department of Agriculture

7CFR Part 60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Fish and Shellfish; Interim Rule

동 규칙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적 최종 규칙 §60. 200 Country of Origin Notification에는 먼저 [a] Labeling of ----- must contain country of origin and method of production information(wild and/or farm-raised) as set forth in this regulation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원산지와 생산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와 관련되는 동 조항의 F, G의 규정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f] Labeling Imported Products That Have Not Undergone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Method of production(즉, 자연산인지 양식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무규정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어, 패류의 원산지와 더불어 생산방법에 대한 Label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g] Labeling Imported Products That Have Subsequently Been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the United States의 (2)Wild and Farm-Raised Fish and Shellfish에도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예를 들어 “From [country X], processed in the United States라고 하여 어, 패류의 생산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Label 하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규정에 명시적으로 생산방법(자연산, 양식)에 대한 단어가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 업체들이 생산방법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국자에게 알아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미국에서 운영하였던 (<http://www.countryoforiginlabel.org/seafood.htm>)사이트에는 다음과 같

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발적 가이드라인이 유효한 것인지 또한 의문이 있습니다.

Foreign Country of Origin Label

Under the USDA's current voluntary guidelines, the country of origin for products produced entirely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country or countries as specified by the requirements of existing Federal laws at the time the product arrives as the U.S. port of entry (U.S. Customs Service regulations). Using this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for imported products,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will have to maintain the country (or countries) of origin identity of this class of products to the final point of retail sale of the covered commodity. However, the USDA voluntary guidelines will also require such products to be identified as either farm-raised or wild.

5. “활어(살아있는 물고기)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Subject: RE: Question on the COOL form Korean Govt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상품의 범위에 관한 당신의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당신이 언급한 웹 사이트는 오래된 것으로서 가장 최근의 정보는 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www.ams.usda.gov/cool/index.ht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어(살아있는 물고기)와 활패류(살아있는 조개류)는 필렛, 스테이크, 너겟, 그리고 다른 어패류의 고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상품에 포함된다.

요리되거나 빵가루 묻힌 제품은 다른 가공된 제품과 마찬가지로 해당제품에서 제외된다. 저는 지금 보내는 메일에 규정에 관한 몇몇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reserved(유보된)”이라는 표현은 단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절을 삽입하기 위하여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룰 필요가 있거나 걱정해야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다른 의문점이 있으신 경우 부담없이 저와 직접 접촉해주시기 바랍니다.

•Original Message

저는 당신들이 2004년 9월 30일 발표한 농무부 172-04 호를 읽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잠정적 최종규칙’이 공표일로 6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또한 이 ‘잠정적 최종규칙’이 초기 2년간은 어패류에 관하여만 적용되어 진다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이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1. 해산물 표기와 관련된 웹 페이지 (www.countryoforiginlabel.org/seafood.htm)에서는 “모든 신선, 냉장 어패류 품목은 이 원산국 표시제 자율적 지침의 해당상품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선, 냉장 어패류 품목”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인지요? 이것은 살아있는 조개, 살아있는 물고기(활어패류)가 포함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된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2. “reserved(유보된)”이라는 표현이 법 60편 - 어패류에 관한 원산국 표시제도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이 실린 (www.ams.usda.gov/cool/COOLfr.pdf)의 59743 페이지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reserve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다. 예를 들어 유보된 조항이 삭제되었는지 혹은 나중에 확정되어질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조항에 대처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알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조항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Thank you for your message. With regard to your first question about what is covered, the website you mentioned is an old one that does not have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Please go to www.ams.usda.gov/cool/index.htm

Live fish and shellfish are covered as are fillets, steaks, nuggets, and other flesh of fish and shellfish. Cooked and breaded products are excluded as well as other processed products. I am attaching a file which has some of the key information about the regulation.

The expression "reserved" just means that we are holding space in the regulation to add other sections as needed. It is nothing to be concerned about or that you need to deal with.

I hope this information is helpful an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directly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Erin Morris
USDA, AMS, Livestock and Seed Program
202-720-1749
Erin.morris@usda.gov

•Original Message

Dear Official!

Hi, I read your announcement, AMS No. 172-04, dated Sep 30, 2004, which briefly explains that the bill will be effectiv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and that this bill only applies to the fish and shellfish for the first two years. So, in relation with the announcement, my questions

are as follows:

1. In SEAFOOD Labeling page (www.countryoforiginlabel.org/seafood.htm), it says, “All fresh and frozen fish & shellfish items are covered by these country of origin labeling voluntary guidelines”. What do “fresh and frozen fish & shellfish items” exactly mean? Does it mean that live fishes including live shellfishes are excluded or included?
2. The expression “reserved” is frequently used in Part 60-COUNTRY OF ORIGIN LABELING FOR FISH AND SHELLFISH (www.ams.usda.gov/cool/COOLfr.pdf) like on Page, 59743 of the Interim Final Rule book under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Fish and Shellfish”. I want to make sure we know what “reserved” means in detail, for example, whether the reserved clauses were deleted or will be specified later on, and how we should deal with them, as it is important concerning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se clauses.

It would be very helpful to do our jobs if you kindly answer those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VII. 독점적 경제구역 및 해양경계 :
제한의 통지

VII. 독점적 경제구역 및 해양경계 : 제한의 통지

1983년 대통령령으로 미국은 독점경제구역을 설정하여, 그 외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할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의 시점에서 그어진 경계선이 된다. 미국정부는 미국 및 인접국의 각각의 사법관할권에 구속되는 지역의 한계설정과 관련하여 인접국과 협상을 벌이며 화해를 모색해왔고, 모색하며, 모색할 것이다.

미국의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이들 국가와 어떤 협상 혹은 그 지역의 해상사법권의 한계를 고려하여 채택할 수 있는 입장을 침해하지 않고 의도된 것이다. 더욱이, 그 한계는 국제법과 일치하여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을 넘어선 지역의 미국 대륙의 외적 한계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후 미국의 해양경계와 어업보존지구를 공고가 연방관보에 발표되었다.

이 공고문은 위 공고문에 공표된 모든 한계를 대신하므로, 미국무성은 미국을 대표하며 여기 미국의 독점 경제구역을 선포하며, 이 경계에서 미국은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경계가 필요하지만 아직 협의되지 않은 경우 상호약정에 의해 해상경계의 설정을 조건으로 통수권 및 사법권을 행사한다.

이 주제에 대한 공고의 공표는 공고일로 즉시 유효하며 미국무성의 외교책임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하다.

▶ 미국대서양 및 멕시코만

메인 주지역의 만에서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44 deg.	46'35.346"	N., 66 deg.	54'11.253 W.
2.	44 deg.	44'41"	N., 66 deg.	56'17" W.
3.	44 deg.	43'56"	N., 66 deg.	56'26" W.
4.	44 deg.	39'13"	N., 66 deg.	57'29" W.
5.	44 deg.	36'58"	N., 67 deg.	00'36" W.
6.	44 deg.	33'27"	N., 67 deg.	02'57" W.
7.	44 deg.	30'38"	N., 67 deg.	02'38" W.
8.	44 deg.	29'03"	N., 67 deg.	03'42" W.
9.	44 deg.	25'27"	N., 67 deg.	02'16" W.
10.	44 deg.	21'43"	N., 67 deg.	02'33" W.
11.	44 deg.	14'06"	N., 67 deg.	08'38" W.
12.	44 deg.	11'12"	N., 67 deg.	16'46" W.
13.	42 deg.	53'14"	N., 67 deg.	44'35" W.
14.	42 deg.	31'08"	N., 67 deg.	28'05" W.
15.	40 deg.	27'05"	N., 65 deg.	41'59" W.

15 지점과 16지점사이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블레이크 고원지역, 플로리다해협 및 동부 멕시코만에서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의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에 의해 결정된다.

• 위 도

139지점과 140 지점사이,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중앙 멕시코만에서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6.	28 deg.	17'10"	N., 76 deg.	36'45" W.
17.	28 deg.	17'10"	N., 79 deg.	11'24" W.
18.	27 deg.	52'54"	N., 79 deg.	28'36" W.
19.	27 deg.	26'00"	N., 79 deg.	31'38" W.
20.	27 deg.	16'12"	N., 79 deg.	34'18" W.
21.	27 deg.	11'53"	N., 79 deg.	34'56" W.
22.	27 deg.	05'58"	N., 79 deg.	35'19" W.
23.	27 deg.	00'27"	N., 79 deg.	35'17" W.
24.	26 deg.	55'15"	N., 79 deg.	34'39" W.
25.	26 deg.	53'57"	N., 79 deg.	34'27" W.
26.	26 deg.	45'45"	N., 79 deg.	32'41" W.
27.	26 deg.	44'29"	N., 79 deg.	32'23" W.
28.	26 deg.	43'39"	N., 79 deg.	32'20" W.
29.	26 deg.	41'11"	N., 79 deg.	32'01" W.
30.	26 deg.	38'12"	N., 79 deg.	31'33" W.
31.	26 deg.	36'29"	N., 79 deg.	31'07" W.
32.	26 deg.	35'20"	N., 79 deg.	30'50" W.
33.	26 deg.	34'50"	N., 79 deg.	30'46" W.
34.	26 deg.	34'10"	N., 79 deg.	30'38" W.
35.	26 deg.	31'11"	N., 79 deg.	30'15" W.
36.	26 deg.	29'04"	N., 79 deg.	29'53" W.
37.	26 deg.	25'30"	N., 79 deg.	29'58" W.
38.	26 deg.	23'28"	N., 79 deg.	29'55" W.
39.	26 deg.	23'20"	N., 79 deg.	29'54" W.
40.	26 deg.	18'56"	N., 79 deg.	31'55" W.
41.	26 deg.	15'25"	N., 79 deg.	33'17" W.
42.	26 deg.	15'12"	N., 79 deg.	33'23" W.
43.	26 deg.	08'08"	N., 79 deg.	35'53" W.
44.	26 deg.	07'46"	N., 79 deg.	36'09" W.
45.	26 deg.	06'58"	N., 79 deg.	36'35" W.
46.	26 deg.	02'51"	N., 79 deg.	38'22" W.
47.	25 deg.	59'29"	N., 79 deg.	40'03" W.
48.	25 deg.	59'15"	N., 79 deg.	40'08" W.
49.	25 deg.	57'47"	N., 79 deg.	40'38" W.
50.	25 deg.	56'17"	N., 79 deg.	41'06" W.
51.	25 deg.	10'38"	N., 79 deg.	41'38" W.
52.	25 deg.	54'03"	N., 79 deg.	41'46" W.
53.	25 deg.	53'23"	N., 79 deg.	41'59" W.
54.	25 deg.	51'53"	N., 79 deg.	42'16" W.
55.	25 deg.	49'32"	N., 79 deg.	42'23" W.
56.	25 deg.	48'23"	N., 79 deg.	42'24" W.
57.	25 deg.	48'19"	N., 79 deg.	42'44" W.
58.	25 deg.	46'25"	N., 79 deg.	42'45" W.
59.	25 deg.	46'15"	N., 79 deg.	42'59" W.

60.	25 deg.	43'39"	N., 79 deg.	42'48" W.
61.	25 deg.	42'30"	N., 79 deg.	42'27" W.
62.	25 deg.	40'36"	N., 79 deg.	42'27" W.
63.	25 deg.	37'23"	N., 79 deg.	42'27" W.
64.	25 deg.	37'07"	N., 79 deg.	42'12" W.
65.	25 deg.	31'02"	N., 79 deg.	42'11" W.
66.	25 deg.	27'58"	N., 79 deg.	42'12" W.
67.	25 deg.	24'03"	N., 79 deg.	42'20" W.
68.	25 deg.	22'20"	N., 79 deg.	42'08" W.
69.	25 deg.	21'28"	N., 79 deg.	41'24" W.
70.	25 deg.	16'51"	N., 79 deg.	41'31" W.
71.	25 deg.	15'56"	N., 79 deg.	41'31" W.
72.	25 deg.	09'50"	N., 79 deg.	41'36" W.
73.	25 deg.	09'02"	N., 79 deg.	41'45" W.
74.	25 deg.	03'53"	N., 79 deg.	42'30" W.
75.	25 deg.	02'58"	N., 79 deg.	42'57" W.
76.	25 deg.	00'28"	N., 79 deg.	44'06" W.
77.	24 deg.	59'01"	N., 79 deg.	44'49" W.
78.	24 deg.	55'26"	N., 79 deg.	45'58" W.
79.	24 deg.	44'16"	N., 79 deg.	49'25" W.
80.	24 deg.	43'02"	N., 79 deg.	49'39" W.
81.	24 deg.	42'34"	N., 79 deg.	50'51" W.
82.	24 deg.	41'45"	N., 79 deg.	52'58" W.
83.	24 deg.	38'30"	N., 79 deg.	59'59" W.
84.	24 deg.	36'25"	N., 80 deg.	03'52" W.
85.	24 deg.	33'16"	N., 80 deg.	12'44" W.
86.	24 deg.	33'03"	N., 80 deg.	13'22" W.
87.	24 deg.	32'11"	N., 80 deg.	15'17" W.
88.	24 deg.	31'25"	N., 80 deg.	16'56" W.
89.	24 deg.	30'55"	N., 80 deg.	17'48" W.
90.	24 deg.	30'12"	N., 80 deg.	19'22" W.
91.	24 deg.	30'04"	N., 80 deg.	19'45" W.
92.	24 deg.	29'36"	N., 80 deg.	21'06" W.
93.	24 deg.	28'16"	N., 80 deg.	24'36" W.
94.	24 deg.	28'04"	N., 80 deg.	25'11" W.
95.	24 deg.	27'21"	N., 80 deg.	27'21" W.
96.	24 deg.	26'28"	N., 80 deg.	29'31" W.
97.	24 deg.	25'05"	N., 80 deg.	32'23" W.
98.	24 deg.	23'28"	N., 80 deg.	36'10" W.
99.	24 deg.	22'31"	N., 80 deg.	38'57" W.
100.	24 deg.	22'05"	N., 80 deg.	39'52" W.
101.	24 deg.	19'29"	N., 80 deg.	45'22" W.
102.	24 deg.	19'14"	N., 80 deg.	45'48" W.
103.	24 deg.	18'36"	N., 80 deg.	46 deg. 50" W.

104.	24 deg.	18'33"	N., 80 deg.	46'55" W.
105.	24 deg.	09'49"	N., 80 deg.	59'48" W.
106.	24 deg.	09'46"	N., 80 deg.	59'52" W.
107.	24 deg.	08'56"	N., 81 deg.	01'08" W.
108.	24 deg.	03'28"	N., 81 deg.	01'52" W.
109.	24 deg.	08'24"	N., 81 deg.	01'58" W.
110.	24 deg.	07'26"	N., 81 deg.	03'07" W.
111.	24 deg.	02'18"	N., 81 deg.	09'06" W.
112.	23 deg.	59'58"	N., 81 deg.	11'16" W.
113.	23 deg.	55'30"	N., 81 deg.	12'55" W.
114.	23 deg.	53'50"	N., 81 deg.	19'44" W.
115.	23 deg.	50'50"	N., 81 deg.	30'00" W.
116.	23 deg.	50'00"	N., 81 deg.	40'00" W.
117.	23 deg.	49'03"	N., 81 deg.	50'00" W.
118.	23 deg.	49'03"	N., 82 deg.	00'12" W.
119.	23 deg.	49'40"	N., 82 deg.	10'00" W.
120.	23 deg.	51'12"	N., 82 deg.	25'00" W.
121.	23 deg.	51'12"	N., 82 deg.	40'00" W.
122.	23 deg.	49'40"	N., 82 deg.	48'54" W.
123.	23 deg.	49'30"	N., 82 deg.	51'12" W.
124.	23 deg.	49'22"	N., 83 deg.	00'00" W.
125.	23 deg.	49'50"	N., 83 deg.	15'00" W.
126.	23 deg.	51'20"	N., 83 deg.	25'50" W.
127.	23 deg.	52'25"	N., 83 deg.	33'02" W.
128.	23 deg.	54'02"	N., 83 deg.	41'36" W.
129.	23 deg.	55'45"	N., 83 deg.	48'12" W.
130.	23 deg.	58'36"	N., 84 deg.	00'00" W.
131.	24 deg.	09'35"	N., 84 deg.	29'28" W.
132.	24 deg.	13'18"	N., 84 deg.	38'40" W.
133.	24 deg.	16'39"	N., 84 deg.	46'08" W.
134.	24 deg.	23'28"	N., 85 deg.	00'00" W.
135.	24 deg.	26'35"	N., 85 deg.	06'20" W.
136.	24 deg.	38'55"	N., 85 deg.	31'55" W.
137.	24 deg.	44'15"	N., 85 deg.	43'12" W.
138.	24 deg.	53'55"	N., 86 deg.	00'00" W.
139.	25 deg.	12'25"	N., 86 deg.	33'12" W.
140.	25 deg.	41'56.52.88"	N., 88 deg.	23'05.54" W.
141.	25 deg.	46'52.00"	N., 90 deg.	29'41.00"W.
142.	25 deg.	42'13.05"	N., 91 deg.	05'24.89"W.
143.	25 deg.	59'48.28"	N., 93 deg.	26'42.19"W.
144.	26 deg.	00'30.00"	N., 95 deg.	39'26.00"W.
145.	26 deg.	00'31.00"	N., 96 deg.	48'29.00"W.
146.	25 deg.	58'30.57"	N., 96 deg.	55'27.37"W.

142지점과 143 지점사이,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서부 멕시코만에서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46지점에서, 미국관할권의 한계는 국경 이건을 해소하고 국경으로 리오그란데 및 콜로라도 강을 유지할 협약의 부속문에서 미국과 멕시코주에 의해 설정된 영해국경으로 멕시코시에서 서명되어 1972년 4월일자로 발효되었다.

▶ 미국태평양연안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후안데 푸카해협지역에서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48 deg.	29'37.19"	N., 124 deg.	43'33.19" W.
2.	48 deg.	30'11"	N., 124 deg.	47'13" W.
3.	48 deg.	30'22"	N., 124 deg.	50'21" W.
4.	48 deg.	30'14"	N., 124 deg.	54'52" W.
5.	48 deg.	29'57"	N., 124 deg.	59'14" W.
6.	48 deg.	29'44"	N., 125 deg.	00'06" W.
7.	48 deg.	28'09"	N., 125 deg.	05'47" W.
8.	48 deg.	27'10"	N., 125 deg.	08'25" W.
9.	48 deg.	26'47"	N., 125 deg.	09'12" W.
10.	48 deg.	20'16"	N., 125 deg.	22'48" W.
11.	48 deg.	18'22"	N., 125 deg.	29'58" W.
12.	48 deg.	11'05"	N., 125 deg.	53'48" W.
13.	47 deg.	49'15"	N., 126 deg.	40'57" W.
14.	47 deg.	36'47"	N., 127 deg.	11'58" W.
15.	47 deg.	22'00"	N., 127 deg.	41'23" W.
16.	46 deg.	42'05"	N., 128 deg.	51'56" W.
17.	46 deg.	31'47"	N., 129 deg.	07'39" W.

17지점과 18 지점사이,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남부 캘리포니아해안에서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8.	30 deg.	32'31.20"	N., 121 deg.	51'58.37"W.
19.	31 deg.	07'58.00"	N., 118 deg.	36'18.00"W.
20.	32 deg.	37'37.00"	N., 117 deg.	49'31.00"W.
21.	32 deg.	35'22.11"	N., 117 deg.	27'49.42"W.

21지점에서 해안까지, 미국관할권의 한계는 국경 이건을 해소하고 국경으로 리오그란데 및 콜로라도 강을 유지할 협약의 부속문에서 미국과 멕시코주에 의해 설정된 영해국경으로, 멕시코시에서 서명되어 1972년 4월일자로 발효되었다.

▶ 알래스카

알래스카해안에서,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69 deg.	38'48.88"	N., 140 deg.	59'52.7"W.
2.	69 deg.	38'52"	N., 140 deg.	59'51" W.
3.	69 deg.	39'37"	N., 140 deg.	59'01" W.
4.	69 deg.	40'10"	N., 140 deg.	58'34" W.
5.	69 deg.	41'30"	N., 140 deg.	57'00" W.
6.	69 deg.	46'25"	N., 140 deg.	49'45" W.
7.	69 deg.	47'54"	N., 140 deg.	47'07" W.
8.	69 deg.	51'40"	N., 140 deg.	42'37" W.
9.	70 deg.	09'26"	N., 140 deg.	19'22" W.
10.	70 deg.	11'30"	N., 140 deg.	18'09" W.
11.	70 deg.	29'07"	N., 140 deg.	09'51" W.
12.	70 deg.	29'19"	N., 140 deg.	09'45" W.
13.	70 deg.	37'31"	N., 140 deg.	02'47" W.
14.	70 deg.	48'25"	N., 139 deg.	52'32" W.
15.	70 deg.	58'02"	N., 139 deg.	47'16" W.
16.	71 deg.	01'15"	N., 139 deg.	44'24" W.
17.	71 deg.	11'58"	N., 139 deg.	33'58" W.
18.	71 deg.	23'10"	N., 139 deg.	21'46" W.
19.	72 deg.	12'18"	N., 138 deg.	26'19" W.
20.	72 deg.	46'39"	N., 137 deg.	30'02" W.
21.	72 deg.	56'49"	N., 137 deg.	34'08" W.

21지점과 22 지점사이,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척치해, 베링해협, 북베링해에서, 독점경제구역의 남방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22.	72 deg.	46'29"	N., 168 deg.	58'37" W.
23.	65 deg.	30'00"	N., 168 deg.	58'37" W.
24.	65 deg.	19'58"	N., 168 deg.	21'38" W.
25.	65 deg.	09'51"	N., 169 deg.	44'34" W.
26.	64 deg.	59'41"	N., 170 deg.	07'23" W.
27.	64 deg.	49'26"	N., 170 deg.	30'06" W.
28.	64 deg.	39'08"	N., 170 deg.	52'43" W.
29.	64 deg.	28'46"	N., 171 deg.	15'14" W.
30.	64 deg.	18'20"	N., 171 deg.	37'40" W.
31.	64 deg.	07'50"	N., 172 deg.	00'00" W.
32.	63 deg.	59'27"	N., 172 deg.	18'39" W.
33.	63 deg.	51'01"	N., 172 deg.	38'13" W.
34.	63 deg.	42'33"	N., 172 deg.	55'42" W.
35.	63 deg.	34'01"	N., 173 deg.	14'07" W.
36.	63 deg.	25'27"	N., 173 deg.	32'27" W.
37.	63 deg.	16'50"	N., 173 deg.	50'42" W.
38.	63 deg.	08'11"	N., 174 deg.	08'52" W.
39.	62 deg.	59'29"	N., 174 deg.	26'58" W.
40.	62 deg.	50'44"	N., 174 deg.	44'59" W.
41.	62 deg.	41'56"	N., 175 deg.	02'56" W.
42.	62 deg.	33'06"	N., 175 deg.	20'48" W.
43.	62 deg.	24'13"	N., 175 deg.	38'36" W.
44.	62 deg.	15'17"	N., 175 deg.	56'19" W.
45.	62 deg.	06'19"	N., 176 deg.	13'59" W.
46.	61 deg.	57'18"	N., 176 deg.	31'34" W.
47.	61 deg.	48'14"	N., 176 deg.	49'04" W.
48.	61 deg.	39'08"	N., 177 deg.	06'31" W.
49.	61 deg.	29'59"	N., 177 deg.	23'53" W.
50.	61 deg.	20'47"	N., 177 deg.	41'11" W.
51.	61 deg.	11'33"	N., 177 deg.	58'26" W.
52.	61 deg.	02'17"	N., 178 deg.	15'36" W.
53.	60 deg.	52'57"	N., 178 deg.	32'42" W.
54.	60 deg.	43'35"	N., 178 deg.	49'45" W.
55.	60 deg.	34'11"	N., 179 deg.	06'44" W.
56.	60 deg.	24'44"	N., 179 deg.	23'38" W.
57.	60 deg.	15'14"	N., 179 deg.	40'30" W.
58.	60 deg.	11'39"	N., 179 deg.	46'49" W.

21지점과 22 지점사이,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남베링해, 북태평양연안에서,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59.	56 deg.	16'31"	N., 174 deg.	00'19" E.
60.	56 deg.	15'07"	N., 173 deg.	56'56" E.
61.	56 deg.	04'34"	N., 173 deg.	41'08" E.
62.	55 deg.	53'59"	N., 173 deg.	25'22" E.
63.	55 deg.	43'22"	N., 173 deg.	09'37" E.
64.	55 deg.	32'42"	N., 172 deg.	53'55" E.
65.	55 deg.	21'59"	N., 172 deg.	38'14" E.
66.	55 deg.	11'14"	N., 172 deg.	22'36" E.
67.	55 deg.	00'26"	N., 172 deg.	06'59" E.
68.	54 deg.	49'36"	N., 171 deg.	51'24" E.
69.	54 deg.	38'43"	N., 171 deg.	35'51" E.
70.	54 deg.	27'48"	N., 171 deg.	20'20" E.
71.	54 deg.	16'50"	N., 171 deg.	04'50" E.
72.	54 deg.	05'50"	N., 170 deg.	49'22" E.
73.	53 deg.	54'47"	N., 170 deg.	33'56" E.
74.	53 deg.	43'42"	N., 170 deg.	18'31" E.
75.	53 deg.	32'46"	N., 170 deg.	05'29" E.
76.	53 deg.	21'48"	N., 169 deg.	52'32" E.
77.	53 deg.	10'49"	N., 169 deg.	39'40" E.
78.	52 deg.	59'48"	N., 169 deg.	26'53" E.
79.	52 deg.	48'46"	N., 169 deg.	14'12" E.
80.	52 deg.	37'43"	N., 169 deg.	01'36" E.
81.	52 deg.	26'38"	N., 168 deg.	49'05" E.
82.	52 deg.	15'31"	N., 168 deg.	36'39" E.
83.	52 deg.	04'23"	N., 168 deg.	24'17" E.
84.	51 deg.	53'14"	N., 168 deg.	12'01" E.
85.	51 deg.	42'03"	N., 167 deg.	59'49" E.
86.	51 deg.	30'51"	N., 167 deg.	47'42" E.
87.	51 deg.	22'15"	N., 167 deg.	38'28" E.

87지점과 88 지점사이,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 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88지점에서, 알래스카연연으로부터 독점경제구역의 남방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88.	53 deg.	28'27"	N., 138 deg.	45'20" W.
89.	54 deg.	00'01"	N., 135 deg.	45'57" W.
90.	54 deg.	07'30"	N., 134 deg.	56'24" W.
91.	54 deg.	12'45"	N., 134 deg.	25'03" W.
92.	54 deg.	12'57"	N., 134 deg.	23'47" W.
93.	54 deg.	15'40"	N., 134 deg.	10'49" W.
94.	54 deg.	20'33"	N., 133 deg.	49'21" W.
95.	54 deg.	22'01"	N., 133 deg.	44'24" W.
96.	54 deg.	30'06"	N., 133 deg.	16'58" W.
97.	54 deg.	31'02"	N., 133 deg.	14'00" W.
98.	54 deg.	30'42"	N., 133 deg.	11'28" W.
99.	54 deg.	30'10"	N., 133 deg.	07'43" W.
100.	54 deg.	30'03"	N., 133 deg.	07'00" W.
101.	54 deg.	28'32"	N., 132 deg.	56'28" W.
102.	54 deg.	28'25"	N., 132 deg.	55'54" W.
103.	54 deg.	27'23"	N., 132 deg.	50'42" W.
104.	54 deg.	27'07"	N., 132 deg.	49'35" W.
105.	54 deg.	26'00"	N., 132 deg.	44'12" W.
106.	54 deg.	24'54"	N., 132 deg.	39'46" W.
107.	54 deg.	24'34"	N., 132 deg.	38'16" W.
108.	54 deg.	24'39"	N., 132 deg.	26'51" W.
109.	54 deg.	24'41"	N., 132 deg.	24'35" W.
110.	54 deg.	24'41"	N., 132 deg.	24'29" W.
111.	54 deg.	24'52"	N., 132 deg.	23'39" W.
112.	54 deg.	21'51"	N., 132 deg.	02'54" W.
113.	54 deg.	26'41"	N., 131 deg.	49'28" W.
114.	54 deg.	28'18"	N., 131 deg.	45'20" W.
115.	54 deg.	30'32"	N., 131 deg.	38'01" W.
116.	54 deg.	29'53"	N., 131 deg.	33'48" W.
117.	54 deg.	36'53"	N., 131 deg.	19'22" W.
118.	54 deg.	39'09"	N., 131 deg.	16'17" W.
119.	54 deg.	40'52"	N., 131 deg.	13'54" W.
120.	54 deg.	42'11"	N., 131 deg.	13'00" W.
121.	54 deg.	46'16"	N., 131 deg.	04'43" W.
122.	54 deg.	45'39"	N., 131 deg.	03'06" W.
123.	54 deg.	44'12"	N., 130 deg.	59'44" W.
124.	54 deg.	43'46"	N., 130 deg.	58'55" W.
125.	54 deg.	43'00"	N., 130 deg.	57'41" W.
126.	54 deg.	42'34"	N., 130 deg.	57'09" W.
127.	54 deg.	42'27"	N., 130 deg.	56'18" W.
128.	54 deg.	41'26"	N., 130 deg.	53'39" W.

129.	54 deg.	41'21"	N., 130 deg.	53'18" W.
130.	54 deg.	41'05"	N., 130 deg.	49'17" W.
131.	54 deg.	41'06"	N., 130 deg.	48'31" W.
132.	54 deg.	40'46"	N., 130 deg.	45'51" W.
133.	54 deg.	40'41"	N., 130 deg.	44'59" W.
134.	54 deg.	40'42"	N., 130 deg.	44'43" W.
135.	54 deg.	40'03"	N., 130 deg.	42'22" W.
136.	54 deg.	39'48"	N., 130 deg.	41'35" W.
137.	54 deg.	39'14"	N., 130 deg.	39'18" W.
138.	54 deg.	39'54"	N., 130 deg.	38'58" W.
139.	54 deg.	41'09"	N., 130 deg.	38'58" W.
140.	54 deg.	42'22"	N., 130 deg.	38'26" W.
141.	54 deg.	42'47"	N., 130 deg.	38'06" W.
142.	54 deg.	42'58"	N., 130 deg.	37'57" W.
143.	54 deg.	43'00"	N., 130 deg.	37'55" W.
144.	54 deg.	43'15"	N., 130 deg.	37'44" W.
145.	54 deg.	43'24"	N., 130 deg.	37'39" W.
146.	54 deg.	43'30.15"	N., 130 deg.	37'37.01" W.

▶ 카리브해

푸에르토리코 연방국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으로, 동부, 남부, 서부 지역까지는 제외하고,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21 deg.	48'33"	N., 65 deg.	50'31" W.
2.	21 deg.	41'20"	N., 65 deg.	49'13" W.
3.	20 deg.	58'05"	N., 65 deg.	40'30" W.
4.	20 deg.	46'56"	N., 65 deg.	38'14" W.
5.	19 deg.	57'29"	N., 65 deg.	27'21" W.
6.	19 deg.	37'29"	N., 65 deg.	20'57" W.
7.	19 deg.	12'25"	N., 65 deg.	06'08" W.
8.	18 deg.	45'14"	N., 65 deg.	00'22" W.
9.	18 deg.	41'14"	N., 64 deg.	59'33" W.
10.	18 deg.	29'22"	N., 64 deg.	53'50" W.
11.	18 deg.	27'36"	N., 64 deg.	53'22" W.
12.	18 deg.	25'22"	N., 64 deg.	52'39" W.
13.	18 deg.	24'31"	N., 64 deg.	52'19" W.

14.	18 deg.	23'51"	N., 64 deg.	51'50" W.
15.	18 deg.	23'43"	N., 64 deg.	51'23" W.
16.	18 deg.	23'37"	N., 64 deg.	50'18" W.
17.	18 deg.	23'48"	N., 64 deg.	49'42" W.
18.	18 deg.	24'11"	N., 64 deg.	49'01" W.
19.	18 deg.	24'29"	N., 64 deg.	47'57" W.
20.	18 deg.	24'18"	N., 64 deg.	47'00" W.
21.	18 deg.	23'14"	N., 64 deg.	46'37" W.
22.	18 deg.	22'38"	N., 64 deg.	45'21" W.
23.	18 deg.	22'40"	N., 64 deg.	44'42" W.
24.	18 deg.	22'42"	N., 64 deg.	44'36" W.
25.	18 deg.	22'37"	N., 64 deg.	44'24" W.
26.	18 deg.	22'40"	N., 64 deg.	43'42" W.
27.	18 deg.	22'30"	N., 64 deg.	43'36" W.
28.	18 deg.	22'25"	N., 64 deg.	42'58" W.
29.	18 deg.	22'27"	N., 64 deg.	42'28" W.
30.	18 deg.	22'16"	N., 64 deg.	42'03" W.
31.	18 deg.	22'23"	N., 64 deg.	40'59" W.
32.	18 deg.	21'58"	N., 64 deg.	40'15" W.
33.	18 deg.	21'51"	N., 64 deg.	38'22" W.
34.	18 deg.	21'22"	N., 64 deg.	38'16" W.
35.	18 deg.	20'39"	N., 64 deg.	38'32" W.
36.	18 deg.	19'16"	N., 64 deg.	38'13" W.
37.	18 deg.	19'07"	N., 64 deg.	38'16" W.
38.	18 deg.	17'24"	N., 64 deg.	39'37" W.
39.	18 deg.	16'43"	N., 64 deg.	39'41" W.
40.	18 deg.	11'34"	N., 64 deg.	38'58" W.
41.	18 deg.	03'03"	N., 64 deg.	38'03" W.
42.	18 deg.	02'57"	N., 64 deg.	29'35" W.
43.	18 deg.	02'52"	N., 64 deg.	27'03" W.
44.	18 deg.	02'30"	N., 64 deg.	21'08" W.
45.	18 deg.	02'31"	N., 64 deg.	20'08" W.
46.	18 deg.	02'01"	N., 64 deg.	15'39" W.
47.	18 deg.	00'12"	N., 64 deg.	02'29" W.
48.	17 deg.	59'58"	N., 64 deg.	01'02" W.
49.	17 deg.	58'47"	N., 63 deg.	57'00" W.
50.	17 deg.	57'51"	N., 63 deg.	53'53" W.
51.	17 deg.	56'37"	N., 63 deg.	53'20" W.
52.	17 deg.	39'48"	N., 63 deg.	54'54" W.
53.	17 deg.	37'15"	N., 63 deg.	55'11" W.
54.	17 deg.	30'28"	N., 63 deg.	55'57" W.

55.	17 deg.	11'43"	N., 63 deg.	58'00" W.
56.	17 deg.	05'07"	N., 63 deg.	58'42" W.
57.	16 deg.	44'49"	N., 64 deg.	01'08" W.
58.	16 deg.	43'22"	N., 64 deg.	06'31" W.
59.	16 deg.	43'10"	N., 64 deg.	06'59" W.
60.	16 deg.	42'40"	N., 64 deg.	08'06" W.
61.	16 deg.	41'43"	N., 64 deg.	10'07" W.
62.	16 deg.	35'19"	N., 64 deg.	23'39" W.
63.	16 deg.	23'30"	N., 64 deg.	45'54" W.
64.	15 deg.	39'31"	N., 65 deg.	58'41" W.
65.	15 deg.	30'10"	N., 66 deg.	07'09" W.
66.	15 deg.	14'06"	N., 66 deg.	19'57" W.
67.	14 deg.	55'48"	N., 66 deg.	34'30" W.
68.	14 deg.	56'06"	N., 66 deg.	51'40" W.
69.	14 deg.	58'27"	N., 67 deg.	04'19" W.
70.	14 deg.	58'45"	N., 67 deg.	05'17" W.
71.	14 deg.	58'58"	N., 67 deg.	06'11" W.
72.	14 deg.	59'10"	N., 67 deg.	07'00" W.
73.	15 deg.	02'32"	N., 67 deg.	23'40" W.
74.	15 deg.	05'07"	N., 67 deg.	36'23" W.
75.	15 deg.	10'38"	N., 68 deg.	03'46" W.
76.	15 deg.	11'06"	N., 68 deg.	09'21" W.
77.	15 deg.	12'33"	N., 68 deg.	27'32" W.
78.	15 deg.	12'51"	N., 68 deg.	28'56" W.
79.	15 deg.	46'46"	N., 68 deg.	26'04" W.
80.	17 deg.	21'30"	N., 68 deg.	17'53" W.
81.	17 deg.	38'01"	N., 68 deg.	16'46" W.
82.	17 deg.	50'24"	N., 68 deg.	16'11" W.
83.	17 deg.	58'07"	N., 68 deg.	15'52" W.
84.	18 deg.	02'28"	N., 68 deg.	15'40" W.
85.	18 deg.	06'10"	N., 68 deg.	15'27" W.
86.	18 deg.	07'27"	N., 68 deg.	15'33" W.
87.	18 deg.	09'12"	N., 68 deg.	14'53" W.
88.	18 deg.	17'06"	N., 68 deg.	11'28" W.
89.	18 deg.	19'20"	N., 68 deg.	09'40" W.
90.	18 deg.	22'42"	N., 68 deg.	06'57" W.
91.	18 deg.	24'39"	N., 68 deg.	04'58" W.
92.	18 deg.	25'25"	N., 68 deg.	04'09" W.
93.	18 deg.	28'08"	N., 68 deg.	00'59" W.
94.	18 deg.	31'27"	N., 67 deg.	56'57" W.
95.	18 deg.	32'58"	N., 67 deg.	55'07" W.

96.	18 deg.	34'34"	N., 67 deg.	52'53" W.
97.	18 deg.	54'37"	N., 67 deg.	46'21" W.
98.	19 deg.	00'42"	N., 67 deg.	44'25" W.
99.	19 deg.	10'00"	N., 67 deg.	41'24" W.
100.	19 deg.	19'03"	N., 67 deg.	38'19" W.
101.	19 deg.	21'20"	N., 67 deg.	38'01" W.
102.	19 deg.	59'45"	N., 67 deg.	31'52" W.
103.	20 deg.	00'59"	N., 67 deg.	31'35" W.
104.	20 deg.	01'17"	N., 67 deg.	31'29" W.
105.	20 deg.	02'49"	N., 67 deg.	31'04" W.
106.	20 deg.	03'30"	N., 67 deg.	30'52" W.
107.	20 deg.	09'28"	N., 67 deg.	29'11" W.
108.	20 deg.	48'18"	N., 67 deg.	17'50" W.
109.	21 deg.	22'48"	N., 67 deg.	02'34" W.
110.	21 deg.	30'18"	N., 66 deg.	59'05" W.
111.	21 deg.	33'47"	N., 66 deg.	57'30" W.
112.	21 deg.	51'24"	N., 66 deg.	49'30" W.

나바사섬. 이 주변의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 중양 태평양 및 서태평양

북 마리아나 섬 및 괌.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으로, 북 마리아나 점의 북부 지역까지는 제외하고,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23 deg.	53'35"	N., 145 deg.	05'46" E.
2.	23 deg.	44'32"	N., 144 deg.	54'05" E.
3.	23 deg.	33'52"	N., 144 deg.	40'23" E.
4.	23 deg.	16'11"	N., 144 deg.	17'47" E.
5.	22 deg.	50'13"	N., 143 deg.	44'57" E.
6.	22 deg.	18'13"	N., 143 deg.	05'02" E.
7.	21 deg.	53'58"	N., 142 deg.	35'03" E.
8.	21 deg.	42'14"	N., 142 deg.	20'39" E.
9.	21 deg.	40'08"	N., 142 deg.	18'05" E.
10.	21 deg.	28'21"	N., 142 deg.	03'45" E.
11.	20 deg.	58'24"	N., 141 deg.	27'33" E.
12.	20 deg.	52'51"	N., 141 deg.	20'54" E.

그리고 남부지점까지를 제외하고,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3.	11 deg.	38'25"	N., 147 deg.	44'42" E.
14.	11 deg.	36'53"	N., 147 deg.	31'03" E.
15.	11 deg.	31'48"	N., 146 deg.	55'19" E.
16.	11 deg.	27'15"	N., 146 deg.	25'34" E.
17.	11 deg.	22'13"	N., 145 deg.	52'36" E.
18.	11 deg.	17'31"	N., 145 deg.	22'38" E.
19.	11 deg.	13'32"	N., 144 deg.	57'26" E.
20.	11 deg.	13'23"	N., 144 deg.	56'29" E.
21.	10 deg.	57'03"	N., 143 deg.	26'53" E.
22.	10 deg.	57'30"	N., 143 deg.	03'09" E.
23.	11 deg.	52'33"	N., 142 deg.	15'28" E.
24.	12 deg.	54'00"	N., 141 deg.	21'48" E.
25.	12 deg.	54'17"	N., 141 deg.	21'33" E.
26.	12 deg.	57'34"	N., 141 deg.	19'17" E.
27.	13 deg.	06'32"	N., 141 deg.	12'53" E.

하와이 및 미드웨이 섬.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 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존스턴아톨.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미국사모아.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이다.

1.	11 deg.	02'17"	S., 173 deg.	44'48" W.
2.	10 deg.	46'15"	S., 173 deg.	03'53" W.
3.	10 deg.	25'26"	S., 172 deg.	11'01" W.
4.	10 deg.	17'50"	S., 171 deg.	50'58" W.
5.	10 deg.	15'17"	S., 171 deg.	15'32" W.
6.	10 deg.	10'18"	S., 170 deg.	16'10" W.
7.	10 deg.	07'52"	S., 169 deg.	46'50" W.
8.	10 deg.	01'26"	S., 168 deg.	31'25" W.
9.	10 deg.	12'44"	S., 168 deg.	31'02" W.
10.	10 deg.	12'49"	S., 168 deg.	31'02" W.
11.	10 deg.	52'31"	S., 168 deg.	29'42" W.
12.	11 deg.	02'40"	S., 168 deg.	29'21" W.
13.	11 deg.	43'53"	S., 168 deg.	27'58" W.

14.	12 deg.	01'55"	S., 168 deg.	10'24" W.
15.	12 deg.	28'40"	S., 167 deg.	25'20" W.
16.	12 deg.	41'22"	S., 167 deg.	11'01" W.
17.	12 deg.	57'51"	S., 166 deg.	52'21" W.
18.	13 deg.	11'25"	S., 166 deg.	37'02" W.
19.	13 deg.	14'03"	S., 166 deg.	34'03" W.
20.	13 deg.	21'25"	S., 166 deg.	25'42" W.
21.	13 deg.	35'44"	S., 166 deg.	09'19" W.
22.	13 deg.	44'56"	S., 165 deg.	58'44" W.
23.	14 deg.	03'30"	S., 165 deg.	37'20" W.
24.	15 deg.	00'09"	S., 165 deg.	22'07" W.
25.	15 deg.	14'04"	S., 165 deg.	18'29" W.
26.	15 deg.	38'47"	S., 165 deg.	12'03" W.
27.	15 deg.	44'58"	S., 165 deg.	16'36" W.
28.	16 deg.	08'42"	S., 165 deg.	34'12" W.
29.	16 deg.	18'30"	S., 165 deg.	41'29" W.
30.	16 deg.	23'29"	S., 165 deg.	45'11" W.
31.	16 deg.	45'30"	S., 166 deg.	01'39" W.
32.	17 deg.	33'28"	S., 166 deg.	38'35" W.
33.	17 deg.	31'45"	S., 166 deg.	42'07" W.
34.	16 deg.	56'20"	S., 168 deg.	26'05" W.
35.	16 deg.	37'55"	S., 169 deg.	18'19" W.
36.	16 deg.	37'36"	S., 169 deg.	19'12" W.
37.	16 deg.	34'58"	S., 169 deg.	55'59" W.
38.	16 deg.	39'17"	S., 170 deg.	19'09" W.
39.	16 deg.	48'46"	S., 171 deg.	12'29" W.
40.	16 deg.	49'33"	S., 171 deg.	17'03" W.
41.	16 deg.	13'29"	S., 171 deg.	37'41" W.
42.	16 deg.	04'47"	S., 171 deg.	42'37" W.
43.	15 deg.	58'20"	S., 171 deg.	46'06" W.
44.	15 deg.	50'48"	S., 171 deg.	50'23" W.
45.	15 deg.	50'12"	S., 171 deg.	50'44" W.
46.	15 deg.	14'19"	S., 171 deg.	37'37" W.
47.	15 deg.	01'58"	S., 171 deg.	31'37" W.
48.	14 deg.	46'48"	S., 171 deg.	24'21" W.
49.	14 deg.	27'02"	S., 171 deg.	14'46" W.
50.	14 deg.	06'18"	S., 171 deg.	04'48" W.
51.	14 deg.	03'28"	S., 171 deg.	03'06" W.
52.	14 deg.	03'27"	S., 171 deg.	03'05" W.
53.	14 deg.	03'05"	S., 171 deg.	02'53" W.
54.	13 deg.	56'54"	S., 170 deg.	59'34" W.

55.	13 deg.	54'30"	S., 170 deg.	58'20" W.
56.	13 deg.	53'43"	S., 170 deg.	57'57" W.
57.	13 deg.	50'40"	S., 170 deg.	56'24" W.
58.	13 deg.	13'56"	S., 170 deg.	44'20" W.
59.	13 deg.	09'05"	S., 170 deg.	42'39" W.
60.	12 deg.	36'18"	S., 170 deg.	30'44" W.
61.	12 deg.	36'11"	S., 170 deg.	31'35" W.
62.	12 deg.	35'21"	S., 170 deg.	36'26" W.
63.	12 deg.	29'47"	S., 171 deg.	08'24" W.
64.	12 deg.	27'27"	S., 171 deg.	17'25" W.
65.	12 deg.	23'34"	S., 171 deg.	25'18" W.
66.	12 deg.	17'36"	S., 171 deg.	37'14" W.
67.	12 deg.	14'01"	S., 171 deg.	44'25" W.
68.	12 deg.	13'49"	S., 171 deg.	44'47" W.
69.	12 deg.	05'27"	S., 172 deg.	00'55" W.
70.	11 deg.	54'06"	S., 172 deg.	22'53" W.
71.	11 deg.	53'57"	S., 172 deg.	23'09" W.
72.	11 deg.	40'49"	S., 172 deg.	48'17" W.
73.	11 deg.	26'56"	S., 173 deg.	08'46" W.
74.	11 deg.	22'08"	S., 173 deg.	15'50" W.
75.	11 deg.	02'28"	S., 173 deg.	44'37" W.
76.	11 deg.	02'17"	S., 173 deg.	44'48" W.

팔미라 아톨킹만 리프.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으로, 팔미라 아톨 킹만 리프의 남동부지역까지는 제외하고,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7 deg.	55'04"	N., 159 deg.	22'29" W.
2.	7 deg.	31'05"	N., 159 deg.	39'30" W.
3.	7 deg.	09'43"	N., 159 deg.	54'35" W.
4.	6 deg.	33'40"	N., 160 deg.	19'51" W.
5.	6 deg.	31'37"	N., 160 deg.	21'18" W.
6.	6 deg.	25'31"	N., 160 deg.	25'40" W.
7.	6 deg.	03'05"	N., 160 deg.	41'42" W.
8.	5 deg.	44'12"	N., 160 deg.	55'13" W.
9.	4 deg.	57'25"	N., 161 deg.	28'19" W.
10.	4 deg.	44'38"	N., 161 deg.	37'18" W.
11.	3 deg.	54'25"	N., 162 deg.	12'56" W.
12.	2 deg.	39'50"	N., 163 deg.	05'14" W.

웨이크섬.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으로, 웨이크 남부지역까지는 제외하고,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17 deg.	56'15"	N., 169 deg.	54'00" E.
2.	17 deg.	46'02"	N., 169 deg.	31'18" E.
3.	17 deg.	37'47"	N., 169 deg.	12'53" E.
4.	17 deg.	11'18"	N., 168 deg.	13'30" E.
5.	16 deg.	41'31"	N., 167 deg.	07'39" E.
6.	16 deg.	02'45"	N., 165 deg.	43'30" E.

자비스 섬.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으로, 자비스 북부 및 동부지역까지는 제외하고,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2 deg.	01'00"	N., 162 deg.	22'00" W.
2.	2 deg.	01'42"	N., 162 deg.	01'35" W.
3.	2 deg.	03'20"	N., 161 deg.	41'33" W.
4.	2 deg.	02'30"	N., 161 deg.	36'20" W.
5.	2 deg.	00'13"	N., 161 deg.	22'24" W.
6.	1 deg.	50'18"	N., 160 deg.	20'42" W.
7.	1 deg.	45'46"	N., 159 deg.	52'59" W.
8.	1 deg.	43'31"	N., 159 deg.	39'27" W.
9.	0 deg.	58'53"	N., 158 deg.	59'04" W.
10.	0 deg.	46'58"	N., 158 deg.	48'24" W.
11.	0 deg.	12'36"	N., 158 deg.	18'06" W.
12.	0 deg.	00'17"	S., 158 deg.	07'27" W.
13.	0 deg.	24'23"	S., 157 deg.	49'44" W.
14.	0 deg.	25'44"	S., 157 deg.	48'43" W.
15.	0 deg.	58'15"	S., 157 deg.	24'52" W.
16.	2 deg.	13'26"	S., 157 deg.	49'01" W.
17.	3 deg.	10'40"	S., 158 deg.	10'30" W.

하우랜드 및 베이커 섬. 독점경제구역의 해상한계는 영해의 너비를 측정한 곳으로부터 기저선에서 200해상마일이 되는 곳으로, 하우랜드 및 베이커 섬의 남동부 및 남부지역까지는 제외하고, 독점경제구역의 한계는 다음 위도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결정된다.

1.	0 deg.	14'30"	N., 173 deg.	08'00" W.
2.	0 deg.	14'32"	S., 173 deg.	27'28" W.
3.	0 deg.	43'52"	S., 173 deg.	45'30" W.
4.	1 deg.	04'06"	S., 174 deg.	17'41" W.
5.	1 deg.	12'39"	S., 174 deg.	31'02" W.
6.	1 deg.	14'52"	S., 174 deg.	34'48" W.
7.	1 deg.	52'36"	S., 175 deg.	34'51" W.
8.	1 deg.	59'17"	S., 175 deg.	45'29" W.
9.	2 deg.	17'09"	S., 176 deg.	13'58" W.
10.	2 deg.	32'51"	S., 176 deg.	38'59" W.
11.	2 deg.	40'26"	S., 176 deg.	51'03" W.
12.	2 deg.	44'49"	S., 176 deg.	58'01" W.
13.	2 deg.	44'53"	S., 176 deg.	58'08" W.
14.	2 deg.	56'33"	S., 177 deg.	16'43" W.
15.	2 deg.	58'45"	S., 177 deg.	26'00" W.

날짜 1995년 8월 10일

데이비드 콜슨

해양차관보 2004년 9월 30일

A.J. 에이츠

농수산사업부장

[FR Doc. 04-22309 Filed 9-30-04; 30:00pm]

BILLING CODE 3410-02-P